

2006年 8月
博士學位論文

보험범죄의 실태와 대책에
관한 연구

朝鮮大學校 大學院

經濟學科

朴 長 男

保險犯罪의 實態와 對策에
관한 研究

A Study on The Aspects and Measures to Cope
with the Insurance Crime

2006年 8月 25日

朝鮮大學校 大學院

經濟學科

朴 長 男

保險犯罪의 實態와 對策에 관한 研究

指導教授 池 廣 洙

이 論文을 經濟學 博士學位 申請 論文으로 提出함

2006年 4月 日

朝鮮大學校 大學院

經濟學科

朴 長 男

朴長男의 博士學位 論文을 認准함

委員長 朝鮮大學校 教授 (인)

委員 朝鮮大學校 教授 (인)

委員 木浦大學校 教授 (인)

委員 全北大學校 教授 (인)

委員 朝鮮大學校 教授 (인)

2006年 6月 日

朝鮮大學校 大學院

目 次

ABSTRACT

제 1 장 序 論	1
제 1 절 研究의 目的	1
제 2 절 研究의 範圍와 方法	4
제 3 절 先行研究의 檢討	4
제 2 장 保險犯罪에 관한 理論的 考察	7
제 1 절 犯罪經濟學의 概念	7
1. 犯罪의 定義	7
2. 犯罪經濟學의 概念	8
3. 犯罪經濟學의 研究對象	9
4. 犯罪經濟學의 展開過程	11
제 2 절 保險犯罪의 概念	13
1. 保險犯罪의 由來	13
2. 保險犯罪와 保險詐欺	16
3. 保險犯罪의 特徵	21
4. 保險犯罪의 增加原因	25
5. 保險犯罪의 弊害	31
제 3 절 保險犯罪의 類型과 事例	34
1. 犯罪 類型	34
2. 犯罪 手法	43
3. 事件의 特色	46

제 3 장 保險犯罪의 實態	50
제 1 절 우리나라 保險犯罪 現況	50
1. 摘發 現況	50
2. 類型別 現況	51
3. 年齡別 現況	53
4. 職業別 現況	54
5. 司法處理 現況	55
제 2 절 保險犯罪對應의 問題點	57
1. 保險業界의 問題點	57
2. 搜查上의 問題點	58
3. 保險犯罪에 관한 法律上의 問題	60
제 3 절 主要國의 保險犯罪 對應實態	68
1. 美 國	68
2. 英 國	75
3. 日 本	77
4. 프랑스	78
5. 獨 逸	80
제 4 장 保險犯罪의 意識調查分析	84
제 1 절 調查方法과 調查內容	84
제 2 절 意識調查結果의 一般的 特性	85
1. 保險加入者의 人口統計的 特性	85
2. 告知義務 履行態度	86
3. 保險金要求水準	86
4. 保險金算定時 選好하는 相談者	87

제 3 절	보험범죄에 대한 認識	88
1.	보험詐欺와 保險料上昇과의 因果關係	89
2.	硬性·軟性詐欺에 대한 保險犯罪認識	89
3.	보험詐欺의 摘發可能性에 대한 認識	93
제 4 절	보험범죄 誘發可能性	95
1.	性別 年齡別 保險犯罪 誘發可能性	95
2.	職業의 有無 및 類型別 保險犯罪 誘發可能性	96
3.	行態別 保險犯罪 誘發可能性	98
4.	保險專門知識 保有者의 保險犯罪 誘發可能性	100
5.	重複保險加入者의 保險犯罪 誘發可能性	101
6.	事故經歷者의 誘發可能性	102
제 5 절	보험범죄防止對策에 대한 認識	103
1.	保險犯罪者에 대한 處罰水準	103
2.	보험범죄防止를 위한 對應政策	105
3.	보험범죄防止를 위한 政策方向	108
제 6 절	因果關係分析	109
1.	假說의 設定	109
2.	보험범죄 深刻性에 영향을 미친 誘發可能性 要因	112
3.	處罰水準 程度에 영향을 미친 要因	113
제 7 절	示唆點	115
1.	弘報 및 教育의 必要性	115
2.	制度的 支援의 必要性	116
제 5 장	보험범죄의 防止對策	117
제 1 절	보험범죄 搜查力の 強化	117

제 2 절 保險會社의 制度改善	119
제 3 절 弘報 및 敎育의 強化	120
제 4 절 保險犯罪 處罰條項의 新設	122
제 5 절 統合資料 管理시스템의 開發	123
제 6 장 要約 및 結論	126
參考文獻	129
부록 : 보험범죄 의식조사 설문지	137

표 목 차

<표 2-1> 보험사기와 보험범죄의 비교	18
<표 2-2> 보험사기의 구분	20
<표 3-1> 보험사기 적발현황	50
<표 3-2> 보험사기 유형별 현황(2005)	52
<표 3-3> 연도별 유형별 적발금액 현황	53
<표 3-4> 주요국의 보험범죄전문조사기구 현황	79
<표 4-1> 보험가입자 조사대상의 인구통계적 특성	85
<표 4-2> 보험범죄 증가원인(3가지 응답)	108
<표 4-3> 보험범죄 축소방안(3가지 응답)	109
<표 4-4> 보험범죄 심각성과 유발가능성	113
<표 4-5> 보험범죄 처벌수준과 유발가능성	114
<표 4-6> 처벌수준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115

그림 목 차

<그림 3-1> 연도별 연령별 현황	54
<그림 3-2> 보험사기 관련자 직업별 분포	55
<그림 3-3> 연도별 사법처리 현황	56
<그림 4-1> 허위·부실고지에 대한 보험가입자의 의식	86
<그림 4-2> 보험가입자의 보험료 만족도	87
<그림 4-3> 보험금산정에 선호하는 상담자	88
<그림 4-4> 보험사기와 보험료상승	89
<그림 4-5> 경성사기에 대한 보험범죄 인식	90
<그림 4-6> 연성사기에 대한 보험범죄 인식	91
<그림 4-7> 부정한 방법에 의한 보험금 수령태도	92
<그림 4-8> 보험금 수령에 대한 의견	92
<그림 4-9> 경성사기의 적발가능성	94
<그림 4-10> 연성사기의 적발가능성	94
<그림 4-11> 성별 유발가능성	95
<그림 4-12> 연령별 유발가능성	96
<그림 4-13> 무직자의 유발가능성	97
<그림 4-14> 자영업자의 유발가능성	98
<그림 4-15> 조직적 지능적 범죄증가에 대한 인식	99
<그림 4-16> 제3자 개입가능성	99
<그림 4-17> 보험지식보유자의 유발가능성	100
<그림 4-18> 조직폭력배 개입가능성	101
<그림 4-19> 다수보험가입자의 유발가능성	102
<그림 4-20> 사고경력자 유발가능성	103

<그림 4-21> 보험범죄자의 예상 처벌수준	104
<그림 4-22> 보험범죄자의 걱정 처벌수준	105
<그림 4-23> 보험범죄에 대한 책임	106
<그림 4-24> 보험범죄 방지를 위한 대응수준	106
<그림 4-25> 특수조사팀(SIU) 역할에 대한 기대	107

ABSTRACT

A Study on the Aspects and Measures to Cope with the Insurance Crime

Park, Jang-Nam

Advisor : Prof. Chi, Kwang-Soo Ph. D.

Department of Economics,

Graduate School of Chosun University

The insurance institution is the economic system that people situated in the same kind of risk have to prepare preparatory money on co-operation to offering a share of money and injured people have to be received a payment from it. The insurance institution is one of essential economic system in the modern's people living in each kind of hazard.

Recently, as the Korean economy develops and the korean society changes rapidly, the egoistic and mammonish thoughts spreads and the moral standard and even one's values get worse towards the trend to make light of one's life. And the society is confused with the insurance crime which is the abuse of insurance system.

According to the Financial Supervisory Service(FSS), the number of 2005 disclosed frauds summed up to 23,607 cases, a 43% increase from 2004.

The amount of damage caused by insurance fraud also increased nearly 40% to 180.2 billion won. Although many new tactics for insurance fraud have been discovered, traffic accidents still make up the overwhelming majority. The number of insurance fraud cases conducted by under-twenties is decreasing, but fraud acts by youths in their twenties is increasing. Methods are becoming more intelligent and structured.

The serious moral hazard widespreads through all insurance fields which include car, disease, and injury as well as life and fire. Moral hazard may have two meanings. One means the weaknesses of human characters such as carelessness, indifference, negligence, the other means human conscious feelings such as human conscious dishonesty, fraud, vice, immorality, greed etc., that is increasing the occurring frequency and extent of accident by human immoral, vicious, greedy characters.

For a long time, insurers have considered moral hazard as a type of risk they can not control, and showed considerably generous attitude to it. As long as moral hazard caused by insurance crime does not bring about a great obstacle or problem to insurance business, insurers may continue these easy and passive attitude. However, recently in many insurance markets, the problem of misusing the insurance have been considered as a great social issue.

In generally speaking, the insurance fraud includes all the frauding actions against the insurance company and it has more large meaning than the insurance crime. However, the insurance of the interest which a criminal wants to possess, not in the realization of the frauding but in the benefit being paid by the insurance company.

There are complaints of the insurance criminals that they could be deprived of benefit from the insurance companies, so they justify themselves for their immoral action against insurers. This complaints often make them not to be conscious that the true victims are all the members of the insurance groups.

Therefore, this study did analyze the consciousness tendency toward an insurance crime through a questionnaire survey targeting insurance-contractors and policemen for economic affairs. As a result, it was confirmed to require to solve many problems: the distrust relationship between an insurance consumer and an insurance undertaker, insufficiency of integrated database, insufficient publicity and education.

And in did present a scheme for solving these problems by dividing into a preventive aspect and an institutional aspect, thus it did establish a direction in which a countermeasure against an insurance crime will be needed to proceed hereafter.

Finally, the reasonable prevention method against the insurance crime get to be achieved with the insurance company's management, the company's co-endeavour and establishment of information exchange system, the active cooperative attitude of investigating authorities. In the future, there should be legislations of criminal penalty against insurance crime.

제 1 장 序 論

제 1 절 研究의 目的

保險犯罪가 날이 갈수록 기승을 부리고 있다. 故意事故 誘發, 피해자 끼워넣기, 경미한 사고 피해과장, 진료기록 부풀리기 등 그 유형이 다양하고 정도도 심해진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최근 중·고등학교 동창생들이 모의해인당 3~4개의 長期保險에 가입한 뒤 故意로 교통사고를 유발 또는 조작하는 방법을 통해 실제로 다친 사실이 없으면서도 병원에 입원치료해 수차례에 걸쳐 수억원의 보험금을 타낸 보험사기사건이 적발됐다.

세계 최초의 보험범죄는 1762년 영국에서 이네스라는 사람이 양녀를 피보험자로 생명보험에 가입한 후 양녀를 독살하고 자신을 유산 상속자로 하는 유서를 위조, 제출했다가 적발돼 자신도 형장의 이슬로 사라진 '이네스' 사건이다. 그로부터 162년 뒤 우리나라에도 부당 보험금을 노린 '사건'이 발생했다. 1924년 每日新報는 '보험외교원(보험모집인)의 협잡'이라는 제목으로 "보험 가입 후 허위로 사망 신고를 하고 보험금을 편취했다가 적발됐다"고 보도했다. 이는 최초 보험회사인 朝鮮生命保險이 설립된 지 3년만의 일이다.

우리나라에서 보험금을 노리고 타인의 생명을 빼앗는 '살인'이 발생한 것은 '이네스' 사건이 발생한 지 213년 뒤인 1975년이다. 이 사건은 언니, 형부, 조카를 방화 살인하고 시동생마저 우유로 독살한 후 총 147만원의 보험금을 편취했다가 검거된 '박분례 사건'으로 기록돼 있다.

최근에 들어 장기적인 景氣沈滯 및 社會紀綱의 解弛 등으로 인해 우리나라 보험범죄가 급증하는 추세이다. 특히 살인, 방화 등 강력사건을 그 수단으로 이용하거나 수백명이 관련된 조직형 보험범죄 및 조직폭력배가 개입된

보험범죄가 발생하는 등 그 양상이 점차 폭력화, 조직화, 지능화되고 있다.

실제로 2003년 적발된 보험사기는 총 9,315건으로 해당 금액규모는 606억 원이었으나, 2005년에는 총 23,607건, 1,802억원에 달하는 보험사기가 적발돼 2년 사이에 건수는 2.53배, 금액은 2.97배나 급증했다.¹⁾ 이는 적발건수만을 집계한 것으로 업계에서는 보험범죄로 인한 保險金의 漏水를 支給保險金의 10%로 추정할 때 최소 년 1조 3천억원이 부당하게 지급되고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²⁾

한편 손해보험협회는 보험사기 범죄자의 특징으로 일반적으로 지능이 높고, 죄의식이 결여돼 있고, 單獨犯보다 共犯關係가 많으며 최근 100여명 이상 대규모 인원이 관련된 경우가 많고, 공범은 비밀 유지가 쉬운 부부, 연인, 친인척 등 특수관계가 대부분이며, 금전 소유욕이 강하며 경제적 궁핍 등 自己合理化에 능하고, 동일한 유형의 고의사고를 반복하는 중독적 성향을 띄고 있는 것으로 분석했다. 이밖에 안정적 직업이 없거나 소득에 비해 생활수준이 높은 사람들이 보험사기를 저지를 확률이 높고, 이들은 계약심사, 손해조사 및 사정 업무를 소홀히 하는 보험사를 선택해 자발적으로 보험에 가입하는 경향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³⁾

이처럼 보험범죄가 늘고 있는 이유는 첫째, 보험사기는 운전을 하든 안하든 누구나 손쉽게 접근할 수 있고, 주변 사람들에게 전파가 쉬운 범죄 유형일 뿐 아니라 무엇보다도 보험사기에 대한 처벌이 미약하다는 것이다. 현재 보험사기 사건은 형법상 '사기죄'로 분류돼 10년 이하의 처벌을 규정하고 있으나 대부분 保險社와 합의를 통해 執行猶豫 또는 罰金刑에 처해지고 있다. 이는 미국을 비롯한 선진국에서 보험범죄를 별도의 重犯罪로 분류해 처벌하는 것과는 사뭇 다른 양상이다.

1) 금융감독원 보험조사실, 『2005년 보험사기 대폭증가』, 보도자료, 2006.3.14.

2) 대한손해보험협회, 『한국의 손해보험』, 2005.

3) 대한손해보험협회, 『보험범죄 조사』, 2005.12.

둘째, '道德的 解弛'를 들 수 있다. 보험금은 '눈먼 돈'이라는 생각에 아주 경미한 접촉사고가 발생해도 일단 병원에 입원하려고 한다. 보험개발원에서 발표한 입원을 현황자료를 살펴보면 일본이 10명당 1명꼴로 입원하는 데 반해. 우리나라는 10명 중 7명이 입원하는 것으로 조사됐다.⁴⁾

지능적인 범죄자에 의해 또는 정직한 소비자에 의해 행하여지건, 보험회사 내부직원 또는 외부의 이해관계인에 의해 발생되든지 간에 보험사기는 모든 시민들의 주머니로부터 돈을 탈취해가는, 경제의 값비싼 부담으로 점차 증가하고 있는 심각한 문제라고 미국의 보험사기방지협회(CAIF)는 경고한다.⁵⁾

보험자는 보험사기로 인한 保險金の 증대를 保險料의 인상으로 補填하려는 안이하고 소극적인 자세보다는 다수의 선량한 보험가입자가 釀出하여 조성한 保險財源의 충실한 관리자로서의 역할과 보험제도 운영주체로서의 적극적 역할의 수행이 요구되는 시점이다.

결국 보험범죄는 그 접근성이 용이하고 전염성이 강하다는 특성과 그로 인한 피해가 고스란히 善意의 보험가입자 경제적 부담으로 歸着되기 때문 이에 대한 대책이 절실하다고 하겠다.

이와 같은 관점에서 본 연구는 보험범죄의 이론적 고찰과 현황을 통해 우리나라 보험범죄의 현주소를 살펴보고, 경제범죄 담당 수사관과 보험가입자들의 의식을 조사·분석함으로써 문제점을 도출하고 合理的인 防止對策을 제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4) <http://blog.naver.com/shinyusub/120022685788>, 2006.3.9.

5) Coalition Against Insurance Fraud, *Insurance Fraud : The Hidden Tax*, <http://www.insuranceFraud.org/facts.html>.

제 2 절 研究의 範圍와 方法

보험범죄는 生命保險, 傷害保險, 損害保險, 海上保險 등에서 자주 발생하지만 본 논문에서는 보험범죄에 대한 일반적 사항을 검토하고 그 실태를 분석한다. 나날이 늘어가고 있는 保險詐欺의 규모나 실태가 國民經濟의 成長과 더불어 엄청나게 급증하고 있으며, 특히 선진국의 경우 이에 대한 실태와 조사기법이 상당히 진척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에서는 深度 있게 다루어지지 않아서 보험범죄자에 대한 단속과 대책이 미흡한 현실이다.

본 논문의 전개 순서는 총6장으로 구성하였는데 서론에 이어 제2장에서는 보험범죄와 관련된 一般的 概念을 정리하고 보험범죄의 특성과 유형에 대하여 서술한다. 제3장에서는 우리나라 보험범죄의 실태에 대하여 설명하였는데 먼저 통계지표를 통하여 보험범죄의 규모와 적발현황 그리고 사법처리 현황에 대해서 분석하였고, 아울러 우리나라 보험범죄의 특성과 시대별 변화 추이를 고찰한다. 제4장에서는 보험범죄에 관한 경제범죄 담당수사관과 보험가입자들의 의식을 조사·분석하고, 제5장은 제3장과 제4장의 분석에서 얻어진 결과를 토대로 現行 犯罪防止對策의 문제점을 기술하고 합리적인 보험범죄 방지대책을 제시한다. 제6장에서는 보험범죄에 대한 전체적인 의견을 요약 정리한다.

제 3 절 先行研究의 檢討

우리나라에서 보험범죄와 관련한 연구가 본격적으로 시작된 것은 1990년대 중반 이후라고 할 수 있다. 특히 최근 들어 경기침체와 더불어 보험범죄가 급격하게 증가하는 추세에 부응하여 학계와 보험업계 등이 중심이 되어

보험범죄 관련 세미나의 개최 등 많은 관심과 더불어 연구가 진행되고 있다.

기존의 보험범죄에 관한 연구를 살펴보면, 우선 조해균⁶⁾의 연구를 들 수 있다. 이 연구는 우리나라에서 보험범죄에 관한 본격적인 研究의 始初이자 대표적인 연구로, 보험범죄의 발생원인, 효율적 관리방안 및 방지대책에 관한 포괄적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며 이후의 실무전문가 및 연구자들, 예를 들면 조수웅⁷⁾(1993), 내남정⁸⁾(1999) 등의 연구에 많은 기초적인 정보를 제공하였다.

그 후 보험범죄에 관한 연구는 보험종목별 사례 현황(특히 자동차보험 중심) 및 분석연구를 통한 구체적이고 실무적 사례연구가 수행되었는데, 이러한 연구는 김영중⁹⁾, 김철영¹⁰⁾, 윤일현¹¹⁾ 등에 의해 수행되었다.

또한 김광룡¹²⁾, 김헌수¹³⁾는 AHP(Analytic Hierarchy Process)¹⁴⁾ 및 퍼지 이론을 이용한 보험사기 조기적발을 위한 예측모형을 연구하였으며, 김형기¹⁵⁾, 손광기¹⁶⁾ 등은 고지 의무위반 등 법률적 측면에서 대처방안 연구하였

- 6) 조해균, “보험범죄의 발생원인과 그 대처방안에 관한 연구,” 『보험학회지』, 제35권, 제1호, 한국보험학회, 1990.
- 7) 조수웅, “보험범죄와 그 대책,” 『손해보험』 '93년 3월호, 대한손해보험협회, 1993.3.
- 8) 내남정, “보험범죄에 대한 효율적 대응방안,” 『자동차보험의 현안문제와 해결방안』, 한국리스크관리학회 특별세미나자료집, 1999.6.25.
- 9) 김영중, “도덕적 위험 방지를 위한 보험범죄 사례분석,” 『손해보험』, 대한손해보험협회, 1998년 9월호.
- 10) 김철영, “자동차보험 보험범죄 유형별 사례 분석,” 『손해보험』, 대한손해보험협회, 1996년 2월호.
- 11) 윤일현, “장기손해보험에서의 보험범죄에 대한 대응방안,” 『산업과 경제』, 제8권 제1호, 강원대학교 산업경제연구소, 1998.
- 12) 김광룡, “보험사기의 조기적발을 위한 전문가시스템의 개발: 퍼지이론과 AHP를 중심으로,” 『보험개발연구』, 통권 제18호, 보험개발원, 1996.
- 13) 김헌수, “비통계적 링크분석을 이용한 보험사기의 효과적 적발방법 연구,” 『보험개발연구』, 제39호, 보험개발원, 2003. 10.
- 14) 의사결정을 내릴 때 계량화가 어려운 '감', '직감', 'feeling'에 의한 부분이 많은 점을 충분히 인식한 다음 그런 상황 속에서도 최대공약수적인 판단을 그 속에서 이끌어 내려는 수법이다.
- 15) 김형기, “보험범죄의 현황 및 대응방안,” 『상사법연구』, 제18권 제2호, 한국상사법학회, 1999.
- 16) 손광기, “화재보험 요율체계 검증과 개별위험에 대한 위험평가 모형개발,” 『보험학회지』, 제48권 제1호, 한국보험학회, 1996.

다.

이와 같이 많은 연구가 國內學者 및 實務專門家에 의해 수행되었지만 경제범죄 담당수사관과 보험가입자를 대상으로 의식조사를 통한 실증적 연구가 이루어지지 않아 미흡한 면이 없지 않았다. 특히 대부분의 외국의 보험범죄에 관한 연구가 설문조사 및 분석을 기초로 한 연구¹⁷⁾임에 반해 국내에서는 문헌 및 사례에 기초한 연구가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본 연구는 경제범죄 담당수사관과 보험가입자에 대한 설문조사를 통하여 보험범죄의 인식도, 성향 및 정책대안 추정에 초점을 두고자 한다.

17) 예를 들면 IRC(Insurance Research Council) Survey, Conning's Fraud Survey 등이 있다.

제 2 장 保險犯罪에 관한 理論的 考察

제 1 절 犯罪經濟學의 概念

1. 犯罪의 定義

범죄란 한마디로 말하면 ‘反社會的 行爲’라 정의할 수 있다. 그러나 이 行爲規定만으로는 범죄의 정의가 불완전하다. 따라서 이는 ‘법규정상 의미의 범죄’와 ‘본질상 의미의 범죄’로 나누어 봄으로써 그 실체에 접근할 수 있다.¹⁸⁾

우선 법규정상 의미의 범죄는 법률이 일정한 행위에 대하여 처벌을 규정함으로써 범죄가 되는 것을 말한다. 이렇게 概念定義를 하게 되면 실질적으로 위험성이 없다 할지라도 法律이 加罰的인 것으로 규정하면 범죄가 되며 반대로 도덕적으로 충분히 비난받을만한(moral culpability) 행위일지라도 법규정상 가벌적으로 되어 있지 않으면 그것은 범죄의 개념에 內包되지 않은 것이다.

한편 본질상 의미의 범죄는 사실상 공동생활을 침해하는 위험행위를 지칭한다. 이때 공동생활을 침해하는 구체적 대상이 무엇인가에 따라 ‘공중의 선’, ‘구성원의 권리침해’, ‘法益侵害’라고 보기도 하나 대체로 형벌을 과할 필요가 있는(punitive sanction) 不法일 뿐 아니라 社會的 有害性(moral culpability) 및 법익을 침해하는 反社會的 行爲로 보고 있다. 이를 좀 더 구체적으로 어떤 행위가 범죄로 규정되어 처벌되려면 犯意의 存在, 사회적 유해성, 公的 處罰의 對象性, 증거자료의 엄격한 증거능력의 구비 등의 요건을

18) 이상안, 『범죄경제학』, 박영사, 2005. pp.36-37.

갖추어야 한다.¹⁹⁾ 이렇게 볼 때 법규정상 의미의 범죄개념을 형법해석과 罪刑法定主義에 의한 刑法의 보장될 기능의 기준이 되는 범죄개념이 되나 이 기준에 의하면 어떤 행위를 범죄로 규정할 것인가에 대하여는 아무런 명확한 기준과 토대(solid base)를 제시하지 못한다는 결점이 있다. 반면에 형법이 단순한 道德이나 倫理를 강제화해서는 안 된다는 규범을 제시하는 것이 본질적 의미의 犯罪概念에서 비롯된 것이라 볼 수 있다. 그러나 이 개념은 立法者에게 어떤 행위를 범죄로 보아야 한다는 대상과 범위에 대한 규범적 기준을 제시할 뿐이며 형법의 규정화에는 간접적 의미를 지닐 뿐이다. 이런 의미에서 보면 범죄의 개념은 우선 본질적 의미(실질적 의미)에서 무엇이 범죄의 대상이 되는가를 먼저 보고 다음으로 법규정상 의미(형식적 의미)의 범죄개념을 法規化할 것을 요청한다고 할 수 있다. 결국 범죄의 개념정의는 다음 절의 범죄원인, 이의 연구 흐름과 패러다임의 변천에서 더 구체화함으로써 명백해 질 것이다.

2. 犯罪經濟學의 概念

범죄경제학(economics of crime)은 微視經濟學의 새로운 응용분과학문이다.²⁰⁾ 사람들은 대체로 경제학의 관심을 가격, 시장, 인플레이션, 실업, 경제성장, 기업활동 등의 현상과 연관하여 생각함으로써 범죄를 경제분석의 대상과 분석방법의 한 분야로 생각하지 않는다. 그러나 경제학이 연구대상을 人間行動(human behavior)에 두고 조건을 稀少性 原則下에 두는 한 犯罪行動(criminal behavior)도 경제학자의 본래적 연구대상이 되며 당연한 연구영역이 된다.

19) 박세일, 『법경제학』, 박영사, 1997, p.391.

20) H. David Pyle, *The Economics of crime and Law Enforcement*, Macmillan Press, 1983, p.6.

범죄경제학은, 범죄행동주체들의 범죄행위를 현미경적으로 관찰하여 이들의 逸脫, 범죄현상을 지배하는 因果論理를 糾明하고 이것과 관련된 범죄수요와 범죄공급요인 그리고 이에 대응하는 정부의 규제자원의 배분문제들을 대상으로 연구하게 되므로, 미시경제학의 새로운 분과학문의 영역에 속한다.

일반적으로 微視經濟學에서 전제하고 있는 모든 자원의 完全雇用狀態와 이로 인한 價格決定의 상대성 문제와 稀少資源의 最適配分問題가 범죄경제학에서도 중요한 연구과제가 된다. 예컨대 강도가 동일한 시간에 동일한 노력을 정당하게 사용할 경우 장기적으로 보면 보다 큰 수익을 얻을 수 있음에도 왜 범죄를 구상·계획·실행화하는 데 그 많은 시간과 노력을 투입하는지에 대해서 정확하게 이해하기 힘들다. 그러므로 이런 문제를 미시경제학적 분석방법으로 이해하고 설명하고 또 예측할 수 있게 하는 데 犯罪經濟學의 焦點이 두어진다.

3. 犯罪經濟學의 研究對象

범죄경제학의 분석단위는 자원의 욕망, 자원의 희소성, 욕망의 만족수준에 두게 되어 이 분석의 기초단위(unit of analysis)는 미시경제학의 기초단위와 일치한다고 볼 수 있다. 즉 人間의 經濟的 慾望은 無限하며 한 가지 욕망이 충족되고 나면 또 다른 욕망이 나타나고 이것은 生存의 기초적인 것에서부터 富의 蓄積이라는 無限大의 것에까지 이르게 된다.

그런데 인간의 경제적 욕망을 충족시켜 줄 재화와 서비스는 자원의 공급량에 제약을 받게 되는데 이 자원의 공급량은 또한 천연·인공자원의 부존량, 생산기술과 지식의 한계, 인구의 성장 등에 제약되므로 稀少性의 原則(law of scarcity)이 작용하게 되어 이 희소성 원칙 때문에 개인은 선택문제에 직면하게 된다. 이것이 바로 경제문제이며 이를 해결하기 위해 경제적 활

동이 있게 되고 경제전문가의 분석적 노력이 요청된다. 이때 특히 선택 및 희소성의 문제를 야기하는데 이는 滿足水準의 極大化(maximizing level of satisfaction)를 전개하게 되므로 행동극대화의 假定이 經濟分析의 기본요소가 된다.

그런데 이 행동극대화는 개인의 선택행동을 통하여 그들이 기대한 비용에 비추어 그들의 期待利益이 가장 크게 되도록 하는 것으로 이때 기대이익은 어떤 욕망의 기대만족감을 의미하며 期待費用은 욕망충족에 사용되는 희소자원을 의미한다. 經濟行爲의 主體인 개인은 이 행동극대화를 위한 노력으로 기대비용과 기대이익을 계산하는 행동을 하게 되는데 어떤 활동으로부터 기대이익이 기대비용보다 상대적으로 증가하면 그 활동을 증가시키고, 반대로 기대이익이 기대비용보다 줄어들면 그 활동을 축소·억제하게 된다.

이렇게 볼 때 경제학의 관심은 인간행동을 행동극대화 산출물로서 분석하는 데 있으며 이는 일련의 ‘實體’로 보기보다는 ‘思考의 方式’ ‘行動分析의 特征적 方法’이라 볼 수 있다. 그러므로 이와 같은 활동에는 재화의 매매, 정부관료의 행동, 결혼, 이혼, 자살, 재산분배, 性 등이 稀少性 原則下의 한 例가 될 수 있으며 범죄행동 역시 이 희소성 원칙하의 인간행동 類型에 속한다고 볼 수 있다. 다시 말하면 개인은 범죄실행을 통하여 어느 정도 만족할 수도 있다. 그러나 犯罪實行은 반드시 費用을 誘發시킨다는 점에서 경제행동과 행동유형을 같이하고 있다.²¹⁾

범죄를 일으키는 개인은 逮捕와 處罰의 危險負擔을 비용으로 갖게 되며 有罪苦痛 및 다른 방법으로 시간과 노력을 활용함으로써 얻을 수 있는 이익을 拋棄(opportunity cost; 기회비용)함으로써 또한 비용을 부담하게 되어 결국 범죄행동은 기본적으로 경제적 선택과 연관되어 있으며 따라서 경제적 분석 도구를 사용하여 분석할 수 있게 된다.

21) 이상안, 전계서, pp.47-48.

한편 범죄에 대응하는 政府의 公共政策 역시 경제적 선택과 연관되어 있다. 즉 범죄가 社會費用을 誘發·賦課시킬 때 사회는 이 비용을 줄이려고 한다. 그러나 이것은 또 다른 비용을 유발시키게 되는데 이것이 바로 범죄총손실을 줄이려는 法執行費用 및 再活프로그램 비용이다.²²⁾

결국 범죄에 대응하는 적실한 공공정책의 이슈는 범죄로 인한 비용²³⁾을 줄이고 純利益을 極大化하는 것이다. 즉 범죄의 총사회비용을 어떻게 最小化하는가에 있다. 그러므로 경제적 분석은 범죄에 대응하는 법집행 등의 공공정책(규제정책 또는 형사정책)의 분석에도 적용할 수 있으며 이 또한 중요한 연구대상이 된다.

이상의 논의를 초점으로 본 연구는 범죄경제학의 제분야에서 보험범죄(보험사기)를 중심으로 고찰한다.

4. 犯罪經濟學의 展開過程

범죄경제학은 微視經濟學의 새로운 응용학문으로서 대부분의 경제학자들은 이의 시초를 베커(G. Backer)의 세미나 主題인 “범죄와 형벌에 대한 경제적 접근”(crime and punishment : an economic approach)에 두고 있으며²⁴⁾ 이를 始點으로 이 주제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어 왔고 최근 이 주제에 대한 서적과 논문이 지속적으로 발표되고 있다.

범죄경제학이 미시경제학의 한 응용분과가 된 이래 경제학자들은 오랫동안 법의 문제와 법집행문제에 관심을 가져왔다. 스미스(A. Smith)는 「道德感

22) 구체적으로 보면 이 비용은 경찰·검찰·법원·교도소 등이 형사사법 체계 유지에 소요되는 비용을 의미한다.

23) 범죄로 인한 희생·손실과 이에 대처하는 정부의 예산부담 등

24) S. Gary. Becker, “The Economic Approach to Human Behavior,” The University of Chicago Press, 1976, p.39. 이 논문은 Becker의 세미나 주제로서 *Journal of political Economy* 76, no. 2 (March/April 1968), pp.169~217에 발표한 것임.

情論」(1759)에서의 社會秩序나 調和는 오직 인간본성의 여러 측면에 대한 확실한 統制形態에 의해 확보될 수 있다고 보고, 개인적 목적의 추구가 타인에 대해 害를 끼칠 때가 있게 되므로 正義와 道德性의 일반적 법칙이 구축되어야 한다고 보았다. 그는 더 나아가 「國富論」(1776)에서 모든 국가는 보호의 의무를 가장 최고의 기능으로 보았고 범죄와 경제적 환경과의 有關論을 주장하면서 依存心은 부패를 조장한다고 했다.

그리고 獨立心은 사람을 정직하게 하므로 범죄예방을 위해서는 독립심을 증가시킬 수 있는 상업·제조업의 창설이 좋은 警察的 機能을 한다는 것이다.

물론 스미스(A. Smith)가 범죄와 경제적 환경이 연관될 수 있다는 주장을 편 최초의 주장자는 아니나 사람이 정직하고 근면한 자세로 任할 때 좋은 빵을 만들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한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리고 모어(Thomas More)는 범죄의 가혹한 처벌을 비난하였으며,²⁵⁾ 베카리아-보네사나(Beccaria-Bonesana)는 금전적 처벌은 가난한 사람의 수를 증가시킬 수 있다고 주장하였다.²⁶⁾ 그리고 메이어(Meyar)는 근로자 계층의 경제환경 변화와 계층간 富의 隔差가 커질 때 범죄가 증가한다는 연구결과를 밝혔다.²⁷⁾

그러나 이런 주장은 롬브로서(Lombroso), 페리(Ferri)와 같은 학파 등에서는 범죄와 경제적 조건의 연관성을 무시하고 범죄의 주원인을 두개골의 이상, 감수성, 굴절행동, 種族性, 신분, 직업, 주거, 사회계층, 禁慾을 비롯한 개인의 肉體的·審美的 狀態에서 찾는다. 그러므로 범죄에 미치는 영향요인 중 경제적 요인의 영향을 상대적으로 적게 보는 입장을 취하고 있다. 그러나 벤담(J. Bentham)에 이르러서는 범죄행동은 전적으로 합리적이라는 주장이

25) Thomas More, *Utopia*, trans. by R. Robinson, Cambridge University Press, 1551.

26) C. Beccaria-Bonesana, *An Essay on Crimes and Punishments*, trans. from Italian with a commentary by Voltaire, London: Alman, 1767.

27) S. L. Mehay, "International Spillovers of Urban Police Services," *Southern Economic Journal*, vol. 43, no. 3, 1977, pp.1353-59.

다²⁸⁾. 즉 개인은 쾌락(pleasure)과 고통(pain)을 추구하게 되는데 만약 어떤 개인이 쾌락을 추구하기 위하여 범죄를 선택한다면 이것은 이 행동과 결부된 불충분한 抑制(작은 고통)가 있기 때문이라고 본 것이다.

이후 1960년대에 이르러 경제학자들은 비로소 범죄의 원인을 재논의하기 시작했으며 이때 플레이셔(B. Fleisher, 1963:1966)는 失業과 收入과 非行間의 相關分析을 통하여 非行率과 실업 및 수입간에는 강한 상관관계가 있음을 立證하였다.²⁹⁾ 그러나 플레이셔의 연구는 범죄개입의 결정에 대한 엄격한 理論的 檢證이 부족했다.

그 후 베커(G. S. Becker)³⁰⁾가 경제학자들의 效用極大化 理論들에 기초를 두고 처음으로 분석을 시도하여 범죄경제학 연구의 착수자로 인정받게 되었다. 이후 그는 범죄결정요인의 추정 및 범죄행동의 이론적 모형에 크게 기여하였으며 결과적으로 이는 경제학자들에 의해 법집행기관의 활동평가와 滴定 刑事司法政策의 결정에까지 광범하게 활용하게 되었다.

제 2 절 保險犯罪의 概念

1. 保險犯罪의 由來

보험범죄는 保險의 歷史와 그 行路를 같이 했다고 할 수 있다. 보험을 逆選擇 내지 惡用하는 보험범죄는 보험이 시작된 시기부터 많이 발생했을 것

28) J. Bentham, *Theory of Legislation*, London: Kegan Paul, 1896.

29) B. M. Fleisher, "The Effect of Unemployment on Juvenile Delinquency," *Journal of Political Economy*, vol. 71, no. 6. 1963.

_____, "The Effect of Income on Delinquency," *American Economic Review*, vol 56, no. 1. 1966.

30) G. S. Becker, "Crime and Punishment: an Economic Approach," *Journal of Political Economy*, vol. 76. no. 2., 1968.

으로 추측은 할 수 있으나 언제가 최초인지는 정확하지는 않다. 保險詐欺의 역사는 중세 베니스 상인들에까지 거슬러 올라가는데, 그들은 손실된 積荷物에 대한 보상을 요구하는 일종의 사기극을 하였던 것으로 전하여진다. 16세기 유럽에서는 賭博과 保險과의 구별이 명확하지 않을 정도로 그 성격이 類似하게 理解되었고, 특히 타인의 사망을 보험사고로 하는 보험계약에 많은 범죄가 발생하여 16세기말에는 네덜란드와 프랑스를 제외한 북유럽에서는 생명보험이 전면 금지되기에 이르렀다.³¹⁾ 近代的 生命保險의 嚆矢는 1762년 설립된 에퀴터블 생명보험회사이다. 즉 1762년 영국에서 가입연령별 保險料率表에 기초한 합리적인 생명보험을 채용한 근대적인 생명보험회사의 효시인 에퀴터블 생명보험(Equitable Life Insurance Co)이 설립되면서 도박보험의 시대는 끝났다. 근대적 생명보험의 제1대 保險殺人犯罪라고 할 수 있는 사건이 에퀴터블 생명보험에 가입한 “이네스”라고 하는 남자로부터 발생하였다. 이네스는 양녀로 하여금 에퀴터블 생명보험과 1000파운드의 생명보험계약을 체결한 후, 이 양녀를 독살하고 이네스를 유산 상속인으로 한다는 내용이 적힌 양녀의 자필서명 유서를 제출해서 보험금을 청구한 사건이 발생하였다. 이 당시 에퀴터블 생명은 이네스의 성격, 금전에 대한 집착, 사건을 둘러싼 수상한 점 등을 종합해서 유서가 가짜라고 판단해서 이네스를 고발했다. 이 訴訟에서 이네스가 遺書의 작성에 관여했다고 내세운 증인 두 사람 중 한명이 그 유서가 위조임을 폭로하였고 이네스는 사형에 처해지게 되었다.³²⁾ 이 근대적 생명보험범죄 제1호와 유사한 유형을 보면 다음과 같다. 먼저 1874년 미국에서는 메인주 브라운 필드의 클레멘트 부인이 생명보험회사에 대하여 1871년 10월 3일 저녁에 실종된 남편을 被保險者로 하는 生命保險契約에 근거하여 5000달러의 보험금 지급을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그러나 유능한 보험조사원에 의해 클레멘트가 말과 함께 추락은 했지만 강에

31) 권상열, 『보험과 범죄(생명)』, 경찰대학 수사간부 연구소, 1988, p.348.

32) 月足一清, 『生命保險犯罪: 事例解明 防止對策』, 東洋經濟新聞社, 1986. p.50.

서 빠져 나와 실종을 위장하고 있음을 밝혀냄으로써 보험회사가 승소하였다. 1877년 독일에서는 웨이스트화렌州的 웨르스텐베르그에 거주하는 대장간 주인인 깃데가 사망했고, 미망인은 사인을 과다 출혈이라고 하여 교회의 도움을 받아 매장했다. 그러나 경찰은 살인사건에 의문을 품고 묘를 파 해친 결과 묘는 빈 관 뿐 이어서 부인과 살아있는 깃데를 체포하게 되었다. 이들은 그해 여름에 4,500만 마르크의 생명보험 계약을 체결해 놓고 있었던 것이다. 한편 1896년 일본에서는 Y군에 사는 A가 B의 권유를 받고 그해 3월 15일에 건강진단을 받고 이상이 없다는 판정을 받아 보험금 300엔의 保險契約에 가입하고 3개월분의 보험료를 지불했으나 그 다음달 4월 5일에 늑막염으로 사망했다. 健康診斷時 건강하던 被保險者가 불과 한 달 만에 重病에 걸려 사망함을 이상히 여긴 보험사가 경찰에 수사를 의뢰한 결과 A와 골격이 유사한 C와 B가 共謀하여 피보험자인 A대신에 건강진단을 받고 보험금을 詐取하려고 했다는 사실을 밝혀냈다.³³⁾

외국의 경우에는 보험범죄의 역사가 일백년을 훨씬 넘어섰지만 우리나라에 있어서 보험범죄는 그 역사가 얼마 되지 않았다. 우리나라 최초의 보험살인범죄³⁴⁾는 1975년 발생한 박분례 사건이었다. 범인 박분례는 1973년 11월부터 1976년 1월 사이에 3개의 생명보험회사와 친척 8명을 피보험자로 하는 보험계약을 체결하고 보험금 1억 7천만원을 노려 언니, 형부, 조카 등 일가족을 1975년 1월에, 시동생을 1976년 5월에 두 차례에 걸쳐 방화와 독살로

33) 月足一清, “保險犯罪小論,” 『生命保險經營』, 第44卷, 1976. pp.175-180.

34) 우리나라 최초의 보험사기: 1921년 10월 13일 우리나라 최초의 생명보험회사인 조선 생명보험이 설립되었는데, 보험금을 목적으로 한 범죄가 1924년 4월 2일자 매일신보의 기사에 나타나고 있다. ‘보험외교원(모집인)의 협잡’이라는 기사로 1924년 3월에 발생한 사건이다. ‘보험외교원 조○○은 수원군 은덕면에 사는 정○○의 처 송○○과 공모하고, 1923년 8월경 수원군 마도면에 사는 이○○의 처 이XX이 병이 중하여 누워 있는 것을 기화하여, 다른 여자를 보험회사로 데리고 가서 진단을 받도록 하고 양로 보험 5천원에 계약하여 이XX가 보험에 든 것 같이 속이고, 그 후 몇 개월이 지나도록 이XX가 사망하지 않으므로 1923년 10월경 살아있는 이XX가 사망했다고 허위로 사망 신고를 당국에 제출하고 보험금 5천원을 사취하여 구속하고 징역에 처했다.

죽게 했다. 이 사건은 언니가족 살인 사건이 일어났을 때 군복무 중이던 조카가 제대한 후 어머니의 보험금을 姨母인 박분례가 타간 사실을 알아내고 추궁하던 중 1977년 9월 사건의 全貌가 밝혀져 범인은 사형 집행을 받았다.³⁵⁾

이와 같이 이미 백 오십 년 전에 발생한 사건이건, 최근에 발생한 사건이건 간에 유사한 또는 동일한 형태의 보험범죄의 특성과 유형을 나타내고 있음을 볼 수 있다. 이는 지극히 적은 보험료를 들여 막대한 보험금을 손에 넣을 수 있는 保險制度 構造自體가 근본적으로 범죄의 유혹을 부추기기 때문이다. 즉 보험은 본래 사행적 요소를 갖고 있기 때문에 보험료와 실제 보험금과의 균형이 무너지면 賭博的 保險犯罪가 발생하는 것이다. 특히 재해 사망보장의 폭이 클수록 保險의 射倖性에 관한 투기적 요소가 커져 범죄자에 의해 겨냥되기 쉬운 필연적 관계에 있다. 즉 국가나 시대를 불문하고 보험구조 자체의 허점과 보험금이라고 하는 동일한 목적물을 불법한 수단을 통하여 획득하려고 하는 行爲와 不法意思의 유사성을 항상 유지, 존속되기 때문에 오늘날까지도 잔혹하고 간교한 보험범죄의 형태와 수법들이 그대로 踏襲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된다.

2. 保險犯罪와 保險詐欺

우리나라 民營保險業界에서는 보험범죄 또는 보험사기라는 용어를 서슴없이 사용하고 있으며, 專擔部署 名稱도 「保險犯罪防止센터」 등의 표현을 쓰고 있다. 반면에 근로복지공단 등 社會保險側은 가벼운 개념으로 생각하고 道德的 解弛(moral hazard)라는 용어를 애써 쓰려는 경향이 있다. 도덕적 해이는 최근 우리나라에서도 보험 이외에 다른 사회적 紀綱의 解弛, 秩序紊亂

35) 파이낸셜뉴스 2005. 12. 27일자.

등을 두고 쓰기도 한다. 미국에서 보험사기(insurance fraud) 또는 보험범죄(insurance crime)라는 용어는 공식기구의 명칭에서 사용하고 있다. 즉 ‘미국 보험사기방지협회’(CAIF; Coalition Against Insurance Fraud), ‘全美保險犯罪防止局’(NICB; National Insurance Crime Bureau)이 그 예가 된다. 반면에 영국보험자협회(ABI)에 설치된 ‘범죄 및 사기방지국’(CFPB; Crime & Fraud Prevention Bureau)의 명칭은 보험범죄와 보험사기의 개념에 차이가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³⁶⁾

최근 우리나라에서 保險犯罪는 법률상 용어가 아니라 보험과 관련된 범죄라는 의미로 사용되다가 보험업계에서 일반범죄와 구분할 필요성에서 의도적으로 만든 보험용어라는 입장이 있다.³⁷⁾ 반면에 保險詐欺는 형법상의 용어 즉, 형법 제347조의 사기죄를 말하는 것으로서 자기 중에 보험회사가 사기 대상이 되는 경우를 말한다. 유사한 예로써 금융사기, 토지사기 등이 있다. 우리나라 보험학자나 실무자들은 최근 보험사기와 보험범죄의 용어를 혼용하면서 각자가 정의 또는 개념규정에 골몰하고 있지만 문제의 중요성에서 볼 때 법률적인 측면에서의 접근이 필요하다고 하겠다.³⁸⁾

道德的 解弛의 보험범죄적 성격을 법률적으로 접근하려면 먼저 어떠한 행위가 범죄로서 처벌되기 위해서 法이 보호하는 法益이 존재해야 하고 違法한 保險契約과 去來도 이러한 요건이 충족되면 범죄성이 인정될 수 있다는 것이다. 오늘날 法益을 형사정책적 입장에서 廣義로 해석하며 실질적인 생활 이익이나 사회적 이익 등이 형법상의 保險法益이라는 견해가 인정되고 있으므로 보험범죄의 보호법익은 보험계약관계자(보험자, 보험계약자, 피보험자, 보험수익자 등)의 재산과 생명인 동시에 公序良俗이라고 할 수 있다. 보험범죄로 인하여 발생하는 직접적인 피해는 보험계약관계자의 생명과 재산

36) 신수식, 『보험제도의 도덕적 해이: 산재보험을 중심으로』, 한국노동연구원, 2002.7. p.9.

37) 대한손해보험협회 보험범죄대책팀, 『보험범죄 방지를 위한 이론과 실무』, 1999. p.2.

38) 이병희, 『보험범죄론』, 형설출판사, 2001. pp.7-11 및 pp.122-124.

의 침해이다. 보험범죄로 지급된 보험금의 누수현상은 결과적으로 보험료의 인상요인으로 작용하여 일반 보험계약자들은 더 많은 보험료를 부담해야 하고, 생명보험의 경우는 배당금, 잉여금 등에서 손해가 발생하여 그 피해가 전체 보험계약자에게 돌아간다. 따라서 보험범죄로 인한 전체 보험계약자의 재산적 침해는 형법적으로 보호할 필요가 있는 법익이다.

<표 2-1> 보험사기와 보험범죄의 비교

	보험사기(insurance fraud)	보험범죄(insurance crime)
대 상	보험사	불특정 당사자, 보험사
개 념	-보험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하는 재산적 이득을 얻을 목적으로 보험사를 기망하는 제반 행위 -형법상 사기죄로 보험분야의 사기를 통칭(유사 사례: 금융사기)	-보험업무와 관련하여 본인 또는 제3자의 재산적 이득을 위하여 보험사에 행하는 제반 범법행위 -악질적 경제범죄로 취급하려는 의도된 보험용어 -부작위 행위 제외
관 심 사 항	-사기 폐해 -사기방지(내·외부 시스템 구축) -사기계약과 관련한 법적 조치	-범죄수법 및 처벌 -범죄예방(모방·동조범죄 차단) -범죄와 보험금 청구와의 단절

자료 : 대한손해보험협회, 『보험범죄 방지를 위한 이론과 실무』, 1999.

일반적으로 위법한 보험거래가 故殺이나 偶發적으로 일어나는 경우는 드물다. 대부분은 고의적·계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어서 행위자의 有責性を 확인하는 데는 어려움이 없다.

처벌의 필요성이 있는 위법한 보험거래에 관하여 각국의 형법에서는 보험범죄 또는 보험사기 등의 표현을 사용하고 있다. 예로서 독일형법 제265조에 보험사기(Versicherungsbetrug), 오스트리아 형법 제151조 보험의 악용, 이탈리아 형법 제642조 등이 규정하고 있다. 중국의 형사법 제183조, 제198

조 등도 ‘보험사고를 고의로 날조하거나’, ‘보험사기’ 등의 용어를 사용하고 있으며, 북한 형법에서도 동일한 취지가 규정되어 있다.³⁹⁾

오늘날 국내외를 막론하고 여러 논문과 문헌에서 保險犯罪(insurance crime)라는 용어가 많이 사용되고 있다. 국가가 보호하는 개인적·사회적 법익을 침해하는 범죄를 보통 經濟犯罪라고 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보험계약관계자의 이익과 공정한 거래질서를 침해하는 행위를 보험범죄라고 指稱하는 것은 적절하다⁴⁰⁾. 보험범죄의 대부분은 보험사기와 관련된다는 점에서 양자를 같은 개념으로 해석하려는 경향이 있다.

가장 일반화된 보험사기의 정의는 “보험가입자 또는 제3자가 받을 수 없는 保險給付를 대가 없이 받거나, 부당하게 낮은 보험료를 지불하거나 또는 부당하게 높은 보험금부의 지급을 요구할 목적을 가지고 故意的·惡意的으로 行動하는 것”으로 해석하여 사실상 보험범죄와 동일하게 취급하려 하고 있다. 보험사기가 되기 위해서는 형법상 사기죄, 즉 타인을 欺罔하여 재물의 交付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는 경우 및 제3자로 하여금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게 하는 죄(형법 제347조)가 성립되어야 한다. 이러한 보험사기는 ① 보험회사 ② 재산적 이득 ③ 기망행위 ④ 보험업무 ⑤ 보험관계인 및 제3자 ⑥ 고의 등 여섯 가지 요소로 구성되어 있다.

詐欺罪의 행위는 被欺罔者에게 착오를 일으키게 하는 기망행위이다. 기망이라 함은 널리 거래관계에서 지켜야 할 信義原則에 反하는 행위로서 사람으로 하여금 착오를 일으키게 하는 것을 말하며, 재물을 騙取不法利得의 수단으로 이용된 것이다. 보험사기는 행위의 偶然성과 質的 特性을 감안하여 硬性詐欺(hard fraud)와 軟性詐欺(soft fraud)로 구분하고 있다. 이러한 구분은 대응전략의 측면에서 유익하다. 경성사기는 保險證券에서 담보하는 재해,

39) 신수식, 전계서, pp.10-11.

40) 이병희, 전계서, p.9.

상해, 도난, 방화, 기타의 손실을 의도적으로 脚色 또는 操作하는 行爲를 말하고, 연성사기는 機會詐欺(opportunity fraud)라고도 말하며, 보험계약자 또는 보험금 청구권자가 합법적인 청구를 과장 확대할 경우에서 발생하는 것을 말한다.

예로서 연성사기는 신규 보험계약을 청약 또는 갱신하는 경우에 거짓정보를 제공하는 낮은 보험료를 낸다든지 또는 신체조건상 거절에 해당하는 사람이 보험인수가 될 가능성을 높이는 행위를 말한다. 보험사기에 두 가지 사기유형의 차이점을 <표 2-2>와 같이 정리할 수 있다.

<표 2-2> 보험사기의 구분

경 성 사 기	연 성 사 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부적법한 보험금 청구권 - 의도성 - 과다청구를 동반하는 고액 - 지능적 범죄 - 범죄전력과 관련한 경우 많음 - 공동범행 - 비사회적 용인 - 내부종사자의 공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법한 보험금 청구권 - 우연성 - 소액 - 생계형 범죄 - 범죄전력과 다소 무관 - 단독범행 - 사회적 용인 - 내부종사자의 묵인, 방조

자료 : 김헌수, “보험사기 조기적발모형에 관한 소고,” 『월간 손해보험』, 제363호, 대한손해보험협회, 1999.1.

詐欺罪에 있어서 刑法은 欺罔行爲의 類型을 명시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기망행위의 수단과 방법에는 제한이 없다. 보험계약에서 피보험자가 질병을 감추고 보험계약을 체결한 경우는 不作爲에 의한 기망행위라고 해석하고 있다. 일반적으로 보험계약자 등의 告知義務 違反行爲가 보험사기 사건에 있어서 기망행위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⁴¹⁾

41) 구체적 사례 및 판례는 이병희, 전게서, pp.125~139.

3. 保險犯罪의 特徵⁴²⁾

人間이란 하나의 개인인 동시에 사회의 한 構成員으로서 행동하기 때문에 性格과 環境 사이에는 상호작용이 이루어지고 있어 環境변화에 반응하는 성격의 적응이 끊임없이 요구되고 있다. 동일하게 주어진 환경에서 어떤 사람은 잘 적응하는 반면에 어떤 사람은 환경에 적응하지 못해 反社會的 問題를 일으키는 것과 같이 성격에 의하여 나타나는 人間の 行動樣式은 사람마다 차이는 있으나 서로 상반되는 두 개의 층동 즉 건설적이면서 파괴적이고, 사회적인 동시에 반사회적인 二重性을 내포하고 있다. 불확실한 우연적 사고를 擔保危險으로 하고 있는 보험의 경우 그만큼 보험범죄 유발이 용이한 동시에 그 특성과 성격은 많은 공통점을 가지고 있기도 하다.

가. 高度의 知能性

일반적으로 보험범죄는 단순범죄와는 달리 고도의 지능이 요구된다고 볼 수 있다. 그런 의미에서 볼 때 타인의 재산을 교묘한 방법으로 기만하여 탈취하는 사기범과 매우 유사하다고 하였다. 왜냐하면 보험을 악용, 남용하기 위해서는 복잡하고 이해하기 어려운 보험약관 내용이나 보험법을 비롯한 수많은 法律規定들을 이해하고 이용하여야 하기 때문이다. 물론 犯罪心理學의 側面에서 볼 때 범죄가 인간의 범죄 성향과 이를 자극하는 환경, 범죄의 층동을 억제하려는 의식 등의 상호작용에 의하여 유발되기 때문에 보험범죄도 반드시 지능적인 것만은 아니라는 견해가 있으나 지금까지 발견된 보험범죄자들의 일반적인 범행 수법을 보면 이들이 매우 지능적이라는 사실을 알 수 있다.

42) 조수용, 전제논문. pp.70-73.

나. 罪意識 缺如

보험범죄자는 保險會社에서 엄청난 돈을 詐取해 가지만 사취된 보험회사의 善意의 保險契約者는 이것을 거의 인식하지 못한다. 즉 계약자가 내는 보험료의 산출 기초에는 사취에 의해서 초래되는 保險給付가 포함되기 때문에 결국 사취 당한 것은 보험회사가 아니고 다수의 보험 계약자이며, 각자는 소액 일지라도 더 높은 보험료를 지불해야 되기 때문에 그 차액 분이 사취되어진 것임에도 불구하고 이를 인식하지 못하는 것이다. 또한 保險犯罪者들도 선의의 계약서에게 부담되는 차액 분이 소액이라고 하더라도 개인에 대한 詐取行爲에 대해서는 악으로서 강하게 의식하는 반면에 이와 같이 보험회사에 대한 사건행위는 경미한 범죄로서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기 쉬운 것이다.

아무리 惡한 心性을 가진 범죄자라 할지라도 범행 이후에는 심리적으로 罪意識을 느끼는 것이 보통이다. 그러나 保險犯罪의 경우는 보험금을 사취하기 위하여 살인이나 방화 등과 같이 故意的으로 보험사고를 유발하는 범죄행위자를 제외하고는 보험금 사취행위가 不法行爲라는 사실은 인식하고 있지만 심리적으로 죄의식을 느끼지 않는 것이 일반적이라 할 수 있다. 또한 사회가 보험범죄를 대체적으로 죄악시하지 않고 비도덕적 행위로 보지 않기 때문에, 이것이 보험범죄자의 심리에도 영향을 주어 범죄행위를 제어하고 반항하는 그러한 선한 인간의 심성을 약화시킴으로써 죄의식을 흐리게 한다고 할 수 있다.

다. 犯罪行爲에 대한 經濟的 評價

보험범죄자의 또 다른 특성은 범죄자가 범행을 위하여 지출하는 비용 즉

보험료와 범행을 통하여 받을 수 있는 보험금액을 경제적으로 比較·評價한 후에 범행을 行한다는 것이다. 이와 같이 不法行爲의 經濟的 價値에 대한 比較·평가는 일부 經濟犯罪를 제외하고는 대부분의 범죄에서는 발견하기 어려운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라. 非道德的 傾向

보험범죄의 또 하나의 특성을 살펴보면 범죄의 대상을 거의 家族이나 近親으로 하고 있다는 것이며, 이런 점에서 볼 때 그 行爲의 殘惡性이 그 어떤 범죄보다도 크고 비도덕적이라는 점이다. 그래서 비르겐은 “범인은 그의 처 또는 자식을 희생시켜 고액의 금전을 얻으려고 범행하며, 그에게 있어서 가족은 황금 이외의 아무것도 아니다.”라고 개탄해 마지않았다. 독일 학자 화니도 “보험범죄자는 희생자를 가족 중에서 물색하게 되는데 그 대상자로는 자신을 방어할 능력이 없는 자를 주로 하기 때문에 비열하고 잔악하기 그지 없는 성격의 소유자”라고 비탄해 마지않았다.

마. 高額保險金

보험범죄는 보험가입자의 경제력에 비해 보험금액이 엄청나게 고액이거나 범죄자가 범행을 위하여 지출한 비용과 범행을 통하여 받을 수 있는 보험금액을 경제적으로 比較·평가하여 보험자들로부터 얼마만큼의 보험금을 받을 수 있는가를 계산한 하에서 행해진다. 보험금액이 적으면 범행 가치가 없기 때문에 보험범죄에 있어서 보험금액이 고액이라는 것은 아마도 논리적으로 당연한 특성이라고 할 것이다.

바. 共犯에 의한 犯罪

보험범죄는 단독으로 수행하지 않고 2인 이상이 공동으로 수행하는 경우가 많다. 그것은 保險事故를 위장하거나 범인 자신을 범행 혐의로부터 벗어나게 하는데 유리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범인은 자기 대신 下手人을 구하고 主犯自身은 사고현장에서 멀리 떨어져 있었던 것처럼 하여 알리바이를 조작, 명확하게 하는 수단을 강구한다. 더욱이 偽裝囑託殺人の 경우에 주범 자신이 피보험자가 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보험사고 발생 후 자기 자신을 나타내지 않는다. 이때 대개의 경우 범행에 능숙한 공범이 보험사고의 위장을 주범의 지시대로 행하고 경찰이나 보험회사가 눈치 채지 못하도록 보험금 청구 절차를 밟는 특징이 있다.

사. 그 밖의 特徵

일반적으로 보험범죄자들은 契約審査業務나 危險選擇業務 그리고 損害調査業務를 소홀히 하는 회사를 찾아서 계약을 하고 범행을 하는 경향이 있다. 만약 보험회사가 계약심사업무, 위험선택업무 그리고 손해사정업무를 까다롭고 엄격하게 하게 되면 그들의 범죄행위가 쉽게 발각될 위험이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보험범죄자들은 신설보험회사나 소규모의 보험회사 등을 선택하는 경향이 있는데 그것은 이들 신설 또는 소규모 보험회사들은 영업실적만을 중요시하기 때문에 계약심사에 그다지 까다로운 조건들을 내세우지 않기 때문이다.

保險犯罪는 보험과 관련한 그 자체의 행위들(계약, 청구, 진단 등)에서 비롯되는 경우가 있지만 대부분은 보험금을 편취하기 위하여 교통사고를 유발하거나 殺人, 傷害, 放火, 損壞, 竊盜 등 先行犯罪行爲를 유발하는 것이다.

4. 保險犯罪의 增加原因

保險犯罪은 세계적으로 保險産業 뿐만 아니라 국가 경제적·사회적 차원에서 중요한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에 있어서도 과거에는 크게 이슈화되지 않았던 보험범죄의 문제는 보험회사의 입장에서는 收益性爲主의 경영전략 측면에서 그 중요성이 크게 부각되고 있으며, 최근 들어 ‘보험사기단 적발’등의 기사가 매스컴을 통해 자주 등장하면서 사회적 문제로 인식하는 단계에 와있다. 여기서는 보험범죄의 발생은 다양하면서도 상당한 복잡성을 띠며 犯罪件數가 증가하고 있는데 이러한 원인과 이유를 살펴보기로 한다.⁴³⁾

가. 保險犯罪에 대한 慣用的 態度

대부분 사람들은 保險會社를 속이는 행위를 사소하고 대부분은 용서받을 수 있는 범죄행위로서 간주하는 경향이 있다. 사람들은 保險犯罪을 租稅忌避現象과 같은 정도로 사회에 의해 관용되어지는 유형의 범죄로써, 처벌을 원하지 않는 것처럼 보인다. 그러면서 보험범죄는 자신들인 수년간 보험회사에 지급한 보험료의 일부를 挽回할 수 있는 수단으로써 이해한다. 다시 말해 貸借清算(squaring the account)의 수단으로 간주되는 것이다. 不正直한 保險契約者는 위험인수에 대한 대가로서의 보험회사의 권리나 그러한 비용을 갚아야 하는 자신의 의무를 인정하지 않으면서 다만 자신의 보험회사를 속이는데 친구나 친척들의 도움에 고마워하는 것으로 생각하는 성향을 가지고 있다.

이와 같이 사람들은 보험범죄를 묵인해 주는 성향이 있으며, 희생자 또는

43) CAIF, "Insurance Fraud : The Hidden Tax", from Internet, <http://www.insurancefraud.org>.

피해자가 없는 단순한 행위(victimless fraud)로 간주하여 관대한 성향을 갖는다. 이러한 성향은 1995년 IRC의 설문조사에서 나타났는데, 이 조사에 따르면 미국인의 보험사고 발생시 24%는 이전에 지불한 보험료를 만회하기 위해 사고를 조작하여 부풀리는 것을 인정할 수 있다고 응답하였고, 뉴욕, 뉴저지 그리고 펜실베이니아에서 수행되었던 조사에서는 대도시 주민의 거의 40%가 그와 같은 관행을 수용할 수 있다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자동차 보험계약을 청약할 때 주행거리를 줄여서 기재하는 것을 수용할 수 있다고 밝힌 미국인은 32%로 나타났으며 보험료를 적게 지불하기 위해 차고지를 거짓으로 작성하여도 괜찮다고 밝힌 미국인은 23%였다. 일부 사람들은 그들이 지불하는 보험료가 불공평하다고 느끼고 있기 때문에 자신들이 저지르고 있는 보험범죄를 정당화하는 성향이 있다.⁴⁴⁾

현실적으로 ‘保險契約의 射倖性’이라는 특성 때문에 故意性和 惡意성을 띤 불량한 위험들이 인위적으로 개입하게 된다. 따라서 일반인들은 보험범죄를 죄악시 내지는 非道德的이라기보다는 다소 잠재적이지만 긍정적으로 여기는 경우도 있다. Alfred Manes는 보험범죄에 대하여 잠재적으로 긍정적인 시각을 갖는 이유를 다음과 같이 지적했다.⁴⁵⁾

- ① 보험의 특수적인 不確實性(발생시기, 발생여부 및 손해정도의 불확실성)이 사기를 자극하기 때문이다.
- ② 보험회사에 대한 一般大衆의 그릇된 인식 및 이미지 때문에 보험금을 詐取하는 그릇된 행위를 정당한 행위로 평가하려 하기 때문이다.
- ③ 다수의 보험가입자들은 그들이 지불한 보험료를 보험범죄행위를 통하여 還拂받는 것으로 생각하기 때문이다.

44) Munich Re, *Insurance Fraud in Indemnity Insurance*, p.8.

45) 조해균, “보험범죄의 발생원인과 그 대처방안에 관한 연구,” 『보험학회지』, 제35권, 제1호, 한국보험학회, 1990. p.81.

- ④ 보험범죄 행위가 보험회사의 재산을 줄이지도 않고 다른 보험가입자에게도 어떠한 피해도 주지 않는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 ⑤ 보험범죄는 잘 발각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설사 발각된다 하여도 처벌받지 않는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이상의 이유 때문에 사회에서 保險犯罪行爲를 罪惡視하지 않으며 비도덕적·비윤리적 행위로도 보지 않음으로써 보험범죄자들은 보험관계인 및 친지들의 협조와 지원을 받아가며 보험을 악용하고 남용하기 때문에 道德的危險은 날로 증가되고 확산되어 간다.

나. 經濟的 危機로 인한 罪意識 缺如

우리나라에서 보험범죄는 열악한 노동환경, 상대적인 박탈감, 언제 문 닫을지 모르는 직장에 대한 불안감, 해고위험, 건전한 노동정신의 실종과 黃金萬能主義의 蔓延 등의 合作品이라 할 수 있다. 구조적 보험범죄의 발단이 되었던 탄광지역의 집단 逆選擇의 문제를 상기하면, 가진 자의 富와 權威에 대한 正當性을 인정하지 않겠다는 상대적인 피해의식과 소외감이 社會底邊에 깔려 있는 가운데, 최근 들어 외환위기 이후 생활고가 심화하고 貧富隔差가 벌어지면서 보험사기를 범죄로 간주하지 않는 죄의식의 결여가 점차 확산되고 있다.⁴⁶⁾

보험범죄는 피해당사자(클레임청구자)뿐만 아니라 제3자 즉, 병·의원, 정비업자, 보험사고처리 브로커 등에 의해 암묵적으로 허용되고 있는데, 일부 비양심적인 병원이 보험사기단에 虛偽診斷書를 마구잡이로 발급하는 행위 등 과잉진단에 대해 ‘보험사는 일반적으로 돈이 많고 피해자는 약자이기 때

46) 박일용·안철경, 『보험사기 성향 및 규모추정: 손해보험을 중심으로』, 보험개발원 보험연구소, 1999. 7. pp.14-15.

문'이라는 자기방어적 사고를 가지고 보험사기를 부추겨 보험범죄를 양산하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다.

다. 保險會社의 클레임 慣行

많은 보험회사들은 보험사고가 발생할 경우 피보험자 또는 수익자와 다투거나 수사기관에 수사를 의뢰하기 보다는 의심이 가는 보상청구자에 대해서도 일단 보험금을 지급하거나 명백히 違法行爲가 드러난 경우조차 단순히 보험금 지급을 거부하는 수준에서 사건을 撫摩함으로써 무의식적으로 보험범죄를 조장하는 경향이 있다. 즉 보험회사가 보통 보상청구자와 싸우기 위해 소요되는 법정비용 및 기타 손해사정비용이 혐의가 가는 보상사고라 할지라도 고객서비스 차원에서 조사를 하지 않고 조기에 지불하게 된다. 즉 많은 보험자들은 소송을 꺼리는 관행이 있어 혐의가 가는 報償件에 대해 보험금을 지급하는 것보다 더 많이 소요될 것으로 생각하여 혐의가 가는 보험사고라 할지라도 지급하는 관행이 있으며,⁴⁷⁾ 이러한 관행은 회사 경영진의 정책에 따라 회사의 이미지 제고, 경비절감 등 긍정적 효과를 가져 오는 사례도 많다.

라. 保險犯罪 幫助

보험사들의 보험범죄에 대한 인식 부재와 外形競爭이 保險犯罪를 幫助하기도 한다. 최근 우리나라에서 일어난 일가족 보험사건 주모자인 K씨(44, 여, 전직 보험설계사)가 보험을 범죄에 악용하기 시작한 것은 1989년부터이다. 10년 동안 398개 보험에 가입해 사취한 보험료는 모두 8억4천만원에 달

47) <http://www.insurabcefraud.org/facts.html>

한다. 교통사고, 스키장사고, 방화, 보석 허위 분실신고 등 갖은 방법이 동원됐다. K씨가 한 달에 내는 보험료가 월 2,000만원에 달한 적도 있다. K씨가 이 돈을 못 내면 설계사가 대신 내주기도 했다. K씨가 保險犯罪 嫌疑를 받고 있는데도 일부 회사는 대출을 해줄 테니 보험료를 내달라고 사정하기도 했다. 그 이유는 사기혐의자임에도 불구하고 그가 고액계약자였기 때문에 영업을 위해 놓칠 수가 없었던 것이다.

보험범죄의 발생 시 보험회사의 책임으로 강조되어야 할 것은 무엇보다도 계약인수가 부실하다는 것이다.⁴⁸⁾ 그만큼 계약을 체결할 때부터 詐欺로 악용될 소지도 많다. 우리나라 보험사들은 실적 위주의 영업풍토와 극한 경쟁상황에서 계약을 선별 인수하는 언더라이팅⁴⁹⁾은 거의 이루어지고 있지 않은 실정이다. 즉, 신규계약의 증가는 인사와 승진의 잣대가 되지만 일단 인수한 계약이 나중에 범죄로 연결되었는가를 살펴 인사에 반영하는 회사는 없다. 외국에서는 保險犯罪를 다루는 部署가 승진코스로 인식되고 있지만 국내에서는 단순한 後線部署일 뿐이다.

그밖에도 營業競爭을 위해 詐欺를 조장하는 상품을 개발하여 판매하는 행위이다. 예를 들면 상해보험의 경우 주말에 사망사고가 발생하였을 경우 평일의 2~3배를 보상해 주는 상품 등이 보험범죄를 부추기는 한 요인이 된다.

48) 보험개발원에 따르면, 우리나라 생명보험사들의 유진단 계약률은 평균 7% 미만인 반면 똑같은 '한국적 토양'에서 영업하는 외국계 보험사 프루덴셜생명의 유진단 계약률이 보험가입금액에 따라 다르지만 평균 60%가 넘는다. 일본의 경우 이 비율이 90%를 넘는 것이 대부분이다. 유진단 계약이란 계약 체결 이전에 진단 과정을 거치는 계약으로, 진단 결과가 안 좋으면 보험사가 계약을 거절함으로써 위장사고를 사고를 사전에 방지하는 역할을 한다. 탁희성, 『보험범죄에 관한 연구』, 한국형사정책연구원, 2000. 12. p.60.

49) 언더라이팅(under writing)이란 보험회사에서 보험가입자가 보험가입에 적절한가를 심사하여 판단하는 것임.

마. 寬待한 法執行 등 社會的 防止裝置 不在

보험범죄는 高收益 低危險(high-reward, low-risk)의 행위로서 인식된다.⁵⁰⁾ 비교적 강한 法的 制裁措置가 수반되는 미국의 경우에도 保險詐欺犯의 경우 刑량의 선고는 보통 집행되지 않거나 집행되어도 가벼운 것이 보통이다. 마약의 불법거래와 비교할 때 保險犯罪는 대부분의 사례에서 보다 안전하고 성공하기가 수월한 것으로 인식된다. 더구나 보험범죄와 연루되어 잡히거나 혐의를 받는다 하더라도 의사나 변호사 등 專門職種에 종사하는 사람들은 보호수단으로써 전문가협회 등을 활용할 수 있기 때문에 비교적 부담 없이 활동하고 있다.

또한 법정에서 채택되는 관행은 보험사기의 법 적용에서 매우 중요하다. 한때 비현실적이기 때문에 채택되지 않았던 證據主義는 오늘날 보험범죄를 취급하는 법정에서 被保險者의 입장을 강하게 지지하여 이를 채택하고 있다. 더구나 보험회사가 보험사고에 대한 損害査定時 기계적인 방법에 의해 보험금을 계산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일부 계약자들은 실제 피해액보다 많은 보험금을 받는 경우도 있게 된다.⁵¹⁾

또한 법집행권의 優先順位에 있어서도 많은 경우에서 검찰과 경찰은 사회에서 마약 및 폭력을 감소하는데 最優先權을 부여하고 있으며, 보험범죄나 기타 화이트칼라범죄((white collar crime)⁵²⁾는 인력과 기타 자원 측면에서 우선권이 부여되지 않는다. 아울러 보험회사와 감독기관, 사법당국도 보험범죄에 대한 無知와 無關心, 미흡한 협조체계, 근시안적 경영으로 보험범죄의 滋養分을 제공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보험범죄에는 다양한 사회적 시설을 활용하는 것이 요구된다. 그러나 보험범죄를 감소시키기 위한 시설이 상당부

50) <http://www.insurabcefraud.org/facts.html>

51) Munich Re, op. cit., p.8.

52) 화이트칼라 범죄라 함은 블루칼라 범죄(blue collar crime)에 대칭되는 개념으로서 '사회경제적 지위가 높은 사람들이 그 직업상 저지르는 범죄를 말함.'

분 제한되어 있거나 관련 당국자들의 활동이 다른 분야에 집중되어 있어 보험범죄를 대처하기 위한 노력의 중요성은 떨어지게 된다. 특히 사소한 보험범죄 또는 도난 등의 경우는 어떠한 피해당사자도 확인할 수 없는 소위 “피해자 없는 범죄(victimless crime)”가 되어 경찰이나 검찰 등은 단순히 습관적인 방법으로 조사하는 정도이거나 수사를 포기하는 경우도 있게 된다. 더구나 이러한詐欺犯罪의 해결건수가 점차적으로 감소한다는 사실은 이러한 유형의 범죄와 관련된 경찰이나 검찰의 활동에 있어 抑制效果를 가져오기 힘들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밖에도 보험범죄를 성공적으로 수행하는 사례는連鎖作用을 일으켜 사기범행자는 전보다 보험자를 속이기가 더 쉽다고 느끼게 되고 이러한 대중적 성향은 보험범죄를 가능하도록 유혹하게 된다.

5. 保險犯罪의 弊害⁵³⁾

보험범죄는 사회의 經濟秩序를 歪曲할 뿐 아니라 倫理意識과 價値觀에도 큰 피해를 초래하는 범죄이다. 이를 구체적으로 구분해 보면 다음과 같다.

가. 人命輕視風潮의 助長

保險犯罪行爲는 인간의 귀중한 생명과 재산을 고의적으로 살상하고 훼손함으로써 경제적 이익을 부당하게 취득하려는 것이다.

보험은 가입의 특성상 一面識도 없는 타인에 대해서 제3자가 계약을 任意로 締結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따라서 보험금을 목적으로 범행을 계획한 사람은 자신의 보험가입에 순순히 동의해주거나 保險加入에 異意를 제기할 수 없는 被保險者 또는 保險會社에서 해당 보험계약에 대해 의심을 하지 않

53) 탁희성, 전계서, pp.48-51.

을 만한 피보험자를 찾을 수밖에 없게 된다. 이 경우 피보험 대상자는 보험 범죄행위자의 주변에서 찾아질 개연성이 극히 높다고 할 것이다. 이는 부부 관계, 연인관계, 친인척관계, 부자·모자 관계, 친구관계, 양자관계 등에서 보험범죄가 행해질 수밖에 없음을 나타내는 것이라고 할 것이다. 즉 보험금이 라고 하는 재산상의 이익을 얻어내기 위하여 혈연·지연 등의 인적 신뢰관계를 악용하여 귀중한 생명과 재산을 고의적으로 살상하고 훼손하는 것이 보험범죄행위인 것이다. 이는 단순히 범죄로 인한 인명손실의 문제라기보다는 돈을 목적으로 인간관계를 악용하여 생명을 해할 수 있다는 불건전한 사고를 사회에 전염시킴으로써 인간사회의 건전한 윤리의식과 생명존중의 가치관을 무너뜨릴 염려가 있다는 점에서 사회에 큰 폐해가 된다고 할 것이다.

나. 國家經濟에 대한 損害

保險金を 목적으로 한 放火나 交通事故 誘發 등은 國家經濟에 직접적인 損害를 야기할 수 있다. 즉 보험금을 목적으로 한 방화는 공장이나 창고에 보관중인 제품을 멸실시킬 뿐 아니라 화재의 확대로 이웃의 다른 시설물들까지 막대한 피해를 야기할 수 있다는 점에서 결코 개인적 피해에 제한되는 개념이 아닌 것이다. 또한 교통사고의 고의적 유발도 차량 소유자 개인의 인적, 물적 피해에 제한되는 것이 아니라 당해 사고로 인한 처리비용의 증가, 과손된 도로설비복구 비용 등 國家的 費用의 損失도 초래하는 것이다.

다. 拜金·機會主義者 量産

보험범죄는 인간으로 하여금 정당한 노력에 의하여 생활을 하거나 經濟的 富를 축적하려고 하지 않고 부정한 방법에 의하여 경제적 富를 얻을 수 있게 하기 때문에 인간을 나태하게 하고 결국은 타락시키고 만다. 즉 재

난에 대비하는 최소한의 안전장치로서의 保險制度를 賭博化하고 범죄행위를 유발하는 제도를 악용하게 만드는 것이 보험범죄인 것이다.

행위자 스스로 신체의 일부를 훼손하여 상당한 액수의 보험금을 탄다고 하여도 그것으로 본인과 가족의 평생생계비가 될 수도 없으며, 자신 소유의 건물에 방화를 하여 보험금을 타서 일시 자금사정을 해결한다고 하더라도 이 역시 기업인으로서 自生力을 상실하는 것이 되기 때문에 이와 같은 풍조가 만연될 경우 社會가 얼마나 疲弊해 질 것인가는 예측할 수 있을 것이다.

라. 保險料率의 引上

保險犯罪는 保險料率의 引上을 초래하여 보험단체구성원 전체의 부담을 가증시킨다. 보험료란 保險契約 개개별로 놓고 볼 때는 보험자가 위험을 부담하는 代價이며, 보험계약자가 지게 되는 부담으로서 위험단체 전체적으로는 일정기간 동안의 납입된 보험료와 지급된 보험금이 균형을 유지하지 않으면 안 된다. 그러나 인위적인 방법 즉 보험범죄로 인하여 예정된 손해를 이상의 보험금을 지급하게 되는 경우 이와 같은 균형은 깨어지게 되고 이는 결국 보험단체구성원인 보험계약자 전체의 추가부담으로 작용할 수밖에 없는 것이다.

마. 保險無防備 狀態의 招來

보험범죄로 인하여 保險會社의 損害率이 증가하게 되는 경우에 보험자인 보험회사는 결국 보험판매를 제한하거나 중단할 수밖에 없게 되고 이는 정상적인 企業經營이나 안정된 개인의 생활의 영위를 어렵게 함으로써 사회, 경제적으로 불안정한 상황을 초래할 수 있다. 어떤 보험 상품에서 道德的 危險의 의심이 짙어진 경우에는 도덕적 위험의 의심이 짙어진 경우에는 우선

보험자는 그러한 도덕적 위험을 제거하는데 최선을 다할 것이고, 그것만으로 수지가 개선되지 않을 경우에는 保險料率을 引上하는 것이 원칙이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보험요율인상은 그리 용이한 것은 아니고 또 보험요율은 일반 정해두면 그것은 상당한 硬直性을 띠게 되며, 따라서 요율인상에 의하여 수지개선을 도모하기란 매우 어렵기 때문에 결국 보험자는 자위상 특정계약자나 보험물건에 대하여 계약인수를 거부하거나 해당 보험상품의 판매를 중단하게 될 수도 있다. 이는 일부 악의적인 사람들의 부도덕한 행위로 말미암아 대부분의 선의의 사람들로 하여금 보험에 의한 위험대비를 어렵게 하고 결국에는 위험을 무방비 상태로 노출시킬 수밖에 없게 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되는 것이다.

제 3 절 保險犯罪의 類型과 事例⁵⁴⁾

1. 犯罪 類型

가. 保險詐欺犯

① 故意追突 事故型

被疑者는 共犯人과 共謀하여 1997.11.9 자신의 승용차로 다른 사람 운전의 승용차를 뒤에서 고의로 추돌한 후 허의 병명을 조작, 보험사고 신고를 하고, 병원에 입원하여 보험금 4,800만 원을 騙取하는 등 총 9회에 걸쳐 4억 5,144만 원을 편취하였다.

54) 대한손해보험협회·한국형사정책연구원 공편, 『보험범죄의 형사판례 분석』, 2002.에서 발췌함.

② 一 가족 保險詐欺 加擔型

피의자는 공범인 일가족 5명과 共謀하여 1996.2.29. 위 공범 중 한 사람이 운전하는 차에 일가족이 탑승하고 가다가 고의로 터널 입구를 들이받는 자차 사고를 야기하여 대학병원 의사 등과 짜고 虛偽障害診斷書を 발급받아 1억 2,876만 원을 편취하는 등 총 14회에 걸쳐 10억 6,087만 원을 편취하였다.

③ 交通事故 偽裝 및 造作型

◇ 架空의 事故造作

피의자는 공범 2명과 共謀하여 1995.2.23 한 공범이 운전하는 차에 다른 공범이 부딪히는 사고가 전혀 없었음에도 마치 그와 같은 교통사고가 있었던 것처럼 말로만 짜 맞춘 뒤 정상적인 사고인 것으로 가장하여 병원에 입원하여 불필요한 수술을 받은 뒤 허위장해진단서를 발급받아 보험금 3억 3,060만 원을 騙取하는 등 총 12회에 걸쳐 27억 7,974만 원을 편취하였다.

◇ 故意交通事故誘發

중랑구 거주 신모(31세)씨는 친척, 친구 등과 함께 짜고 1997년.10월 초순부터 1999.12말까지 10회에 걸쳐 고의로 교통사고를 유발 시키고 중상을 당한 것처럼 병원에 입원·치료하는 수법으로 5개의 보험사로부터 3,000만 여 원을 편취하였다.

◇ 偽裝 殺害

피의자 ○○(당41세)은 사업상 1억원의 債務로 고민하던 중 자신의 名義로 사망 시 2억5천만 원의 보상금을 수령할 수 있는 보험에 가입하고, 술에 취한 행인을 동승케 하여 자신의 옷, 결혼반지 등으로 동승자를 자신으로 위장한 다음 1995.10.20.12:00경 충북 청원군 가덕면 소재 '피반령' 고개에서 교

통사고를 가장하여 차량을 고개 밑으로 추락시키고 차량에 불을 질러 消死케 한 후 자신의 처로 하여금 사망신고를 하여 고액의 보험금을 타냈다. 범행 후 전국각지를 은신 배회 중 2000.5.30 임실경찰서 역전초소차량 김문시가짜 주민등록증이 적발되면서 이를 수상히 여긴 경찰에 의해 검거되었다.

④ 組織暴力輩 介入型

◇ 조직폭력배와 連繫한 보험사기단(피의자 109명) 적발⁵⁵⁾

피의자들은 광주·전남권 전역의 오락실·당구장·노래연습장·유흥업소 등을 무대로 폭력과 金品囑取를 일삼는 속칭 “○○산과” 등 10개과 폭력 조직 행동대원과 그 추종세력의 자들인 바, 2005.10.31.02:00경 광주시 동구 수기동 소재 제일오피스텔 뒤편 일방통행로에서, 강○○ 등 5명이 미리 광주○○허○○○○호 렌트카를 대여한 후 일방통행로 중간 지점에서 대기하고 있다가, 일방통행로를 역주행 해 오는 전남○○다○○○○호 차량을 들이받아 탑승자인 김○○에게 각 2주의 상해를 가한 후 상대차량 운전자를 협박 형사 합의금 명목으로 금 500만원을 갈취하고, 자동차보험회사인 ○○화재를 상대로 협박 합의금 등의 명목으로 700만원 상당을 갈취하는 등 2003. 12월 하순경부터 현재까지 전후 44회에 걸쳐 도합 15억원 상당을 갈취하였다.

○ 사고유형

- 일방통행로 역주행 차량 선정 고의충격
- 급정거 등으로 후미추돌 사고 유도(여성 운전자, 1인 탑승자, 외지 차량)
- 주차중 후진 차량 고의충격
- 신호위반 차량 고의 충격
- 렌트카 이용 가해자·피해자 共謀

55) 광주북부경찰서 형사과 강력3팀, 범죄인지사건.

○ 검거경위

- 광주·전남권을 주무대로 활동하는 조직폭력배들이 대거 개입 연합세력을 구축 랜트카 등을 이용 고의사고 유발 후 운전자와 보험사를 상대로 협박 수익원 대의 금품을 갈취하고 있다는 첩보 입수사건.
- 금융감독원 및 해당 보험회사와 연계 고의사고 의심 사건 발취 및 사고 상대차량 운전자 등 상대 피해진술 청취.
- 위 피의자들 상호간의 계보 및 인과관계 확인 후 주 활동무대 인근 잠복하여 검거 한 것임(수사기간 3개월).

◇ 영웅과의 故意放火 保險犯罪

下剋上을 이유로 같은 조직원을 살해한 후 장기를 나눠먹은 회대의 살인폭력조직인 영웅과 조직원 10여명은 두목 정○○(당 30세)가 운영하는 술집이 경영난에 봉착하자 전선가닥을 뜯어내 누전으로 위장한 뒤 휘발유를 뿌려 불을 지르고 보험사로부터 2억5천여만원을 챙긴 것을 비롯하여, 약 15회의 고의교통사고를 유발하여 2억9천여만원의 보험금을 편취하는 보험범죄를 저지르기도 하였다.

◇ 組織暴力團을 結成, 保險詐欺로 保險金 騙取

서울 송파구 거주 조모(33세, 폭력 등 6범)씨는 고향 선후배 및 교도소동기 등 12명과 함께 1998.5월 교통사고를 가장, 保險金 囑取를 목적으로 조직폭력단을 결성하여 1998.12월 중순경 조직원끼리 교통사고를 유발, 허위진단서를 발급받아 피해자인 보험사의 보상팀장 이모씨를 동대문구 장안동 룬살롱으로 납치·감금한 후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으면 ‘쇠꼬챙이로 눈알을 빼고 가족들을 죽여 버리겠다’고 협박, 보험금 7,000만원을 갈취하는 등 1998.10.24~99.10.20간 서울, 경기일대에서 6회에 걸쳐 고의로 교통사고를 유발, 3개

보험사로부터 3억원 상당을 갈취 및 편취하였다.

◇ 大學生 毆 暴力組織, 자금마련을 위한 보험사기

대전지 거주 명모(26세)씨는 대학생 7명이 20여명의 폭력조직을 결성, 조직 운영자금을 마련키 위해 1999.11.17 대전 서구 갈마동에서 조직원 이모(19세)씨 소유 구형 소나타 승용차를 이용, 같은 조직원 김모(25세)씨 차량의 뒷 범퍼를 추돌 후 병원에 입원, 조기퇴원조건으로 보험회사와 합의하는 수법으로 4회에 걸쳐 3,486만여원을 받아 편취하였다.

⑤ 家族親知 殺害型

◇ 보험금 노려 친 자녀, 조카 등 어린이 4명 살해

건설업자인 ○○(당 36세)은 1999.8.9.21:30경 충남서산시 운산면 소재 신창저수지에서 자신의 충남35다○○○○포텐샤 승용차에 자녀 2명, 조카 2명을 태운 채 고의로 추락한 후 본인은 탈출하고 어린이 4명을 사망케 함으로써 고액의 보험금을 편취하고자 하였다.

사고 직전 高額保險 重複契約을 締結하여 추정보험금이 약 8억원으로 밝혀졌으며, 6개월여에 걸친 탐문자료 수집 및 증인 확보 등을 통해 수사의뢰한 결과 2000.6.13 서산지청에서 살인혐의로 기소 처리되었다.

◇ 보험금 노려 共犯人 愛人까지 殺害

피의자 강○○(당29세)는 거액의 보험금을 타내기 위해 애인 김○○(당23세)을, 범행대상으로 삼은 옛 직장동료 김○○(당34세)에게 소개하여 결혼시킨 후에 애인으로 하여금 남편 앞으로 5억7천만원을 수령할 수 있는 보험에 가입한 후 애인과 共謀하여 살해하였으나, 보험금 수령에 실패하자 범행이 발각 될 것을 우려해 애인도 살해한 혐의로 2000.4.23 구속되었다.

피의자 강○○은 상기 사건이전에도 부인명의로 3억원 상당의 보상금이 지급되는 보험계약을 체결하고 한○○(당33세)와 김○○(당34세)를 사주하여 아내를 교통사고로 위장하여 살해하려 시도했으나 全治 16주의 重傷에 그쳤다.

◇ 보험금 노려 남편 4번 殺害企圖

피의자 염○○(당 34세)는 남편 명의로 6억원의 보상금을 받을 수 있는 보험에 계약한 후 내연의 관계인 박○○(당 39세)와 짜고 남편을 살해하기로 계획한 후, 1차로 자판기 커피에 약을 타서 살해하려했으나 죽지 않자 남편을 쇠파치로 내리쳐 3주의 상해를 입히고 실패하자, 심지어 남동생(당 27세)까지 동원하여 전기 충격기로 살해를 시도 하였으나 또 다시 실패하자, 남편이 평소에 먹는 약에 청산가리를 넣어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內緣男 박○○의 처 김○○ 또한 평택에서 교통사고로 사망하였는데 이 또한 교통사고를 위장한 살인이 아닌지 여부 수사 중이다.

◇ 친구 시켜 보험금 노린 ‘마누라 죽이기’

익산거주 서○○(당 25세)는 부인의 명의로 5억원의 보험을 계약한 후 친구 이○○(당 24세)에게 집 한 채 값을 주겠다고 범행을 제의, 2000.2.13 익산소재 왕국면 동용리 용남저수지에 승용차를 고의 추락시켜 아내 김○○(당 22세)를 숨지게 하고 본인이 운전을 하여 사고가 난 것처럼 단순 교통사고로 위장한 후 보험금을 편취하였다.

나. 病院 關係者

① MRI 대신 撮影

피의자는 변호사사무장으로서 C를 대신하여 기왕증이 있는 환자를 C인

양 MRI를 촬영토록 하여 검사 결과를 조작, C가 이를 근거로 6천여만원을 편취하였다.

② 偽裝·代理手術型

브로커로부터 위장사고 환자들에게 “보험금을 많이 받을 수 있도록 髓核除去手術을 받은 다음 영구장해진단서를 발급받을 수 있도록 해달라”는 부탁을 받고, 환자 1인당 100만-150만원을 받고 수술이 필요 없는 환자의 腰部를 절개하여 아무런 시술을 하지 않고 그대로 봉합하였음에도 진단서에 ‘髓核除去術’을 시행하였다고 허위 작성하여 이들이 보험회사로부터 8억 5천여만원을 편취하도록 하였다.

③ 無免許 手術型

브로커의 지시에 따라 면허 없이 보험사기범을 상대로 직접 수술을 시행하고, 원장 몰래 소지하고 있던 도장을 이용, 진단서 300매를 위조하여 발급하였다.

④ 虛偽診斷書 發給型

◇ 의사 甲과 乙은 선후배지간으로서 갑은 브로커로부터 “자신이 데려가는 환자들이 보험금을 많이 받을 수 있도록 3급의 영구장해진단서를 대학병원 명의로 발급하여 달라”는 부탁과 함께 8회에 걸쳐 1,600만 원 상당의 향응을 제공받고, 위장교통환자들을 전혀 진료도 하지 않고 허위로 대학병원 명의로 영구장해 3급에 해당하는 後遺障害診斷書を 발급하고, 이를 대학병원에 근무하는 乙에게 갖다 주면, 乙도 환자를 전혀 보지 않고 甲이 작성한 진단서에 자신의 도장과 대학병원장 직인을 찍어 마치 대학병원에서 환자를 진료하고 발급한 후유장애진단서인 양 진단서를 허위로 발급하여 10억여 원

을 편취토록 하였다.

◇ 전주시거주 병원 앰블런스기사 김모(28세)씨 등 12명은 共謀하여 1999.5.8. 전주시 완산구 효자동에서 차량 3대를 동원하여 각자 운전자, 탑승객으로부터 역할을 분담, 고의로 3중 추돌사고를 일으킨 후, 피의자 김모씨가 근무하는 整形外科 등에 입원, 자동차사고를 가장한 2-6주간의 허위진단서를 발급받아 보험금을 청구하는 수법으로 총 48회에 걸쳐 7,307만여원을 편취하였다.

⑤ 入院記錄 造作型

성남시 ○○구 소재 병원 의사 남모(41세)씨는 병원 원무부장과 짜고 교통사고 피해자 장모(32세)씨가 병원에 입원한 사실이 없음에도 '99.6.9-8.6까지 59일 동안 입원 치료한 것처럼 진료기록부를 허위로 작성하여 입원치료비 명목으로 2개 보험사로부터 273만여 원을 편취하였다.

⑥ 病院關係者가 加擔한 偽裝交通事故

청량리 소재 ○○병원 기획실장 주○○(당 40세)등 5명은 승용차와 봉고 승합차를 이용해 수차례에 걸쳐 고의 교통사고를 낸 후 자신이 근무하는 병원에 입원, 상해진단서등을 조작하여 장기 입원하는 수법으로 보험금을 편취하였다.

동병원은 허위진단서 발급 등 보험사기에 적극 가담한 사실이 확인되어 병원 폐업 조치되었다.

다. 保險關聯 브로커

① 虛偽診斷型

被疑者는 변호사사무장으로서 위장교통사고 알선총책으로부터 “대학병원에서 영구장해진단서를 발급받게 해달라”며 1인당 200만-300만원을 받고 위장교통사고 피의자인 J 등에게 “엄살을 부리면서 아프다고 하고, 실제로 더 곱힐 수 있어도 조금만 곱혀라”고 지시, 이들이 진료실에서 그 지시대로 운동 각도를 허위 측정토록 대학병원 의사를 欺罔하여 결국 永久障害診斷書を 발급케 하여 2억여원을 편취하도록 하였다.

② MRI 虛偽判讀型

被疑者는 患者斡旋 브로커로부터 “보험금을 많이 받을 수 있도록 MRI 판독시 영구장해진단을 받을 수 있는 ‘椎間板脫出症’(hernia of intervertebral discs)으로 판독해 달라”는 부탁을 받고, 위장사고 환자 등에 대한 MRI를 허위로 판독하여 주어 이들이 보험회사로부터 8억 5천여만원을 편취하도록 하였다.

라. 其他

① 保險詐欺犯을 상대로 金品喝取

피의자는 보험사기범들에게 “돈을 주지 않으면 보험사기를 수사기관과 방송국에 알려 구속되도록 하겠다”고 협박하여 금 5,000만원을 갈취하였다.

② 部品 虛偽請求

경기도 소재 ○○정비공장은 재생부품을 쓰고도 신품가격으로 청구하거나, 교환치 않은 부품을 교환한 것으로 허위 청구하는 등의 방법으로 1998.5

월에 승용차 4대에 대한 부담수리비를 보험회사에 청구하였다가 허위청구 사실이 확인되어 부당청구금액 전액을 회수하였다.

③ 自作劇

피의자 김○○(당 41세)는 사업부도로 진 빚 2억여 원을 갚기 위해 자신의 집에서 스스로 왼쪽 엄지를 제외한 4개의 손가락 마디를 예리한 흉기로 절단한 후 모두 11개 보험회사에 11억여 원의 보험금을 편취하려다 보험회사 특별조사반의 제보로 검거되었다.

④ 一 가족 保險 詐欺 團

안양시 거주 용모(37세)씨는 친인척 9명과 함께 1996.7.14 홍천군 홍천읍 소재 백남 카센터 앞 노상에서 자신들의 승용차를 이용, 고의로 교통사고를 낸 후, 보험회사에서 보험금을 편취하는 수법으로 전후 3회에 걸쳐 7개 보험사로부터 4억1천만원 상당을 편취하였다.

2. 犯罪手法

가. 제1단계 : 關係者 包攝 및 保障性保險 加入

주범인 총책의 주도하에 여러 건의 보장성보험 가입을 주선할 생활 설계사와 위장사고에 가담할 공범을 포섭하였다.

가해자, 피의자 역할을 분담한 다음 피해자 역할을 맡은 사람들은 1인당 6-10개의 보장성보험에 가입하였다. 특히 P보험사기 조직원 K는 15개 회사 23개의 보험에 가입하였으며, 대부분의 보험료는 싸고 보험금은 거액인 상품을 선택하였다.

나. 제2단계 : 僞裝事故 惹起(속칭 작전)

① 法規違反 차량 대상 故意追突型

중앙선 침범 혹은 신호위반 차량을 대상으로 고의로 충돌하여 상대차량의 법규위반 사실을 약점 삼아 형사 합의금도 받아내고 병원에 입원하여 보장보험금도 수령하였다.

② 故意追突 事故型

총책의 주도하에 사전에 가해자, 피해자 및 동승자가 共謀하여 각자 역할을 분담한 다음 실제로 경미한 충돌사고를 야기한 다음 병원에 위장 입원하여 보험금을 수령하였다.

③ 架空의 事故造作型

가해자, 피해자 역할을 분담한 다음 사고현장을 방문한 뒤, 보행자 충돌 사고가 발생하였다고 말로만 교통사고를 짜맞춘 뒤 허위신고를 하여 보험금을 수령하였다.

④ 被害者 끼워넣기型

사고차량에 탑승하지 않았음에도 피해 차량에 탑승한 것처럼 피해자를 끼워넣어 신고하고 병원에 입원하여 보험금을 수령하였다.

⑤ 自車 單獨事故型

운전자와 탑승자가 共謀하여 배수로, 길옆, 옹벽 등에 빠지거나 충돌하는 경미한 사고를 조작하고, 보험사고 신고시 불가항력으로 사고가 발생하였다고 신고하고 병원에 위장 입원하여 보험금을 수령하였다.

다. 제3단계 : 病院 長期入院 및 虛偽手術

① 長期入院을 정당화하기 위해 CT 또는 MRI 촬영을 유도

MRI 촬영 결과 정상으로 판단되는 사람은 의사와 짜고 허위진단을 발급하거나, 실제 증상이 있는 사람으로 바뀌치기 하여 ‘椎間板脫出症’등의 진단을 받아 장기 입원하였다.

② 형식적으로 수술 흔적만 내는 虛偽手術施行

보험금을 많이 받기 위해서는 永久障害診斷을 받아 보험회사에 障害保險금을 청구하여만 하고, 그러기 위해서는 영구장해진단은 수술을 하였을 경우에 인정되므로 허위사고 환자의 경우 실제 다치지 않아 수술이 불가능함에도 브로커와 연계하여 의사에게 금품을 주고 수술 흔적만 남기는 허위수술을 하고 진단서에 실제 수술을 한 것처럼 조작하여 장해진단서를 발부하였다.

라. 제4단계 : 病院 障害診斷書 發給

병원 브로커가 환자들은 상대로 3급 장해진단서를 받을 수 있도록 사전에 교육시켜 의사들을 欺罔한 후 운동 각도를 조작하는 수법을 사용하였다.

개인병원 발급 진단서를 유명 대학병원 발급의 진단서로 둔갑시키는 수법을 사용하였다.

病名을 허위로 끼워넣는 수법으로 ‘外傷性 腦症候群’의 경우 실제 뇌파검사, 심리검사, 지능검사를 통하여 진단되는 병명이나, 검사를 실시하지 않고 병명에 끼워넣어 障害率을 올리는 수법을 사용하였다.

운동 각도를 측정하지 아니하고 장해진단서를 발급하는 수법으로 ‘운동 각도’에 의해 障害等級이 구분되는 것임에도 운동 각도를 측정하지 않고 급

수를 먼저 설정하여 놓고 운동 각도는 급수에 맞게 허위로 기재하였다.

마. 제5단계 : 保險金 受領(民願 및 訴訟提起)

보험회사에 보험금 청구를 하는 경우 보험회사에서 사고경위 및 치료과정에 의심을 가지고 지급을 미루면, 금융감독원 등에 민원을 제기하거나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여 보험회사에 압박을 가하여 보험금을 수령하였다(이 경우 청와대, 국무총리실 등에도 보험금 지급을 요구하는 민원서류를 제출하였음).

3. 事件의 特色

가. 組織的·繼續的 犯行

보험사기 범행은 總責의 主導下에 조직적으로 진행되고 있는바, ‘사고발생→병원 입원→수술→영구장해진단 발급→보험금 수령’ 등 일련의 절차가 준비된 수순으로 진행되며, 상호 역할에 맞게 加·被害者를 연결하는 斡旋責, 병원 알선과 수술을 전담하는 브로커, 대학병원 장해진단서 발급 알선을 전문으로 하는 브로커, 보험금을 수령해 주는 변호사사무장 등이 조직적으로 개입되어 있었으며, 그에 따라 범행이 일회적이 아닌 반복적으로 진행되도록 범행 구조가 되어 있는 양상을 보인다.

나. 專門織의 全般的 犯行

보험사기 가담자 중에 변호사사무장 12명, 중소기업 대표이사, 前○○석

단공사 勞組代議員, 보험대리점주 2명, 보험설계사, 태권도장 관장, 사채업자, 택시기사, 가정주부 등 직업이 다양하고 범행동기 역시 生活苦, 不倫關係에 의한 약점 노출, 도박자금, 주택구입자금, 생활설계사들의 보험모집수당 확보 등으로 다양하며, 사회지도층 인사인 병원장을 비롯한 대학병원 의사들이 금품을 수수하고 보험사기단의 범행에 적극 개입한 것으로 드러나, 우리 사회의 전반적인 道德的 墮落과 黃金萬能主義가 심각한 수준에 이르렀음을 보여주고 있다.

다. 家族單位 保險詐欺 盛行으로 인한 家庭破壞

범행 비밀을 유지하고 보험금을 편취하여 家政經濟의 빈곤함을 해결하기 위하여 부부, 형제, 남매 및 일가족 전체, 심지어 內緣關係의 여자를 동원하여 위장사고에 가담케 하여 피해자로 만들어 보험사기에 가담하였다.

라. 醫師들의 不正 診療行爲 介入擴散

① MRI 判讀紙 造作

개인병원이나 병원의 경우 고가의 MRI 기계가 설치되어 있지 않아 전문방사선과에 환자를 의뢰하는 것을 기회로 보험사기범에 대한 MRI 검사 결과 '正常' 및 '椎間板膨潤症'(Bulging-disc)으로 나왔음에도 브로커의 부탁을 받고 3급 永久障害診斷을 받을 수 있는 '椎間板脫出症'으로 판독 결과를 조작하였다.

② MRI 대신 撮影

일부 위장사고 환자의 경우 허리의 상태가 깨끗하여 진단이 나올 수 없

게 되자 기왕증이 있는 환자로 하여금 대신 촬영하게 하여 원하는 병명으로 MRI 검사 결과를 조작하였는바, 이들은 MRI 촬영시 환자의 신분을 확인하지 않고 촬영하는 병원 행정상의 허점을 악용한 것으로서, 환자에 대한 철저한 인적사항 확인이 요구된다.

③ MRI 撮影機械 誤操作을 통한 病名 造作

MRI 촬영시 환자가 허리에 힘을 주거나, MRI 기계가 떨리면 ‘退行性 膨潤症’이 ‘椎間板脫出症’으로 판독될 수 있도록 검사 결과가 나올 수 있으며, 실제 이러한 방법으로 병명을 조작하여 준 사실이 있다고 한다.

④ 患者 誘致를 위한 리베이트 提供

방사선과병원에서 환자들의 검사를 계속적으로 誘致하기 위하여 병원의 원무부장의 변호사 사무장들에게 환자 1인당 5만원에서 8만원을 주고 지속적으로 환자 유치를 해 왔고, 더 나아가 病名判讀을 환자에게 유리하게 해주는 수법으로 환자들을 유치하여 온 사실도 확인되었다.

⑤ 虛偽手術

일부 보험사기범들과 유착된 병원에서 髓核除去術과 관련하여 실제로는 위 수술을 하지 않고 허리에 수술한 흔적만을 내고 있다는 소문을 실제로 확인한 최초의 수사였다.

⑥ 無免許 醫療行爲

S병원의 경우 자격이 없는 원무부장(간호조무사 자격)으로 하여금 위장 교통사고 환자에 대한 위 수술을 대신하게 한 사실이 확인되어 의료기관의 부도덕성이 최고조에 달한 것을 반영하고 있다.

⑦ 虛偽診斷書 發給

본건 수사를 통하여 병원사무장이 의사 印章을 위조하여 진단서, 소견서, 장애인단서, 심신장애자진단서 등 약 300매를 허위로 발급하여 준 사실을 확인하고, 또한 대학병원 의사와 개인병원 의사가 상호 결탁하여 개인병원 의사 발급의 장애인단서를 대학병원 발급의 장애인단서로 위장하여 보험회사에 제출케 하는 등 부정진단서 발급의 신종 수법을 확인하였다.

⑧ 法院囑託 身體鑑定書 虛偽 作成

일부 대학병원 의사들이 법원촉탁 신체감정에 필요한 검사인 MRI 撮影이나 筋電圖 檢査 등을 개인병원에 의뢰하여 이 과정에서 상호 결탁하여 환자들을 보지 않고 허위 신체감정서를 발급한 事例를 확인하였다.

제 3 장 保險犯罪의 實態

제 1 절 우리나라 保險犯罪 現況

1. 摘發 現況

우리나라의 保險市場은 꾸준히 성장을 거듭하여 세계 8위의 보험선진국이 되었으나 이에 동반하여 保險犯罪 또한 매년 급증하고 있다.

2004년도 保險詐欺 摘發件數는 <표 3-1>에 나타나 있듯이 損害·生命保險 총 16,513건으로 2003년 대비 77.3% 증가하였고, 摘發金額은 1,290억원으로 전년 대비 112.9% 증가하는 등 전년과 비교하여 대폭 증가하였다. 2005년도 보험사기 적발건수는 23,607건으로 2004년(16,513건) 대비 43.0% 증가하였고, 관련금액은 1,802억원으로 2004년(1,290억원) 대비 39.6% 증가하였다.

<표 3-1> 보험사기 적발현황

(단위 : 건, 백만원, %)

구분	2002			2003		2004		2005	
	2001	증감률	2002	증감률	2003	증감률	2004	증감률	2005
적발건수 (A)	5,749	0.1	5,757	61.8	9,315	77.3	16,513	23,607	43.0
관련금액 (B)	40,440	1.7	41,132	47.3	60,605	112.9	129,039	180,198	39.6
건당금액 (B/A)	7.0	1.4	7.1	-8.5	6.5	20.0	7.8	7.6	-2.6

자료 : 금융감독원, 『2005년도 보험사기 적발현황』, 2006.3. p.10.

보험사기 적발현황을 보면 대규모 組織型 故意事故 및 문제 병·의원, 정비공장의 보험금 부당청구에 대한 공동조사 강화와 경찰청의 보험범죄 기획수사 추진, 일선에서 조사업무를 수행하는 수사요원 및 조사요원에 대한 보험범죄 방지교육이 상당한 효과를 擧揚함으로서 保險詐欺 摘發實積이 대폭 증가하였다. 또한 보험범죄 조사를 통한 예방효과는 적발금액의 4~6배에 이를 것으로 예상되므로 실제 保險金 漏水 節減效果는 상당할 것으로 추정된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보험사기로 인한 漏水金額이 연 1조3천억원 정도로 推算되고⁵⁶⁾ 있는 점에 비추어 볼 때 적발 규모는 아직 미미한 실정이다. 또한 保險金을 虛僞로 騙取하는 행위가 實定法上 명백한 詐欺罪임에도 불구하고 어려워진 經濟事情 및 拜金主義 風土, 道德的 不感症의 蔓延으로 전국에 걸쳐 보험범죄가 확산되고 있으며, 특히 나라의 근간이 되어야 할 청소년 및 청년층의 保險犯罪가 폭증하고 있는 실태이다.

이에 대해 2004년 한해 경찰청에서는 보험사기를 公益犯罪 剔抉 次元에서 연중 기획수사를 실시하였으며, 손해보험협회와 손해보험사에서는 지속적으로 수사기관과 共助하여 점차 지능화·조직화되고 있는 보험사기에 강력 대응하였고, 보험범죄방지 홍보를 강화함으로써 보험범죄 적발에 노력하는 한편 社會的 警覺心을 유발하였다.

2. 類型別 現況

<표 3-2>와 같이 2005년 발생한 保險犯罪 유형별 적발건수 측면에서는 운전자 바뀌치기 6,240건(26.4%)가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保險事故의 被害誇張 4,742건(20.1%), 보험사고가공 3,686건(15.6%) 등의 순으로 적발되었다. 그

56) 금융감독원 보험조사실, 『2005년 보험사기 대폭증가』, 보도자료, 2006.3.14.

러나 운전자 바꿔치기의 경우는 대부분 1인에 의한 1건 사고위장 건으로 운전자가 刑事處罰을 모면하기 위하여 우발적으로 저지르는 경우가 대부분이며 이에 대한 피해자 또는 목격자의 진술 등에 의해 상당수의 범행사실이 밝혀지기 때문에 높은 件數를 기록한 것으로서, 건당 평균 적발금액은 4.5백만원으로 사기유형 중 가장 낮았다.

관련금액 측면에서는 <표 3-3>과 같이 보험사고의 피해과장 412억원(22.9%), 故意保險事故 298억원(16.6%), 保險事故架空이 293억원(16.3%) 順으로 적발되었는데, 이는 대부분이 자동차사고나 상해사고와 관련하여 사고내용을 조작하여 피해를 과장하거나 加害者不明事故로 신고하여 보험금을 騙取하는 경우 등에 기인한 것으로 판단된다.

<표 3-2> 보험사기 유형별 현황(2005)

(단위 : 건, 백만원)

구분	고의 보험 사고	보험사고 가공	보험사고의 피해과장	사고 후 보험가입	운전자 바꿔치기	사고차량 바꿔치기	기타	계
적발 건수	2,231 (9.5)	3,686 (15.6)	4,742 (20.1)	2,018 (8.5)	6,240 (26.4)	1,256 (5.3)	3,434 (14.5)	23,607 (100.0)
관련 금액	29,849 (16.6)	29,337 (16.3)	41,186 (22.9)	18,285 (10.1)	28,224 (15.7)	6,344 (3.5)	26,973 (15.0)	180,198 (100.0)
건당 금액	13.4	8.0	8.7	9.1	4.5	5.1	7.9	7.6

주 : ()는 구성비
자료 : 금융감독원, 『2005년도 보험사기 적발현황』, 2006.3. p.3.

또한 고의보험사고가 두 번째로 많은 금액을 차지한 것은 보험사기자들이 더 이상 피해과장이나 순간적인 유혹에 의하여 보험사기를 저지르는 것이 아니라 보험금 편취를 목적으로 事前 共謀를 통하여 보험사기를 저지르고 있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표 3-3> 연도별 유형별 적발금액 현황

(단위 : 백만원, %)

구 분	2001	2002	2003		2004	2005	2005		
			증감 율	증감 율			증감 율	증감 율	
고의 보험사고	10,815	11,298 (27.5)	4.5	10,648 (17.6)	-5.8	32,277 (25.0)	203.1	29,849 (16.6)	-7.5
보험사고 가공	2,085	3,638 (8.8)	74.5	8,020 (13.2)	120.5	15,894 (12.3)	98.2	29,337 (16.3)	84.6
보험사고의 피해과장	4,256	3,773 (9.2)	-11.3	10,462 (17.3)	177.3	29,254 (22.7)	179.6	41,186 (22.9)	40.8
사고발생후 보험가입	4,045	2,824 (6.9)	-30.2	4,872 (8.0)	72.5	12,294 (9.5)	152.3	18,285 (10.1)	48.7
운전자 바뀌치기	11,685	11,363 (27.6)	-2.8	13,593 (22.4)	19.6	20,432 (15.8)	50.3	28,224 (15.7)	38.1
사고차량 바뀌치기	3,371	2,983 (7.3)	-11.5	3,674 (6.1)	23.2	5,080 (3.9)	38.3	6,344 (3.5)	24.9
기 타	4,183	5,253 (12.8)	25.6	9,336 (15.4)	77.2	13,808 (10.7)	47.9	26,973 (15.0)	95.3
합 계	40,440	41,132 (100.0)	1.7	60,605 (100.0)	47.3	129,039 (100.0)	112.9	180,198 (100.0)	39.6

주 : ()는 구성비임.

자료 : 금융감독원, 『2005년도 보험사기 적발현황』, 2006.3. p.1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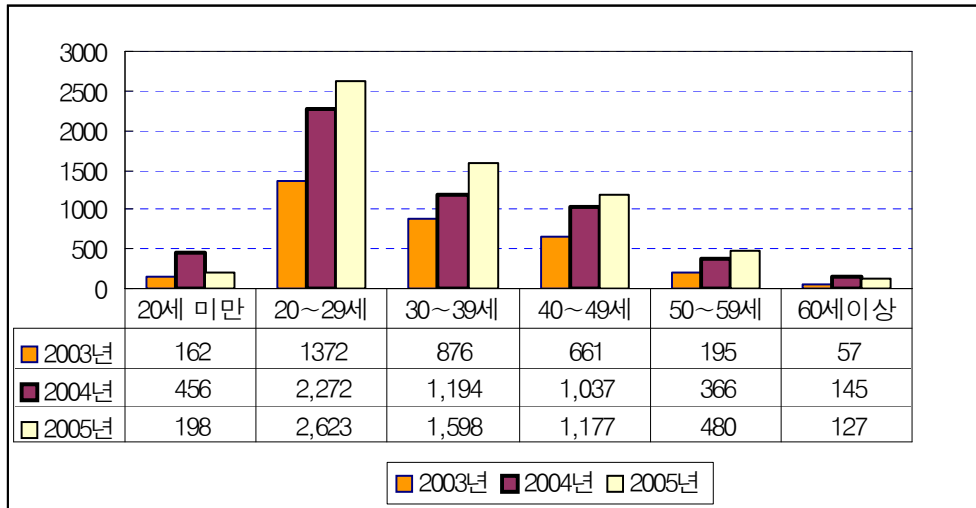
3. 年 齡 別 現 況

연령별로는 20~29세의 연령층이 전체의 42.3%(2,623명)를 차지하고 있으며 30~39세의 연령층이 25.8%(1,598명), 40~50세 연령층이 19.0%(1,177명)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의 42.3%를 차지하는 20~29세의 연령층은 外換危機 이후 실업률의 증가와 함께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그림 3-1> 참조).

그러나 그동안 지속적인 증가 추세를 보이던 20세 미만의 연령층에서는 전년 대비 56.6%(456명→198명)의 감소 현상이 나타나고 있는데, 이는 청소년층이 주로 저지르는 단순 보험사기보다는 전문보험사기단을 중심으로 企劃調査를 실시한 것과 더불어 금융감독원 및 사회 각계에서 청소년층을 대상으로 실시한 다양한 經濟教育의 효과로 판단된다.

<그림 3-1> 연도별 연령별 현황

(단위 : 명)



자료 : 금융감독원, 『2005년도 보험사기 적발현황』, 2006.3. p.6.

4. 職業別 現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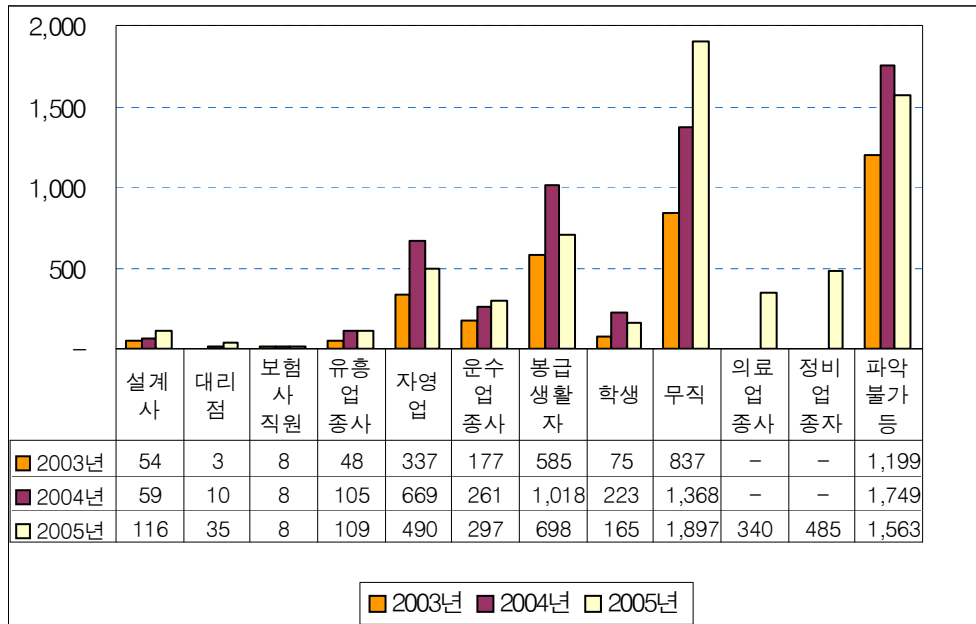
보험사기 관련자를 직업별로 보면 無職者가 전체의 30.6%(1,897명)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였으며, 정비업체 종사자 및 의료업계 종사자도 13.3%(825명)를 차지하고 있다. 이는 직·간접적으로 보험사기에 필연적으로 개입하게 되는 의료 및 정비업체 종사자에 대한 중점적인 기획조사를 강화하

여 적발건수가 높게 나타난 것에 기인한 것이다.

또한 전년대비 증가율을 살펴보면 설계사 및 대리점이 연관된 보험사기가 전년대비 118%(69명→151명)의 증가율을 보였는데, 이는 내부보험사기 근절을 위해 업계가 보험설계사 및 보험대리점을 중심으로 기획조사를 강화한 것에 기인한 것으로 판단된다.

<그림 3-2> 보험사기 관련자 직업별 분포

(단위 : 명)



자료 : 금융감독원, 『2005년도 보험사기 적발현황』, 2006.3. p.7.

5. 司法處理 現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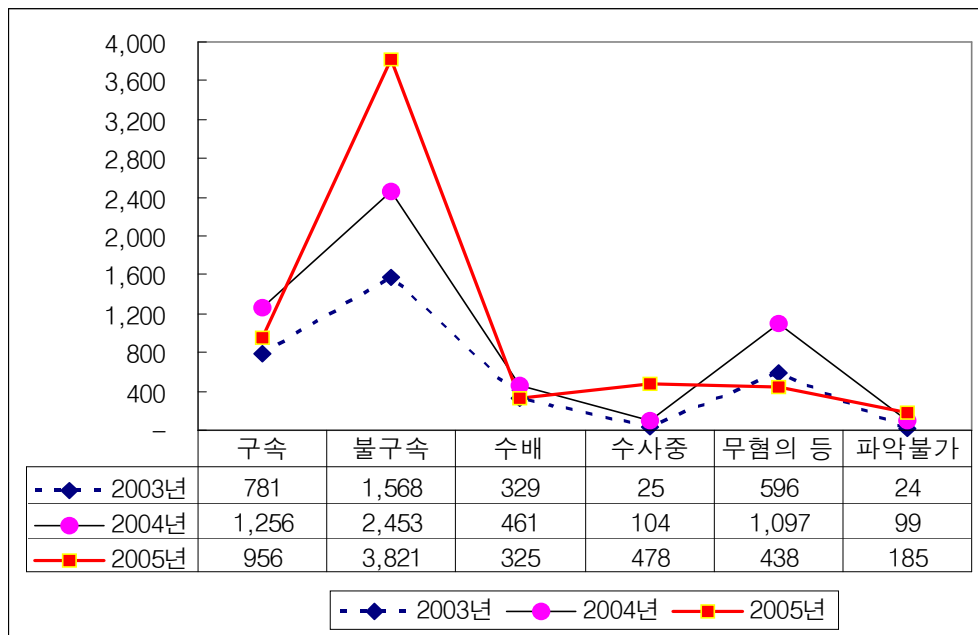
2005년도 보험사기 관련자는 6,203명으로 2004년(5,470명) 대비 13.4% 증가하였으며, 不拘束立件은 3,821명(61.6%), 구속은 956명 (15.4%) 등으로 나

타났다.

2004년 대비 유형별 사법처리 현황을 보면, “무혐의”의 비율이 1,097명에서 438명으로 60.1% 감소했다. 이는 保險詐欺認知시스템을 활용한 보험사기 혐의자의 보험사고 내역 및 사기유형 등 과학적이고 종합적인 분석에 의한 조사를 실시한 결과로 해석되며, 앞으로도 無嫌疑 비율은 점차 감소될 것으로 전망된다.

<그림 3-3> 연도별 사법처리현황

(단위 : 명)



자료 : 금융감독원, 『2005년도 보험사기 적발현황』, 2006.3. p.5.

제 2 절 保險犯罪對應의 問題點

1. 保險業界의 問題點

保險會社들은 보험범죄의 심각성을 오래전부터 인식하여 契約審査機能을 강화함은 물론 손해사정업무를 철저화, 합리화하기 위하여 보험범죄의 嫌疑點을 용이하게 찾을 수 있도록 보험분야별로 保險犯罪指標를 만들어 계약심사 시 그리고 損害調査時 및 損害査定時에 이를 엄격하게 활용하고 있다. 최근에 와서는 자동차보험분야에서 손해보험회사들이 전문수사요원을 채용·활용하는 방법으로 보험범죄에 적극적으로 대처하고자 노력하고 있다.⁵⁷⁾

그러나 많은 보험회사들은 최근에 이르기까지 實積爲主의 經營政策을 固守하고 있기 때문에 계약심사기능을 輕視하며 사전적으로 보험범죄가 예상되는 불량한 위험의 混入을 방지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또한 손해조사 및 사정업무를 철저화, 합리화하기 위한 노력을 경주하기 위해서 대부분의 회사들이 보험범죄지표를 만들어 활용하고 있지만 이들이 사용하고 있는 보험범죄지표는 실제로 보험범죄자들이 가지고 있는 공통적인 특성들 가운데 일부 사항만을 지표화한 것으로서 실무상 활용하는 데에 문제가 있다. 이러한 보험범죄지표를 효과적으로 활용하기 위해서는 모든 클레임에 대해 연관성 있는 詐欺指標에 관한 데이터를 수집할 필요가 있는데 현재 우리나라 보험현실에 있어서는 그러한 기초적이고, 정밀한 데이터가 分類·蓄積되어 있지 못하기 때문에 사실상 보험범죄자의 특성을 나열한 것에 불과한 수준에 머물고 있다고 할 수 있다. 또한 보험회사내의 損害調査 및 査定業務擔當者들 자체가 보험범죄에 대한 전문지식을 결여하고 있다는 것도 중요한 문제로 지적할 수 있겠다.

57) 안철경·박일용, 『보험사기 적발 및 방지방안』, 보험개발원, 1999. p.107.

그리고 보험회사들이 공동으로 대처해야 할 사안에 대해서도 共助體制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점이다. 여기에는 업계간 資料共有가 영업비밀의 流出로 이어져 자신들에게 타격으로 돌아올 수 있다는 경쟁심리가 깔려있다.

또한 보험범죄에 대처하기 위한 조사 및 研究活動이 未盡할 뿐만 아니라 일부의 조사, 研究成果마저도 그 결과가 정책이나 실무에 거의 반영되지 못했다는 점이다. 이는 우리나라 보험사 경영자들이 외형적인 영업성공에만 매달려 시간과 비용이 많이 걸리는 보험범죄 방지에는 상대적으로 신경을 쓰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생각된다.

2. 搜查上の 問題點

일반적으로 搜查機關은 조직적인 폭력배와 결부된 살인이나 강도, 마약 등 강력사건에 대해서만 관심과 수사력을 집중시킬 뿐이며, 보험사기와 같은 보험범죄에 대해서는 그다지 관심을 갖고 있지 않다. 따라서 보험범죄에 대한 수사기관의 자발적인 수사는 기대하기 어려우며 보험회사의 보험사기 조사팀에서 認知·摘發한 사건에 대해 작성한 搜查資料를 제공하는 경우에 한해서 수사를 하고 있는 정도이다. 이 경우도 모든 보험사건을 다 수사하는 것이 아니라 組織暴力輩의 개입이나 집단적·기업적 사기사건 등의 경우만을 수사대상을 한정하는 것이 보통이다.⁵⁸⁾

따라서 보험회사의 사기조사팀에서 수사기관에 적극적으로 수사를 부탁해야만 수사가 행해지는 상황이라고 할 수 있다. 이와 같이 수사기관이 보험사기수사를 기피하는 첫 번째 이유로는 우선 수사관의 搜查業務成績이나 褒賞 등에 있어서 보험사기가 폭력 및 살인사건, 마약사범 등의 중범죄에 비해 後順位로 뒤처지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다. 보험사기 수사를 기피하는 두 번

58) 상계서, p.80.

제 이유로는 수사기관자체에 보험범죄에 관한 전문지식을 갖고 있는 인원이 없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다. 세 번째 이유로는 보험사기 수사가 社會惡으로서 犯罪를 剔抉하는 것이 아니라 보험회사의 이익을 위하는 것이라는 인식이 수사관들의 無意識속에 자리 잡고 있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다.

현재 경찰이나 검찰에서 적발되고 있는 보험범죄는 대부분 위장 교통사고사건이고 보험금편취를 목적으로 한 살인·상해사건이 그 다음을 차지하고 있다. 偽裝交通事故事件의 경우 보험회사의 제보나 교통사고 조사과정에서 조작의혹제기 등 자체 첩보에 의하여 수사에 착수하여 적발하고 있다. 보험관련 살인·상해사건은 통상 보험가입관계 및 보험내역(보험계약시기, 피보험자, 수익자, 계약자) 등을 追跡搜查하면서 어느 정도 보험사기 조작의혹이 제기되는 경우에 공범자의 진술 등 관련자료를 가지고 피의자를 상대로 추궁하여 적발하고 있다. 이러한 보험관련사건은 사전에 조직적으로 치밀하게 이루어지므로 수사 착수단계에서부터 검거하기까지 장기간의 시간이 소요되고, 증거자료를 사전에 隱匿·湮滅시키고 있으므로 증거확보에 상당히 어려움이 따르고 있는 실정이다. 특히 어느 정도 확보한 증거를 가지고 피의자를 추궁하는 경우에도 피의자들이 범행사실과 보험과의 연관관계를 완강히 부인하고 있어 수사에 어려움이 많다. 수사실무상 이러한 보험범죄사건들은 철저한 사건 기록검토와 수사관의 끈기 있는 수사의지 여하에 따라 사건 해결의 승패를 좌우하고 있기 때문에 수많은 범죄사건을 해결해야 하는 상황에 놓여있는 수사관들이 다른 범죄에 비하여 경하다고 할 수 있는 보험범죄(살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에만 전력을 다하기 어렵다는 점에서 보험범죄의 수사는 뒷전으로 미루어지기 쉬울 수밖에 없다고 할 것이다.

3. 保險犯罪에 관한 法律上的 問題

보험회사와 보험계약자를 규율하는 保險契約法⁵⁹⁾의 存在意義는 주로 대량거래의 공정성과 신속·원활을 위한 것이다. 그러나 그 법안에 내재하고 있는 不法行爲를 묵인 내지 조장하는 불완전성·불확실성으로 인해 부도덕이 惹起될 수도 있다고 할 수 있다. 보험범죄와 관련하여 보험계약법상의 문제를 논의함에 있어서 상법상 생명보험에 있어서의 동의조항(상법 제731조), 손해보험에 있어서의 중복계약조항(상법 제672조), 통칙부분의 자살조항(상법 제659조) 외에 사기무효조항의 추가 및 舉證責任⁶⁰⁾의 配分 등이 언급되어질 수 있다.

가. 同意主義의 限界

商法 제639조에 의하면 원칙적으로 제3자가 타인을 위하여 보험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특정 또는 不特定他人을 위한 보험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 委任의 存否는 그다지 중요하게 규정하고 있지 않다. 즉 상법상 보험계약자와 피보험자가 불일치하는 경우에 被保險者의 同意를 원칙적으로 요구하고 있지 않는 것이다.

모든 보험에 있어서 피보험자의 동의를 요한다고 하게 되면 보험가입 자체가 매우 곤란하거나 불편해 지는 경우가 있을 수 있다. 예를 들면 단체로 회사에서 가입해주고 보험료를 지불해주는 직장인 보험 등이 그 대표적이라고 할 수 있다. 이와 같이 보험의 성격상 피보험자 개개인의 동의를 구할 필요가 없고, 그 보험에 보장된 위험의 정도가 범죄에 연결될 蓋然性이 적은

59) 보험계약법은 단행법률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상법 제4편 「보험」에 관한 규정을 의미하는 것이다.

60) 소송법상의 증거의무로서 의무자가 법원을 설득할 수 있는 증거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에 입게 되는 소송상의 불이익.

경우에는 굳이 보험계약자로 하여금 피보험자의 書面同意를 첨부할 것을 요할 필요는 없다고 본다.

현행 상법상 규정으로는 生命保險과 傷害保險의 경우에 피보험자의 서면 동의를 요구하고(상법 제731조, 제739조) 있으며, 損害保險의 경우에 타인인 피보험자의 委任不在를 보험회사에 告知하도록 하는 규정을 두고 있다. 특히 생명보험과 상해보험의 경우에는 사람의 생명과 신체의 안전성에 대한 위험을 담보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도덕적 위험이 발생하는 경우에 심각한 범죄행위와 연결되어 人命輕視風潮를 유발할 수 있다는 점에서 피보험자의 서면 동의를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생각되며, 그러한趣旨는 매우 타당하다고 생각된다.

다만 보험범죄자들이 피해자를 친인척이나 가족 중에서 選定하는 경향이 있다는 점에서 보면 가족이나 친인척을 피보험자로 하는 보험을 계약하는 경우에 동의를 위장하기가 용이하다는 것이 가장 큰 문제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보험료 대비 보험금의 지불액이 높고, 범죄로서의 逆選擇의 가능성이 있는 보험유형에 대해서는 보험계약자와 피보험자가 불일치하는 경우 반드시 피보험자의 서면동의를 요구해야 하며, 보험계약서상에 피보험자의 서명 날인이 요구된다고 해야 할 것이다. 또한 보험회사 측에서는 피보험자의 保險加入 同意與否를 전화로 확인하는 절차를 갖추는 것도 보험범죄를 예방한다는 측면에서는 매우 유용한 방법이라고 할 수 있다.

나. 重複契約의 制限

損害保險의 경우에는 동일한 보험계약의 목적과 동일한 사고에 관하여 동시 또는 순차로 가입하는 重複保險을 제한하고 있으며, 보험계약자로 하여금 이를 반드시 통지하도록 의무화하고 있다(상법 제672조). 이와 같이 중복

보험계약을 제한함으로써 범죄의 목적으로 다수의 보험에 가입하여 막대한 보험금을 詐取하려는 의도를 처음부터 배제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生命保險의 경우에는 이러한 중복보험계약을 제한하는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는 점에서 문제가 되고 있다. 생명보험은 사람의 생명에 대한 위험을 담보하기 때문에 약정 보험금이 매우 높아서 이를 수개 가입하는 경우에는 한 번의 범행으로 수십억의 보험금을 탈 수 있다는 逆選擇의 유혹이 매우 크기 때문이다. 더구나 생명보험의 경우에는 다른 보험에의 가입여부를 고지할 의무가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얼마든지 타 보험회사의 보험가입사실을 숨기고 보험에 가입하여도 나중에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다.

오히려 보험계약신청시 他保險會社에서 가입이 거부된 것은 위험이 많다고 추정되기 때문에 타보험회사에 보험가입사실이 존재한다는 것이 결코 보험료총액과 보험금총액과의 사이에 균형을 깨는 위험선택상 필요한 사실이라고 할 수 없게 되는 것이다.

손해보험에 있어서 보험자에게 他契約의 존재를 알려야 하는 근거로 드는 것은 첫째, 同種의 계약이 과도하게 청약될 때 경계하여야 하고 둘째, 타보험회사와 손해의 분담에 관한 자기 부담액의 감소기회확보 셋째, 自社保險契約의 내용결정시 타계약의 참고 필요성 넷째, 보험사고발생시 손해액 조사의 공동대처 등이다. 이와 같은 중복계약제한 및 통지의 필요성의 근거는 생명보험에 있어서도 동일하다고 볼 수 있다. 현실적으로 손해보험의 재해, 질병입원특약의 타계약 중복가입에 따른 악용사례가 많이 발생하는 점과 생명보험범죄의 경우에 대다수가 고액의 재해사망특약보험에 중복가입하는 양상이 동일하게 나타난다. 이와 같이 다수의 타계약의 존재를 비밀리에 하는 계약에 있어서는 위험의 개연성이 높아진다고 볼 수 있는 것이다.

따라서 생명보험과 상해보험에 대해서도 중복계약을 고지하도록 의무화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된다. 일부 惡用者에 대한 조치로 인해 다수의 善意

加入者에게 피해를 주지 않기 위해서는 중복계약을 고지의무로 하여 계약을 解止處理하기 보다는 약관상 주의적 조항으로 정하여 도덕적 위험을 방지하는 기능을 수행하도록 하자는 견해도 있다. 그러나 선의의 보험가입자인 경우 보험청약시 중복가입사실의 고지를 기피하거나 꺼려할 이유도 없다는 점에서 볼 때 이를 고지의무로 하는 것 보다 더 확실하게 道德的 危險의 混入을 방지할 수 있는 방법이라고 생각된다. 다만 보험청약시 보험설계사를 통해 보험계약자로 하여금 미리 그러한 중복계약의 고지의무가 있음을 확인시켜 주는 것이 필요하다고 할 것이다.

다. 自殺免責條項의 寬待性

商法 제659조 제1항은 ‘보험사고가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나 보험수익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생긴 때에는 보험자는 보험금액을 지급할 책임이 없다’라고 규정하여 보험계약자나 피보험자 또는 보험수익자가 인위적으로 보험사고를 일으킨 경우 보험자의 免責事由로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이 규정은 強行規定은 아니기 때문에 계약당사자간에 별도의 特約으로 유효하게 하는 약관상의 免責條項을 두고 있다. 즉 生命保險 標準約款 제3-42조(보험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는 보험사고) 제1항 제1호에 의하면 피보험자가 고의로 자신을 해친 경우와 계약 책임개시일(부활계약의 경우는 부활청약일)로부터 2년이 경과된 후에 자살하거나 자신을 해침으로써 장해분류표 제1급의 장해상태가 되었을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여 보험자의 면책사유와 면책예외규정을 두고 있다. 이는 보험계약 당사자 사이의 信義原則에 어긋나거나 생명보험계약이 부당한 목적에 이용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규정이라고 볼 수 있다. 또한 피보험자의 고의적 자살에 대한 면책기간을 2년으로 제한한 것은 인간의 일반적 심리로 보아 자살의도를 가지고

2년 이상 보험계약을 계속한다는 것은 거의 생각하기 어렵고, 보험계약이 2년 이상 경과한 후의 자살은 보험계약의 성립 또는 그 존재와 직접적으로 관련됨이 적다고 보이며, 또한 자살원인은 대체로 同情의 餘地가 있으므로 자살한 피보험자의 遺家族의 生計報障을 우선시켜야 할 필요성 등의 합리성이 있어서 이와 같은 約款의 效力을 인정하고 있는 것이다.⁶¹⁾

그러나 피보험자가 고의의 손해를 발생시켜 타인에게 이를 전가시키는 것은 보험원리에서 요구되는 信義誠實의 原則과 公序良俗에 반하고 공익을 해할 뿐 아니라, 고의사고에 의한 경우에도 보험금을 지급한다는 것은 상법의 원칙적 규정(상법 제659조 제1항)에 비추어 부당함에도 불구하고 직접이든 간접이든 수익자에게 이익을 지급한다는 것은 사회적으로, 상식적으로 용납하기 어려운 성질의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즉 피보험자를 위할 목적으로 규정되어 있는 약관상의 免責期間이 오히려 인위적 보험사고를 위한 射倖契約을 가능하게 함으로써 생명보험계약이 부당한 목적에 악용될 수 있는 여지를 두고 있는 것이다.

보험에 가입한 사람이 언제 자살을 염두에 두었는가 하는 것은 주관적인 성질의 것인 바, 보험계약 이전에 자살을 염두에 두고 계획적으로 보험에 가입하여 보험자의 면책기간이 경과하기를 기다려 2년이 지난 후에 자살한 사람은 보험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데 비해 보험계약 전에는 전혀 자살을 염두에 두지 않았다가 개인적인 사정으로 우연하게 보험자의 면책 기간 내인 2년 이내에 자살을 한 사람은 보험금을 지급받지 못하게 되는 부당한 결과를 초래할 수밖에 없는 것이다. 따라서 보험자가 자살면책기간인 2년이 경과되었다는 이유로 보험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약관 규정은 社會倫理上 善意의 契約者와의 衡平性과 보호라는 측면에서 제고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된다. 즉 피보험자에게 책임 있는 고의행위로 초래된 보험사고에 대

61) 윤승진 “보험자의 면책사유에 대한 고찰”, 『해상-보험법에 관한 제문제(하)』, 법원행정처, 1991, p.364.

해서는 어떠한 경우라 하더라도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것이, 돈을 위해 생명을 擔保하는 도덕적 위험을 방지하고, 경제질서에 있어서 보험이 담당하는 공익적인 기능을 유지토록 하는 최선의 방법이라고 생각한다.

다만 현행 보험약관상 자살면책기간의 전면적 폐지가 불가능하다면 단서 조항으로라도 자살임이 입증될 경우에는 보험자의 면책기간이 지난 이후라고 하더라도 보험금의 1/2 금액 또는 그 이상의 금액을 규정함으로써 支給保險金を 가능한 少額으로 하여 피보험자가 보험금을 목적으로 자살을 감행하려는 誘因을 처음부터 배제해야 할 것이다.

라. 詐欺無效條項의 未備

保險犯罪를 惹起할 수 있는 가장 일반적인 방법의 하나가 보험계약자나 피보험자가 하여야 할 고지의무를 위반하여 保險詐欺를 惹起하는 경우이다.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보험자에 대하여 고지해야 할 사항이란 만일 보험자가 이 사실을 안다면 계약을 인수하지 않았거나 또는 적어도 같은 조건으로는 계약을 인수하지 않을 것이라고 인정되는 사실, 더욱 구체적으로 말하면 보험자가 그와 같은 조건으로 계약을 체결할 것인가 아닌가를 판단할 수 있는 사실을 말한다.⁶²⁾ 保險契約에 있어서 告知義務制度는 보험계약자나 피보험자에 의하여 지배되고 있는 위험에 관하여 동일한 정보를 보험자도 얻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발전된 것이며, 이로 인하여 보험자는 위험의 성질에 관하여 올바른 평가를 내릴 수 있게 되어 도덕적 위험을 방지할 수 있는 기능도 가지는 것이다.⁶³⁾

이와 같이 보험계약자나 피보험자가 告知義務를 위반하여 보험자를 欺罔

62) 보험감독원, “서울고등법원 1974.7.11 선고74나194 판결,” 『생명보험판례집』, 1991, p.283.

63) 서영재, 『보험범죄에 관한 연구』, 법무연수원, 1998, p.49.

함으로써 보험금을 詐取하는 행위는 사기죄의 기망행위를 구성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보험계약에 있어서 고지의무위반의 유무가 중요한 의미를 갖는 것이다. 그러나 상법상, 그리고 약관상으로도 惡意的 告知義務 違反에 대하여 除斥期間⁶⁴⁾ 內에 한해서만 계약을 解止할⁶⁵⁾ 수 있게 정함으로써 詐欺行爲로도 볼 수 있는 고지의무위반행위를 용인 내지 유리하게 보호해 주는 불합리한 결과를 초래하고 있다. 그러한 사기행위를 실행한자가 그 행위에 대하여 제척기간이 경과하였음을 이유로 하여 이익을 받는다는 것은 이해하기 어려운 일이라고 할 것이다.

保險倫理上 告知義務違反의 사기행위가 있는 경우에는 이러한 자를 보호할 필요가 없으므로 商法 제651조에 의해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民法 일반원칙에 의하면 사기에 의한 의사표시는 취소할 수 있고(민법 제110조) 또 취소한 때에는 처음부터 무효(민법 제141조)이므로 除斥期間의 경과유무에 관계없이 취소할 수 있다고 보게 된다. 상법상 별도의 규정은 없으나 고지에 관하여 보험계약자의 사기가 있는 경우에는 보험자는 보험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고 보는 것이 판례의 입장이며,⁶⁶⁾ 그것이 고지의무를 인정한 보험제도의 善意契約性에 합당한 해석이라고 보여 진다.

현행 상법은 사기에 의한 보험계약에 관하여 해지권만을 인정하고 있는데, 선의의 보험계약자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서라면 사기보험계약을 무효로 하는 규정을 두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된다. 또한 보험약관상 현재와

64) 제척기간이란 어떤 종류의 권리에 대하여 법률상으로 정하여진 존속기간을 말한다. 법률에 제척기간이 명시된 경우의 예를 들면, 교통유발부담금은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5년 동안 부과하지 않은 경우에는 이를 부과할 수 없다(도시교통정비촉진법 23조 1항).

65) 상법 제651조 [고지의무위반으로 인한 계약해지] 보험계약당시에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중요한 사항을 고지하지 아니하거나 부실의 고지를 한 때에는 보험자는 그 사실을 안 날로부터 1월 이내에, 계약을 체결한 날로부터 3년 이내에 한하여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그러나 보험자가 계약당시에 그 사실을 알지 못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66) 대법원 1991.12.27 선고 91다1165 판결.

같이 5년간의 제척기간동안만 취소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하기 보다는 사기 무효조항을 추가하여 사기에 의한 계약은 약관에 정한 除斥期間 경과 후라도 그 계약의 무효를 주장하여 보험금의 지급은 물론 납입한 보험료도 반환되지 않도록 함으로써 詐欺契約이 기간의 경과로 정당화되어 선의의 보험계약자의 보호를 소홀히 하는 것을 방지하고, 동시에 악의를 가진 자가 이를 악용할 수 없도록 해야 할 것이다.

마. 立證責任의 配分

현행 보험약관상 고의적인 보험사고를 보험금 보장대상에서 제외하는데 있어서 그 立證責任을 보험자에게 부여하고 있다. 法論理上 입증책임은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일정한 법률효과가 유리하게 작용하는 당사자에게 입증책임이 있는 것으로 되어 약관상 보험계약의 적용에 있어서도 같은 취지로 본다. 현행 규정상 고의사고에 대한 給付責任은 免責事由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면책에 의하여 유리하게 되는 것은 보험자 측이므로 보험자에게 입증책임이 있는 것으로 해석된다. 이와 같이 고의의 입증을 보험자에게만 맡기게 되면 입증의 곤란으로 인한 불이익은 모두 보험자가 감수할 수밖에 없다. 고의의 입증책임을 보험자에게만 부담케 하는 것은 보험자가 거래관계상 강자의 위치에 있고, 전문가인데 반해 보험가입자는 상대적 약자이며, 비전문가라는 점에 있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고의의 입증은 심증에 의할 수밖에 없는 경우가 많은데 심증만으로는 裁判에서 敗하는 것은 당연하다고 할 수 있다. 더욱이 보험사고 발생은 보험자가 모르는 장소와 상황에서 발생함으로써 사고경위와 정황 등을 보험자가 명백히 알아내기가 용이하지 않은 관계로 진실을 밝혀내기가 곤란한 경우가 많다. 이와 같이 진실을 밝히기 어려운 측에 입증책임을 전부 부담시

킨다고 하는 것은 형평성에 어긋난다고도 할 수 있으며, 부당한 보험금지금으로 인한 선의계약자의 피해를 초래할 수도 있다.

따라서 보험사고의 故意立證責任을 모든 경우에 항상 보험자에게 부담시키기 보다는 보다 입증의 이익이 큰 쪽에 입증책임을 부담케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된다. 만약 입증책임을 受益者라는 이유로 보험가입자에게 전담시키게 되면 보험자의 證據不充分으로 인한 악의적인 계약에 대해 부당하게 보험금이 지급되는 것은 방지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현행 우리 보험관행상 보험금을 가능하면 지급하지 않으려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오히려 이로 인해 선의의 보험가입자들까지 보험사의 횡포에 의해 정당한 보험금을 지급받지 못할 수 있는 바 입증책임을 보험가입자에게 전적으로 轉嫁시켜서도 안된다고 본다.

제 3 절 主要國의 保險犯罪 對應實態

1. 美 國

가. 現 況

미국은 1990년 保險詐欺額이 900억 달러, 1995년의 보험사기액은 1천 2백억 달러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난다. 특히 1995년에는 의료보험분야에서 950억 달러의 손실을, 재산·상해분야에서 200억 달러의 손실을, 생명·장애분야에서 50억 달러의 손실이 발생한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⁶⁷⁾

67) 이병희, 『보험사기범죄의 실태와 방지방안』, 한국형사정책연구원, 2002.12. pp.88-89.

호이트(Robert E. Hoyt) 교수는 미국의 보험사기 비용 가운데 연간 손해 보험이 약 290억달러, 自動車保險이 140억달러, 産災保險이 50억달러에 이르며, 健康保險의 경우에는 전체 지급보험금인 1조 7,000억달러의 3~10%인 510~1,700억달러로 추정하였다. 또한 그가 인용한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미국 내 많은 사람들은 보험사기를 희생자 없는 범죄로 가볍게 인식하고 있다는 것이다. 미국인 4명중 1명은 보험사기가 나쁘지 않다고 응답했고, 5명중 2명은 보험사기를 행하는 사람을 보험회사에 신고하지 않을 것이라고 답했다. 또한 3명중 1명은 자기부담금을 보충하기 위해 보험금 청구를 과장해도 괜찮다고 인식을 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러한 안일한 생각이 미국 경제범죄 가운데 두 번째 규모로 연간 850~1,200억달러 수준의 보험범죄가 성장하도록 만들었다는 지적이다.⁶⁸⁾

나. 防止機構 및 對策⁶⁹⁾

연간 全世界 保險詐欺 被害額이 약 20%를 점유하는 미국은 公式政府機構로서 뉴욕주 보험청 내에 「보험사기국」(Insurance Frauds Bureau)을 두고 보험범죄 및 사기방지와 보험금부당청구등에 대한 수사 활동을 벌이고 있다. 뉴욕에 本部를 두고 4개 지역에 支局이 설치되어 있으며, FBI나 경찰 등 수사기관에서 6년 이상 근무경력자 약 40명이 보험법상 부여된 수사권을 가지고 보험범죄자 색출, 벌금부과, 형사고발 등의 업무를 수행한다.

또한 주정부차원의 민간기구로서 「全美保險犯罪防止局」(NICB; National Insurance Crime Bureau)이 1992년 설립되어 현재까지 1,000여개의 損保社

68) Robert E. Hoyt, "The Prevention of Insurance Fraud in the U.S. AUTO, Life and Health Insurance Markets," 보험개발원, 『보험사기방지 해외전문가 초청강연회 보도자료』, 2005. 7. 8.

69) 안병재, "보험범죄의 현황과 대책," 『손해보험』, 제383호, 대한손해보험협회, 2000. 10. pp.54-59.

및 自家保險者를 회원으로 두고 있다.

NICB는 FBI, 검찰, 경찰, 소방당국 및 보험사와 긴밀한 업무협조체제를 구축하고 美全域을 3개 지역으로 구분하여 중부(일리노이州 시카고 소재), 서부(캘리포니아州 L.A소재), 동부(조지아州 아틀란타소재)에 지역본부를 두고 각 지역본부 산하에 Field Office가 있으며, 20여명의 전직 FBI 및 경찰수사요원 출신을 포함해 약 450명의 전문직원이 사법당국 등과의 긴밀한 협조하에 보험사기예방, 적발 및 검거를 위한 共同調査 情報提供은 물론 研修教育, 弘報, 立法活動 등을 수행하고 있다. 참고로 1997년도에는 11,804건을 共同調査하여 이중 4,444건을 기소하였고 약 18,000명의 담당자가 사기방지관련 연수를 履修했으며, TV, 라디오, 신문들을 통해 보험관련 범죄를 홍보하였다.

특히 NICB의 컴퓨터시스템은 사법당국, 보험사조사자, 클레임담당자가 보험사기 및 도난차량 등을 탐지·규명하도록 돕고 있으며, 약 3억건에 달하는 데이터베이스 정보기록이 全美國에 걸친 수백 개의 보험사 및 사법당국과 온라인으로 연결되어있다.

全美保險犯罪防止局은 보험범죄의 방지 및 적발을 위하여 설립된 非營利法人으로 보험청구건 중 詐欺疑心件에 대한 조사업무지원 등을 통해 보험업계와 사법당국간의 연계고리역할을 하고 있다. NICB는 연방차원의 협력체제와는 별도로 州단위의 보험업계·사법당국간 연계 강화방안들을 활발히 추진하고 있는데 어떤 측면에서는 연방차원의 대응에 비하여 보험사기의 예방 및 적발에 있어 보다 실질적인 도움이 된다고 할 수 있다.

미국은 州單位로 보험업자에 대한 감독이 이루어지고 州保險監督廳內 보험사기조사국이 법집행기관의 역할을 하고 있다는 점에서 보험사기 방지 인프라에 있어 다른 나라와 구별된다고 할 수 있다. 미국의 州보험사기조사국은 조직 및 운영체계가 일치하지 않고 州마다 보험사기의 속성 및 심각성정

도도 동일하지 않다는 것을 염두해야 할 것이다.

보험사기 방지를 위한 공동대처 노력도 자체적으로 필요에 의해 州單位로 이루어지는 것이 보통이다. 주보험사기조사국은 검찰당국과의 관계에 있어 몇 가지의 운영형태가 존재한다.

메사츄세츠州, 텍사스州, 뉴욕州 등의 보험사기조사국은 주보험감독청 내에 소재하면서 州 檢察當局으로부터 검찰관(Assistant Attorney General) 1명을 일정기간 파견받거나 담당검찰관을 지정받는 관계로 검찰과 공식연대가 없는 州보험사기조사국과 비교하여 보다 유기적인 업무 관계를 맺을 수 있다는 利點이 있다.

반면 커네티컷州, 테네시州 등은 보험사기조사국이 검찰당국 소속으로 되어 있어 보험사기 疑心件에 대한 사법처리에 있어 효율적 업무처리가 가능할 경우이며 뉴저지州에서는 自動車 保險料率 인하방안의 일환으로 보험사기 검찰국(Office of the Insurance Fraud Prosecutor)을 설립하여 사법당국, 감독당국, 보험업계, 소비자보호국 등과의 仲裁(Liason roles)制度를 통해 공동대응이 모색되고 있다.

州保險詐欺調查局이 검·경찰을 포함한 유관기관과의 특별조사팀(Task Force)을 발족하여 공식적인 협조 채널을 구성하는 예도 있다. 이 경우 사법당국이외에 근재보험관리청, 건강서비스관리단, 노동부소속 관계자들이 정기적으로 혹은 필요에 따라 집결하여 보험사기의 예방 및 적발을 위한 현안들을 논의하는 형태를 띠게 된다. 보험사기를 위한 Task Force팀 구성만으로도 상당수준의 보험사기예방 효과를 볼 수 있을 것이다.

검찰당국과의 연대와 상관없이 州보험사기조사국은 事前에 州 및 County 검찰당국한테 보험사기조사국의 설립취지를 인지도시키고 서로간이 신뢰를 쌓는 것이 중요하다. 뉴욕州보험사기조사국은 2003년에 聯邦 및 州검찰당국을 비롯하여 62개에 달하는 County 검찰당국을 방문한 바 있는데 이를 통해 사

전에 상호협조적 기반을 마련할 수 있었으며 결국 효율적인 업무관계를 유도할 것으로 기대된다.

州보험사기조사국이 詐欺疑心件에 대한 조사 초기단계부터 州검찰당국을 관여시킨다면 사법 처리를 관철시키기 위한 검찰당국과 州보험사기조사국간의 팀워크를 이루는 데 유리할 것이다. 州보험사기조사국은 평소 州검찰당국으로 하여금 起訴處理過程 중에도 州보험사기조사국과의 협조가 원활하게 이루어질 것이라는 확신을 심어주는 것이 중요하다.

사법처리의 완결을 위해서는 철저한 조사에 의한 단서 확보가 무엇보다 중요하다. 검찰당국입장에서도 州보험사기조사국에서 事件依頼時 최대한 완벽한 단서 및 기초자료를 제시해 줄 것을 요구하게 된다. 州보험사기조사국에서는 사건의뢰에 있어 조사와 자료준비에 각별한 신경을 서야한다. 그리고 보험업계 및 州보험사기조사국은 보험당국의 法的措置, 民·刑事訴訟節次 등을 성공적으로 종결시키기 위하여 단서 및 증거물의 필요 수준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다.

한편 보험업계가 保險詐欺疑心件의 의뢰와 관련하여 州보험사기조사국에 대한 불만은 의뢰건 접수 이후 進展狀況에 대한 정보입수가 어렵다는 데 있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하여 커네티컷州 등은 보험사기조사국이 의뢰보험회사와 지속적인 정보교환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의뢰건 접수에 대한 서면 통보, 수사개시결정·거부 등 의뢰건에 대한 검토결과 통보, 형사기소관련사항 통보 등의 절차를 明文化하고 있다. 보험사기조사국에서는 사건의뢰시 보험회사가 제출해야할 기초서류명단을 구비하여 보다 효율적인 업무처리가 가능토록 하는 경우가 많다.

또한 몇 州보험감독청에서는 경찰대학교와 연계하여 정규교과과정에 보험사기 과정을 개설함으로써 예비경찰수사관으로 하여금 일선에 투입되기 이전 보험범죄의 심각성을 인식하게 함과 동시에 경찰당국과의 친밀성을 높

일 수 있는 계기를 갖게 된다. 보험회사의 특별조사팀이나 보험사기조사국에서는 통상적으로 前職警察 捜査官을 고용하고 있는데 이들이 경찰당국과의 업무협조에 있어서 중요한 역할을 한다.

공적기관간의 정보공유도 보험사기를 위한 공동대응에 있어서 상당히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는 데 各州에서는 정보공유범위의 확대를 위하여 관련기관과의 접촉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 사실 데이터베이스 등 技術情報力의 활용이 보험사기 대책에 있어서 가장 효과적인 수단이다. 보험사기 방지 및 적발에 유용한 정보로는 계약정보 및 비계약정보가 있는데, 계약정보는 ISO(Insurance Services Office)등의 회원으로 가입하여 사용하는 경우가 많다. 미국의 보험사기조사국은 準司法機關인 관계로 사법기관과의 정보공유가 용이한 편이라고 할 수 있다.

보험사기조사국의 이용정보로는 사법처리건에 대한 기록(경찰청 정보 네트워크), 면허증 및 자동차등록정보(자동차면허 등록기관), 산재보험금지급현황(노동부), 실업수당(실업자보상기관) 등이 있다. 이들 정보에 대한 접근방법은 데이터베이스 공유에서부터, 팩스 혹은 직접방문 등 다양하다. 이러한 내용과 함께 관련 주체의 역할, 정보공유의 조건 등을 MOU(양해각서; memorandum of understanding)에 담아서 정보의 상호이용을 보다 체계화시킨 州도 있다. 보험사기방지대책을 이미 수년에 걸쳐 실천하고 있는 州들은 나름대로 관계기관과의 情報共有體制가 갖추어진 상태이며 다만 개인정보보호가 철저히 감안되어야 한다는 한계는 있다.

다. 立法例

보험사기를 감소시키기 위한 방안으로 미국은 먼저 연방차원에서 1994년 聯邦保險詐欺防止法(the Federal Insurance Fraud Prevention Act)을 통과시

켰다. 同法은 보험회사에 대한 횡령이나 부당이득을 연방범죄로 취급하도록 하였으며 사기행위에 대해 懲役刑과 民事制裁를 규정하고 있다. 이외에도 보험사기를 연방범죄를 취급하는 법률로서는 1994년의 「폭력범죄규제및처벌법」(the Violent Crime Control and Law Enforcement Act)이 있다. 同法은 특히 보험업자인 사기 행위자가 州間 交易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에 연방범죄로 처벌하고 있다. 즉 허위진술을 하거나 고의적으로 그들 사업의 일부를 과대평가하는 보험업자에게는 벌금이나 장기 15년의 자유형으로 처벌한다. 또한 보험회사의 자금을 횡령하는 대리점 또는 직원도 처벌하고 보험회사의 직원이 회사의 財務狀態에 대해 허위의 사실을 작성하는 행위도 범죄로서 처벌하고 있다.⁷⁰⁾

州政府 차원에서는 거의 모든 州가 보험사기방지법을 制定하여 시행하고 있으며, 보험사기방지모델법은 보험사기방지협회(CAIF), 全美獨立保險者協會(NAII) 등의 보험관련단체에 의해 제정되었다. 各州에서 보험범죄를 중죄로 취급하고 있는가는 保險金詐欺(crime fraud)와 保險料詐欺(premium fraud)로 구분하여 볼 수 있다. 우선 보험금사기는 거의 모든 州에서 중죄로 규정하고 있다.⁷¹⁾ 보험료 사기는 주로 산업재해보험 분야에서 많이 발생한다고 한다. 보험료율을 산정하는 경우에 보험회사는 근로자의 급료, 職務明細 및 기능, 雇用主의 과거 손해실적 등에 한하여 고용주가 제공하는 정보에 의존하여야만 하는데, 여기에 不實告知의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따라서 애리조나州를 비롯한 11개 주에서는 산업재해보험료와 관련하여 중요한 사실의 부실고지를 중죄로 취급하는 법을 제정하였다.⁷²⁾

보험금 수령 등이 보험사기로 판명되는 경우에는 형사처벌 이외에 민사상의 제재로 그 辨償(Restitution)을 사기범에게 요구할 수 있다. 현재 30개

70) 최인섭 외 5인, 『한국의 금융범죄 실태와 사회적 대응 방안』, 한국형사정책연구원, 2002. pp.581-582.

71) 중죄로 처벌하지 않는 주는 4개주 정도뿐이다.

72) 최인섭 외 5인, 전거서, pp.582-583.

주중에서 보험사기로 확정된 사기범에 대해 그 변상을 규정하고 있다. 한 예로 뉴욕주의 보험사기방지법에 따르면 사기적 보험행위를 한 자에 대해서는 보험금의 지급(청구)액과 5,000달러 미만의 민사상 제재를 부과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⁷³⁾

2. 英 國⁷⁴⁾

영국에서 보험사기관련 공동대책의 수립 및 추진 主體는 영국보험업자협회(Association of British Insurers:ABI)산하 범죄사기방지국(Crime & Fraud Prevention Bureau)이다, 영국의 범죄사기방지국은 1995년에 설립되어 보험사기의 방지에 있어서 업계, 경찰 및 당국간의 협조체제 및 정보교환에 中樞 役割을 수행하고 있다.

범죄사기방지국은 보험회사가 의뢰한 詐欺疑心件 중 실제로 수사개시에 돌입하는 건이 극히 제한적인 것으로 파악되어 이를 是正할 목적으로 경찰 협회와 공동으로 1999년 9월에 「보험업계와 경찰간 보험사기 의뢰절차 관련 협정」을 제정한 바 있다. 同協定에서는 보험회사가 경찰에 사건의뢰시 충족시켜야 하는 사항과 더불어 사건의뢰승인과 관련하여 경찰이 보험회사에게 필히 통보해야 할 사항 등을 주요내용으로 담고 있다.

한편 사법처리여부를 판가름할 핵심요소인 증거자료는 의심건과 관련된 모든 정보를 망라하는 것이 이상적인데 혐의에 대한 정황설명, 청구자의 성명, 주소, 생년월일 등이 포함되어야 하다, 이외에도 보험금 부당청구건에 개입되었다고 판단되는 기타 관련자에 대한 입수 가능한 모든 자료와 혐의를 갖게 되는 원인, 不當請求疑心件의 청구금액 및 해당날짜 등 혐의점에 대한

73) 안경옥, “한국의 보험범죄의실태와 대책,” 『형사정책연구』, 제14권 제2호(통권 제54호), 한국형사정책연구원, 2003.

74) 안병재, 전제논문, pp.59-61.

요약, 청구건의 성격 및 정황설명에 대해 상세하게 기록되어야 한다. 여기에는 보험업자, 손해사정인 혹은 이들의 대리인에 의해 행해진 관련건에 대한 모든 조사내역도 빠짐없이 언급되어야 한다.

그리고 同協定은 증거수집에 있어 될 수 있는 대로 수사경력이 있고 경찰증거법(Police and Criminal Evidence Act : PACE) 및 증거규정(Rules of Evidence)을 숙지하고 있는 자가 행할 것을 권고하고 있다. 즉, 同分野에 대한 전문지식 및 경력이 없는 자가 증거 수집하는 경우 불완전한 혹은 활용되지 못할 상태로 수집되어 질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 만일 조직 내에 전문지식을 지닌 사람이 없는 경우 사건 담당자는 초기단계부터 경찰로부터 자문 및 지원을 받는 것이 좋다.

영국은 非契約情報에 있어 아직 체계적인 교환망을 가동하고 있지는 않다. 하지만 최근 사회복지부(Department of Social Security)에서 「사기방지를 위한 민간업체와의 정보교환에 대한 검토(안)」를 발표한 바 있는데, 영국 보험업자협회를 비롯한 보험업계는 이를 계기로 정보교환 범위의 확대를 기대하고 있다.

즉 同檢討(案)에서는 특히 은행, 보험회사 등 금융기관보유정보 활용에 대한 유용성이 강조 되고 있는데, 사회복지부의 보험회사 실업보험금 지급정보의 이용에 대한 언급 이외에도 보험회사의 사회복지부 失業手當(job seeker's allowance: JSA)정보이용의 필요성을 제기하고 있다. 同一人에 대해 사회복지부에서는 보험회사의 보험금지급 사실을 인지하고 있지 않을 수 있고 다른 한편 보험회사에서는 정상 출근을 하고 있다는 사실을 모를 수 있는데 이럴 때 두 기관간의 정보교환은 정보의 정확성을 향상시킬 수 있다는 것이다.

3. 日 本

가. 現 況

먼저 보험업의 현황을 살펴보면, 일본의 생명보험협회에 가입한 생명보험회사는 현재 42개사이며 생명보험분야의 2001년도 총자산 규모는 2000년도에 비해 3.8%가 감소한 184,370,910萬円에 달하고 있다. 그리고 생명보험분야의 2001년도 보험료 수입은 2002년도에 비해 2.8%가 감소한 26,185,887萬円이며, 지급된 보험료는 2000년도에 비해 11.1%가 감소한 7,611,704萬円에 그치고 있다. 한편 일본 손해보험협회에 가입한 회사는 현재 26개사이다. 손해보험의 사업실적을 보면 2001년도 총 계약건수가 175,061,043건으로 보험료 수입은 6,927,189,476萬円에 이르고 있다. 이는 2000년에 비해 총계약 건수는 2.9%가, 보험료 수입은 0.4%가 감소한 수치이다. 그에 비해 자동차보험분야에서는 보험료 수입은 3,676,513萬円으로 전년도에 비해 0.7% 정도 증가한 것으로 드러났다. 자동차보험에서의 보험금 지급 규모는 2001년도에 2,114,951百萬円 정도에 이르고 있다.⁷⁵⁾

나. 防止對策⁷⁶⁾

일본의 경우, 보험범죄의 전문조사나 수사업무를 전담한 별도의 정부기구는 없으나, 「日本損害保險協會」를 중심으로 보험금 부정청구 및 폭력배제 등 보험범죄방지를 위해 1979. 4월 폭력단에 의한 보험금 부정청구가 多發했던 교토지역을 시작으로 1983. 9월까지 各 地域(縣)별 경찰서와 보험회사 간에 정보수집, 교환, 집적 및 검·경조사 등을 위한 「손해보험방범대책협의회」를

75) 최인섭 외 5인, 전게서, p.606.

76) 안병재, 전계논문, pp.61-62.

47個縣에 설립 현재 약 1,000명의 회원을 확보하고 있으며 산하에 損害調査課長으로 구성된 「손해조사사정위원회」를 두고 월 1회 정례회의를 통해 범죄 의심사항 토론, 경찰조사 통보, 검·경과 수사협조, 연수, 홍보 등의 활동을 벌이고 있다.

특히 정보자료의 상호조회 및 과학적 관리를 위해 「자동차사고 정보교환시스템」(1988.12월)과 「人保險事故情報交換시스템」(1990.12월)을 보험회사 간 온라인 전산망으로 구축, 자동차 보험과 상해보험에 대한 중복계약, 사고경력, 부정청구 등 보험사기정보를 데이터베이스에 집적·운영하고 있다. 한편 1991. 5월에는 보험폭력을 포함한 「폭력단원에 의한 부당행위 방지 등에 관한 법률」을 제정·공포하여 정부당국이 앞장서서 보험범죄에 강력히 대처하고 있다.

4. 프랑스⁷⁷⁾

가. 現況

프랑스는 1975년도에 보험사기로 인한 火災保險의 損害率이 악화되자 보험자들은 화재보험금 지급청구와 관련한 질의서를 통해 보험사기를 방지하려는 노력을 기울이기 시작했다. 프랑스의 경우는 生命保險 및 傷害保險에서 발생하는 보험 사기건수는 꾸준히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는데 반해서 화재보험과 자동차보험에 있어서는 보험사기 방지기구의 활동으로 그 비율이 감소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나. 保險詐欺 防止機構

保險詐欺에 대한 엄중대처 인식의 확산으로 1984년도에 「保險詐欺對策情

77) 탁희성, 전게서, 93-94.

報交換委員會」가 발족되었고, 1986년도에 「保險詐欺對策情報交換그룹」으로 발전했으며 같은 해에 화재보험사기대책 연합회 내에 「保險詐欺防止課」가 설립되었다. 이를 기반으로 하여 1989년 1월에 「保險詐欺防止機構」(The Agency for the Fight against Insurance Fraud)가 창설되었다.

「보험사기방지기구」는 보험사기 방지 및 예방을 위한 非營利團體로서 보험사기에 관한 모든 정보의 수집, 集積, 가공, 전달 및 적절한 법적 수단의 활용, 경찰 및 정부관계자와의 긴밀한 협조 등을 통하여 1998년도에는 약 34,000건의 사건을 해결하는 등 효율적인 성과를 보이고 있다. 또한 「보험사기방지기구」는 보험사기방지 전담요원들이 각종 보험사기 관련자료들을 상호 교환할 수 있는 정보교환센터를 운영하고 있으며, 매년 각 보험종목에 대해 실제 사례를 토대로 수집된 정보를 기초로 보험사기 주요원인, 유형, 발생장소 및 조건별로 파일을 운영하여 보험사기에 대한 새로운 지표와 양질의 위험선택의 토대를 마련하는데 큰 기여를 하고 있다.

<표 3-4> 주요국의 보험범죄전문조사기구 현황

구분	미 국	영 국	일 본	프 랑 스
기구	전미보험범죄방지국(NICB) 뉴욕주보험청보험사기국(IFB)	범죄 및 사기방지국(CFPB) 보험사기방기관리소(CUE)	손해보험 방법 대책 협의회	보험사기방지기구(ALFA)
조직	본부 외 3개지부(중부,서부,남부)	보험자협회주관으로 정보자회사운영	협회사무국외전국 지역별 47개협의체운영	보험협회, 상호보험자협회 공동운영
인원	약 460명	약 100명	약 100명	약 150명

자료 : 안병재, “보험범죄의 현황과 대책,” 『손해보험』, 제383호, 대한손해보험협회, 2000. 10. p.55.

5. 獨 逸

가. 現 況

독일 보험업협회에 따르면 2001년 독일 보험료 수입의 규모는 2000년의 1,318.2억유로에 비해 2.7% 증가한 1,353.9억유로에 비해 2.4%가 감소한 1,485억유로에 달하고 있다.⁷⁸⁾ 이를 주요 보험 분야별로 세분하여 살펴보면, 먼저 生命保險의 경우에 2001년 보험료 수입은 전년도의 612.3억유로에 비해 1.9%가 증가한 623.6억유로, 지급보험총액은 전년도의 881억유로에 비해 6.6%가 감소한 822억유로에 이르고 있다. 私醫療保險分野의 2001년 보험료 수입은 전년도의 207.1억유로에 비해 4.9%가 증가한 217.2억유로, 지급한 보험금 총액은 2000년의 241억유로에 비해 6.9% 증가한 497.4억유로, 지급한 보험금 총액은 2000년의 399억유로에 비해 0.9% 증가한 402억유로에 이르고 있다. 이 중에서 특히 자동차 보험의 2001년 보험료 수입은 전년도의 203.6억유로에 비해 4.8% 증가한 213.4억유로, 지급한 보험금 총액은 2000년의 204억유로에 비해 1.0%가 감소한 202억유로에 이르고 있다.⁷⁹⁾

독일의 保險犯罪의 현황을 살펴보면, 유럽보험위원회는 독일에서 보험범죄가 매년 증가추세에 있으며 약 20-40억마르크가 보험범죄로 인해 지출되는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그리고 損害保險分野에서는 보험금 수입의 약 10-30%가 보험범죄로 유출되고 있다고 보고하고 있다.⁸⁰⁾ 한편 독일보험업협회는 2002년 1월의 자료에서 보험범죄가 대규모로 발생하며 일상화된 사회 현상이 되고 있다고 보고하고 있다. 이 자료에 따르면 조사 대상자(보험가입

78) <http://222.bafin.de/bafin/organigramm.pdf>. 이 총액에는 보험금 지출 이에 발생되거나 발생될 보험사고에 대한 예비비 및 생명·건강보험 분야에 있어서의 보험료 환불액이 포함되어 있다.

79) 최인섭 외 5인, 전게서, pp.598-599.

80) 탁희성, 전게서, p.97.

자)의 약 25%가 이미 1회 이상 보험금을 사취한 경험이 있으며, 詐取金額의 90%이상은 500유로 이하라고 하였다. 또한 보험업계는 매년 40억유로 이상이 보험범죄로 인해 지출되고 있다고 추정하고 있다. 보험범죄의 발생빈도는 私責任保險, 家計損害保險, 自動車保險 순으로 빈번하게 발생하며 사 책임보험분야에서는 매년 8억 유로 규모의 보험사고가 발생하는 데 그 중 25% 정도를 보험사고 조작에 의해 지출되는 것으로 전문가들은 추정하고 있다. 自動車保險 분야에서는 신고·접수된 사고의 약 8-10% 정도가 고의 야기 및 허위 과장된 보험사기에 해당하고, 그 피해액은 약 10억유로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⁸¹⁾

나. 保險詐欺 防止對策

保險詐欺가 계속 증가하자 독일은 보험사기방지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보험사기와 같은 범죄적 행위가 유발시키는 사회적 비용에 대하여 그리고 보험사기가 보험가입자에게 미치는 결과에 대하여 홍보캠페인을 벌이는 등 적극적인 노력을 펼치고 있다. 또한 독일에서는 보험사기를 감시 및 근절할 수 있도록 독일보험협회 내에 중앙데이터뱅크를 설립하였으며, 보험사기 방지활동도 전개하고 있다.

보험업계도 보험사기 등의 보험범죄를 예방하고 이를 발견하기 위해 자체적으로 특별조사팀을 운영하고 있다. 보험업계에서는 보험사기의 적발과 방지에 기여할 수 있는 자동화된 「데이터 평가시스템」을 사용하고 있다. 보험사기의 의혹과는 상관없이 모든 보험사고는 이 정보시스템을 통해 심사 받게 된다. 그 과정을 보면,⁸²⁾ 먼저 보험회사에 보험사고가 접수되면 보험회사는 이 사고가 각 보험분야별로 정해진 특별한 기준에 해당하는지의 여부

81) <http://www.dgv.de/preseservice/16813.htm>

82) Ibid.

를 조사한다. 만약 이러한 기준에 해당하는 사실이 있으면 보험회사는 접수된 보험사고를 중앙신고센터에 신고한다. 여기서 보험소비자(보험가입자)의 생명, 주소 등의 신상에 관한 사항은 코드화되어 저장된다. 암호화된 후에는 원래의 데이터는 파괴되고 따라서 관련자의 구체적 신상에 대해서는 어떠한 逆推論도 불가능하다. 그 이후에 다른 보험회사에서 보험사고의 접수가 있으면, 이 사고는 이제 「데이터 평가시스템」에 저장되어 있는 암호화된 危險要素(Wagnisbestand)와 비교되고, 후자의 보험회사는 이 정보시스템이 암호로 보유하고 있는 손해 관련 정보, 즉 손해를 최초로 보고하였던 보험회사에 대한 정보를 제공받는다. 그 후 구체적인 정보의 교환은 이들 두 보험회사 간에만 이루어지게 된다. 이는 보험회사의 정보교환을 통해 개인의 정보가 무분별하게 유출되는 것을 막기 위함이다.⁸³⁾

다. 立法例

독일은 보험범죄를 일찍부터 刑法에서 규정하고 있었는데, 최근 1998년 4월 제6차 형법개정법(StrRG)을 통해 종래 형법 제265조의 保險詐欺罪⁸⁴⁾를 保險濫用罪로 개정하고 그 적용범위를 확대하였다. 신법의 보험남용죄는 자기 또는 제3자에게 보험금 지급을 위해 보험에 가입된 물건을 훼손·파괴, 그 사용을 침해·제거하거나 또는 타인에게 교부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자유형 또는 벌금형에 처한다. 보험금을 지급받기 위한 이러한 사기적 행위를 제외한 다른 범죄(살인, 방화 등)를 저지른 경우에는 해당 관련 범죄에 대한 처벌규정을 통해 처벌할 수 있다. 예컨대 보험금을 목적으로 사람을 살해하

83) 최인섭 외 5인, 전거서, pp.603-604.

84) 구 형법 제265조(보험사기) : ① 사기의 의사로 화재보험에 가입한 재물에 방화하거나 선박 자체, 화물 또는 화물운임이 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선박을 침몰 또는 좌초시킨 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자유형에 처한다. ② 제1항의 행위가 중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6월 이상 5년 이하의 자유형에 처한다.

는 경우에는 殺人罪 중 謀殺로 처벌할 수 있으며 이를 별도로 처벌하는 규정을 두는 것은 아니다.

본 규정은 保險犯罪보다는 保險詐欺와 관련이 있는 규정이므로 형법의 사기죄와는 보충적 관계에 있다고 할 수 있다. 보험금을 청구하여 지급 받은 경우 보험회사의 재산상의 손해가 발생했기 때문에 사기죄의 구성요건을 충족하며, 이 경우에는 本罪로 처벌하는 것이 아니라 사기죄로 처벌된다. 따라서 本罪는 사기죄의 前段階에 해당하는 행위를 처벌하여 보험사기를 이미 사기의 前段階에서 이미 강력하게 방지하기 위해 마련된 규정이라고 하겠다.

제 4 장 保險犯罪의 意識調査分析

제 1 절 調査方法和 調査內容

保險加入者와 經濟犯罪 擔當捜査官을 대상으로 保險犯罪의 認識度를 알아보기 위하여 設問調査를 실시하였는데 보험가입자에 대해서는 광주 시내 거주자를 대상으로 직접방문 면접조사를 실시하였으며, 경제범죄 담당수사관에 대해서는 직접방문조사와 우편조사를 병행하여 실시하였다. 보험가입자에 대한 조사는 20대 이상 성인 남녀 164명을 조사하였는데 이중 불성실 응답자 24명을 제외한 140명을 실제 분석에 사용하였으며, 경제범죄 담당수사관에 대한 설문조사는 각 지방청 및 경찰서 수사관을 대상으로 500매를 직접 면접과 인편 및 우편으로 배송하여 협조를 의뢰한 결과 228매가 회수되어 45.6%의 회수율을 보였으며 모두 성실한 응답을 한 것으로 평가되어 이를 분석대상으로 하였다. 조사기간은 2006년 3월 6일부터 31일까지 26일간이었다.

調査設問은 보험가입자 20개 문항, 경제범죄 담당수사관 27개 문항으로 구성되었는데 보험가입자의 인구통계 사항과 담당수사관의 보험사기 유발가능성 11개 문항을 제외하면 서로 비슷한 내용의 질문이다. 설문조사결과는 보험범죄에 대한 인식 및 의식수준, 유발가능성, 방지대책 및 처벌수준 등으로 분류하여 분석한다.

제 2 절 意識調查結果의 一般的 特性

1. 保險加入者의 人口統計的 特性

보험가입자 조사대상자의 성별, 연령, 직업 등 인구통계적인 특징은 <표 4-1>과 같다. 남녀의 비율은 비슷하며, 연령별로는 40대가 44.2%로 가장 많았고, 직업별로는 주부 39.6%, 공무원 31.7% 순으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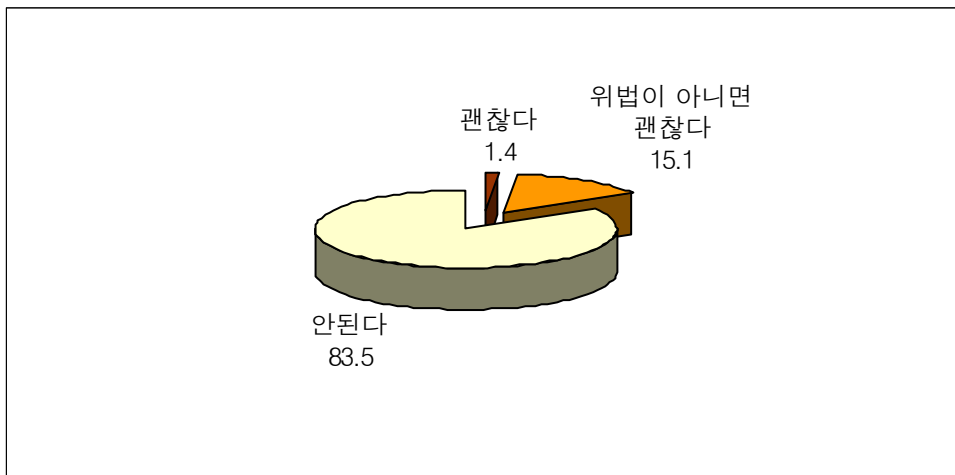
<표 4-1> 보험가입자 조사대상의 인구통계적 특성

구 분	항 목	도 수	비 율
성 별	남 자	69	49.3
	여 자	71	50.7
	계	140	100.0
연 령	20대	8	5.8
	30대	38	27.5
	40대	61	44.2
	50대 이상	31	22.5
	계	138	100.0
직 업	공무원	44	31.7
	회사원	15	10.8
	자영업	15	10.8
	주 부	55	39.6
	기 타	10	7.2
	계	139	100.0
자동차 보험경력	5년 미만	42	30.2
	6-10년	39	28.1
	11년 이상	58	41.7
	계	139	100.0
보상경험	있 음	65	46.8
	없 음	74	53.2
	계	139	100.0

2. 告知義務 履行態度

保險告知義務의 主體인 보험가입자그룹에서는 <그림 4-1>에서와 같이 허위로 알려서는 안된다는 의견이 전체응답자 중 83.5%로 나타나 고지의무에 대한 성실한 이행에 대하여 매우 긍정적인 견해를 갖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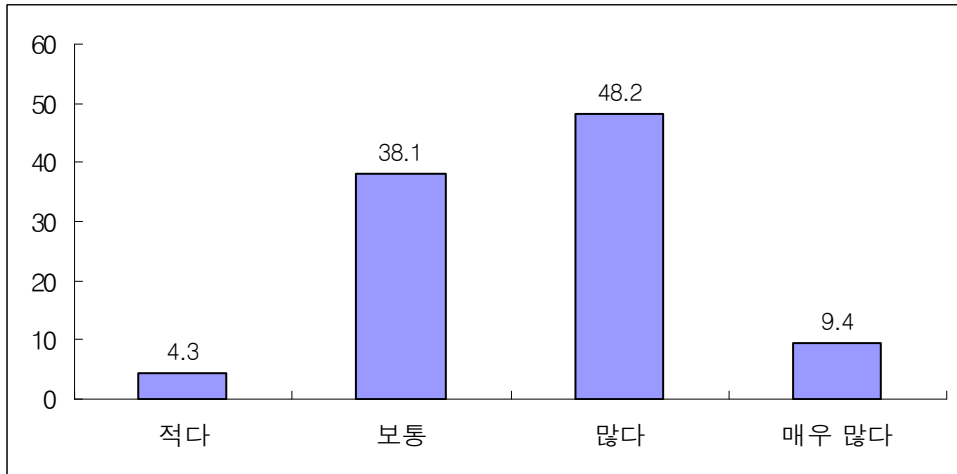
<그림 4-1> 허위·부실고지에 대한 보험가입자의 의식



3. 保險金要求水準

보험료 만족도에 대한 설문에서 <그림 4-2>에서 나타난 바와 같이 보험가입자그룹은 자신의 납부보험료가 불만족스러움을 나타냈다. 그러나 보통수준이란 응답자의 비율도 38.1%를 차지했다.

<그림 4-2> 보험가입자의 보험료 만족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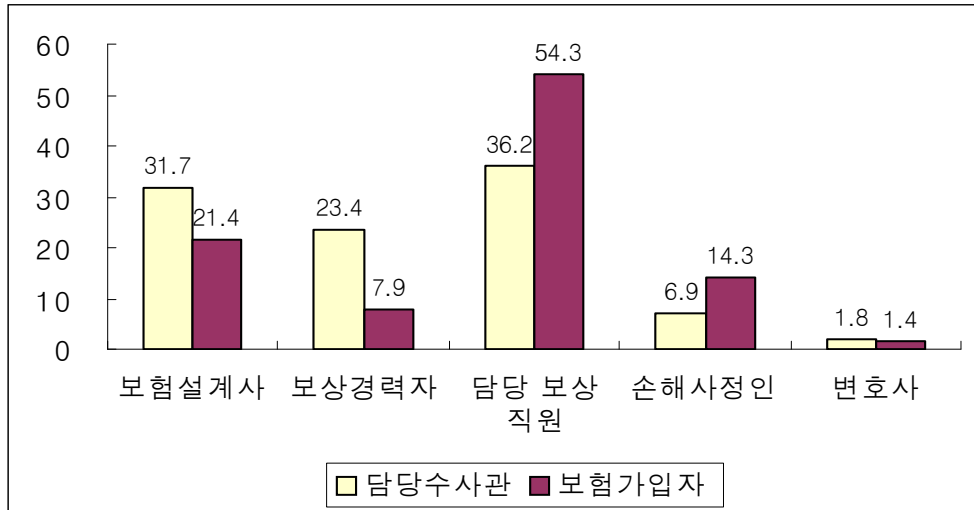


4. 保險金算定時 選好하는 相談者

보험소비자들이 보험금을 청구하기 위한 준비단계에서 상담의 대상으로 과연 누구를 가장 선호할 것인가의 設問에서 擔當搜查官그룹의 견해는 <그림 4-3>에서 보는 바와 같이 담당보상직원, 보험설계사, 주변의 보상경력자 순으로 선호한다고 판단하고 있으며, 보험가입자그룹의 경우에는 報償擔當職員, 保險設計士, 損害査定人 순으로 담당수사관은 상대적으로 손해사정인을 不信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보험가입자는 보상담당자의 보험금산정기준안내에 대하여 불신하면서도 보험금산정의 상담자로 보상담당자를 선호하고 있다는 것은 二律背反的인 見解로서, 이는 보상담당자를 신뢰하기는 어려우나 마땅히 보험금산정 기준에 대하여 상담할 대상이 없기 때문인 것으로 해석된다.

<그림 4-3> 보험금산정에 선호하는 상담자



제 3 절 保險犯罪에 대한 認識

保險犯罪에 대한 담당수사관그룹 및 보험소비자그룹의 인식정도를 확인하기 위하여 設問調査를 실시한 결과 양 그룹 모두 경정사기에 대하여는 보험범죄로 인식하고 있으나 연정사기에 대하여는 보험범죄로 인식하지 못하고 있으며 보험범죄로 인식하는 경우라 하더라도 비교적 관용적인 태도를 취하고 있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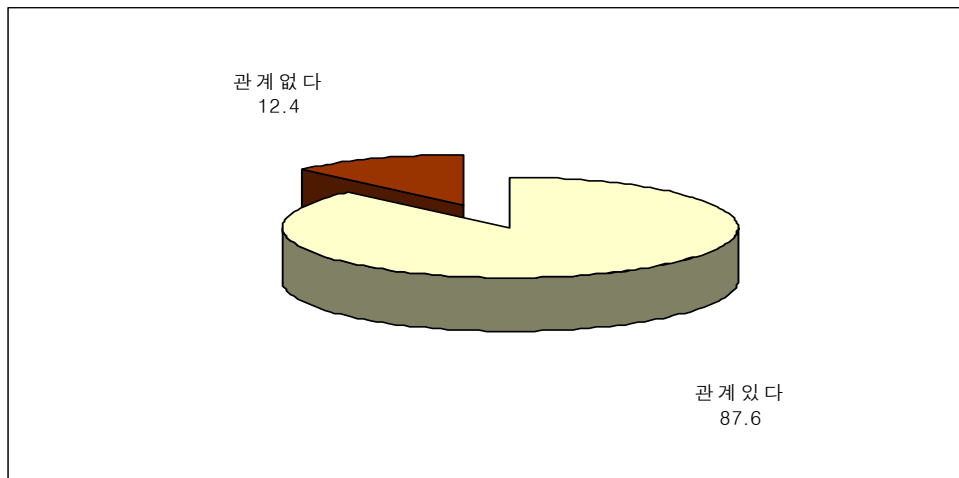
또한 保險詐欺에 대하여 심각성을 크게 느끼고 있으며 보험사기로 인한 피해가 보험회사에 한정되지 아니하고 全 保險加入者 및 保險産業 전반에 걸쳐 영향을 미치는 것에 共感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1. 保險詐欺와 保險料上昇과의 因果關係

보험사기와 전체 보험가입자의 보험료 상승과의 인과관계에 대한 설문에서 보험가입자의 경우 87.6%가 관련이 있다고 응답하여 보험사기로 인한 피해가 광범위하게 영향을 끼치고 있음을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그림 4-4>참조).

즉 보험사기로 인한 保險金の 漏水는 不當保險金の 支給으로 인하여 보험회사의 경영을 악화시키고 이는 수지상등의 보험원리에 의하여 보험소비자의 보험료 인상으로 이어지게 되는 것으로 보험가입자는 이에 공감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 4-4> 보험사기와 보험료상승



2. 硬性·軟性詐欺에 대한 保險犯罪認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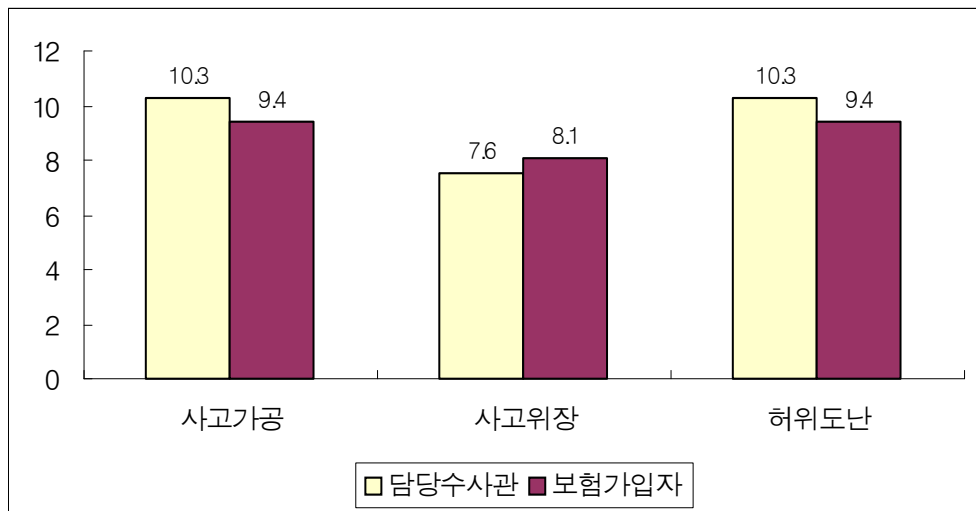
보험사기를 경성사기와 연성사기로 구분하여 경성사기는 故意性的의 정도

가 높은 사기행위로서 <그림 4-5>에서 보는 바와 같이 담당수사관그룹 및 보험소비자그룹 모두 보험사기로 인식하는 데에는 비슷하게 공감하고 있으나, 연성사기 즉 우발적이고 기회성이 높은 생계형 사기에 있어서는 담당수사관그룹이 보험가입자그룹에 비하여 보험범죄로 인식하는 정도가 다소 강하였다(<그림 4-6>참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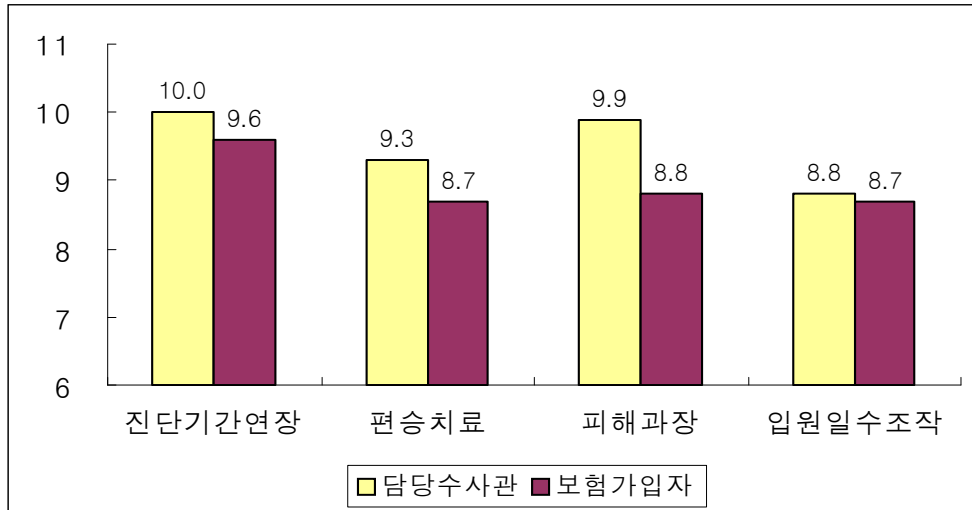
이는 보험가입자그룹이 담당수사관그룹에 비하여 연성사기에 대하여 관용적인 태도를 갖고 있음을 알 수 있다.

上記와 같은 설문결과는 담당수사관그룹의 경우에는 보험범죄에 대한 보다 상세한 교육프로그램이 요구되며 보험가입자그룹의 경우에는 보험범죄예방정책의 실효성에 대한 가능성을 보여주는 결과라 할 수 있다.

<그림 4-5> 경성사기에 대한 보험범죄 인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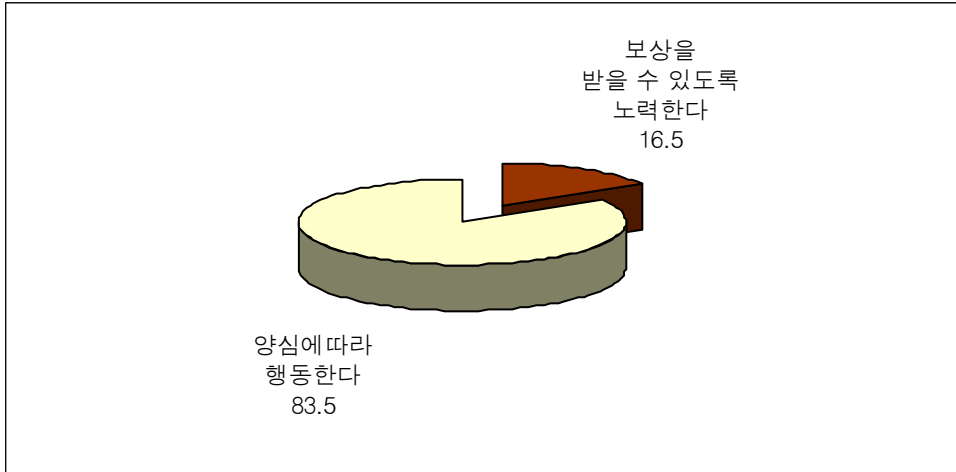


<그림 4-6> 연성사기에 대한 보험범죄 인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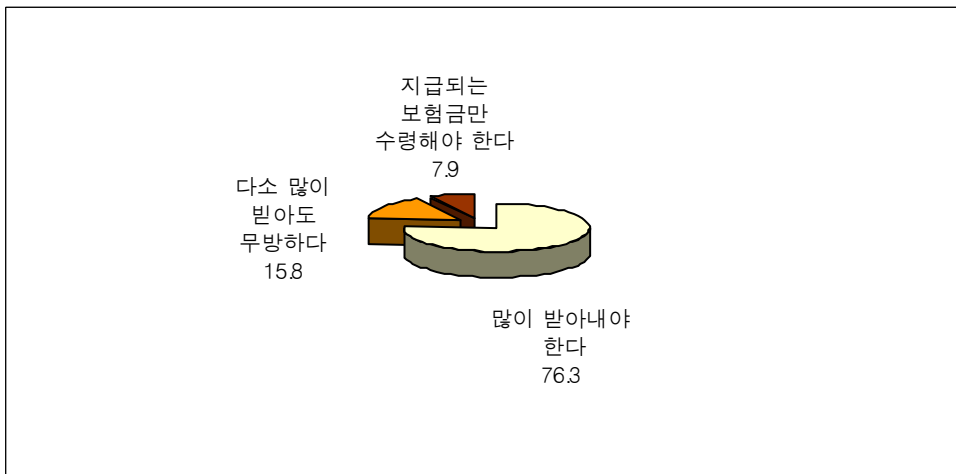


保險犯罪 豫防政策의 實效性을 기대하게 하는 또 하나의 설문조사를 보면 부정한 방법에 의한 고액보험금수령방법을 권유 받은 경우 어떻게 행동할 것인가에 대한 설문조사에서 전체응답자의 16.5%가 권유에 따라 보험금을 청구하겠다고 응답한 반면 전체응답자의 83.5%는 권유에 흔들리지 않고 소신껏 행동하겠다고 응답했으며(<그림 4-7>), 수령에 대한 의견에서도 규정에 따라 지급되는 보험금만 수령해야 한다는 의견이 76.5%로 나타나(<그림 4-8>) 대부분의 보험가입자들은 아직은 보험에 대하여 건전한 의식을 갖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림 4-7> 부정한 방법에 의한 보험금 수령태도



<그림 4-8> 보험금 수령에 대한 의견



3. 保險詐欺의 摘發可能性에 대한 認識

硬性詐欺의 대표적인 유형인 故意事故에 대하여 적발될 가능성을 설문한 결과 담당수사관의 경우에는 10%미만으로 해석하는 경우가 전체의 약 38.35%로 나타났고 연성사기의 대표적인 類型인 被害誇張의 경우에는 전체 응답자의 45.2%가 10% 이하라고 응답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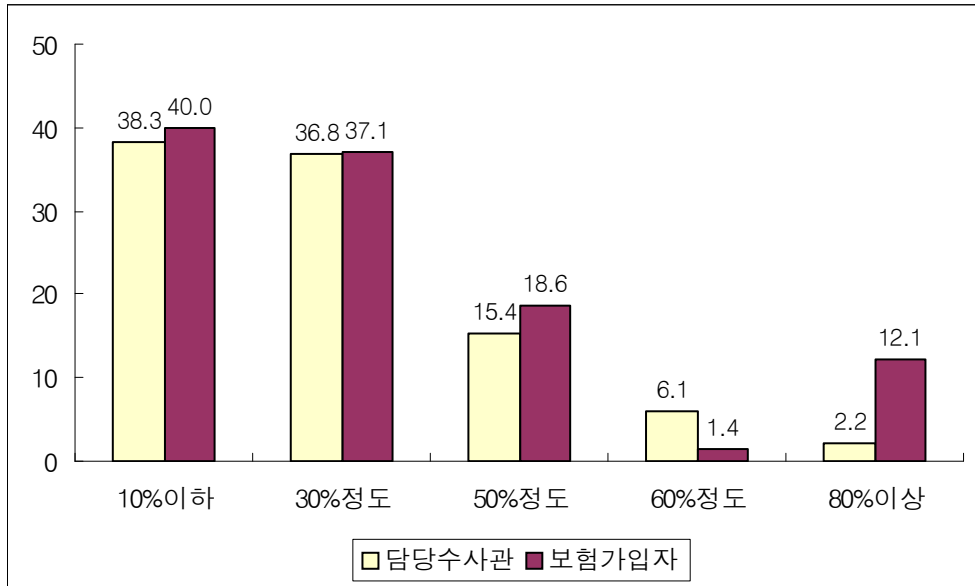
반면 보험가입자그룹의 경우에는 경성사기의 적발가능성은 10%이하 및 30%정도라고 응답한 인원이 각각 40.0%, 37.1%정도로 나타나 담당수사관그룹보다는 경성사기의 적발가능성을 높게 평가하였고 연성사기의 경우에는 전체응답자의 40.7%가 적발가능성이 10%미만이라고 응답하여 담당수사관보다 낮게 평가하였다.

고의사고 보험사기는 사전에 면밀히 계획된 지능형 범죄이고 또 다수의 인원이 共謀하여 조직적으로 접근하는 組織型 犯罪이므로 그만큼 적발이 쉽지 않음을 示唆한다고 해석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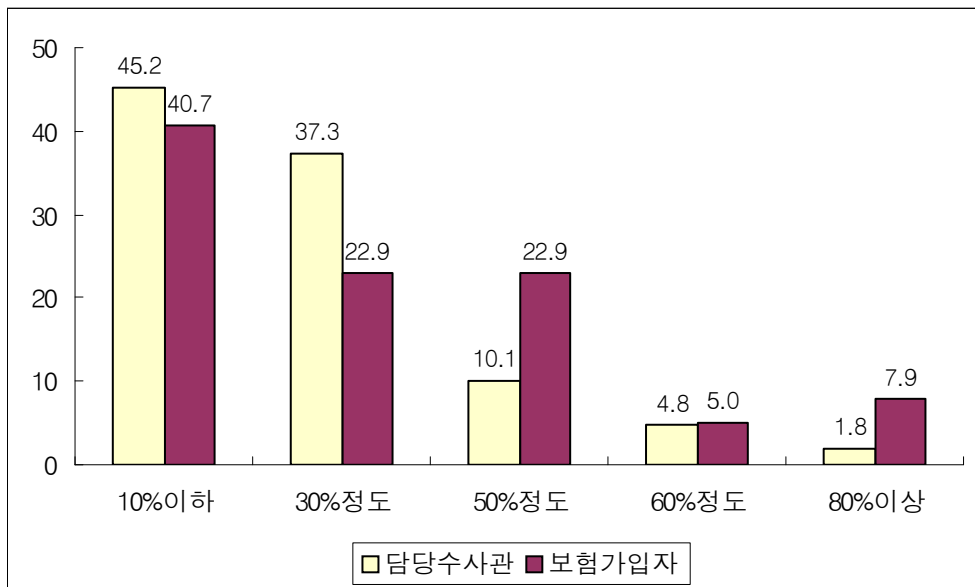
반면 피해과장 보험사기는 보험사고는 실제로 발생하였으나 그로 인한 피해정도를 의도적으로 확대하려는 보험사기행위이며 다분히 우발적이고 충동적인 것으로써 고의사고 사기행위보다는 행위자에 대한 설득 및 자백이 상대적으로 용이하고 또한 간단한 증거만으로도 보험사기행위를 입증하기 쉽기 때문으로 해석된다.

그러나 보험가입자의 설문결과를 보면 연성사기에 대한 적발가능성이 10%미만이라는 의견이 지배적으로 나타나 연성사기에 대하여는 어느 정도 관용적인 태도를 갖고 있으며 언제든지 연성사기의 유혹에 빠질 수 있는 가능성을 갖고 있다고 해석된다.

<그림 4-9> 경성사기의 적발가능성



<그림 4-10> 연성사기의 적발가능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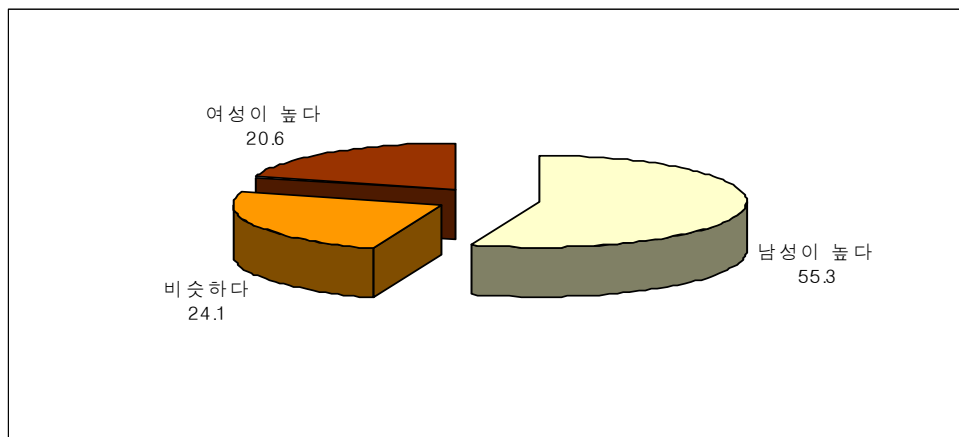
제 4 절 保險犯罪 誘發可能性

보험소비자그룹을 ① 성별, 연령별 ② 직업의 有無 및 類型 ③ 保險專門知識의 有無 ④ 조직폭력단의 介入 ⑤ 중복보험 및 사고경력 등의 5가지 유형으로 나누어 보험범죄의 유발가능성을 분석한 결과 여자보다는 남자가, 20~30대의 연령층, 무직자 또는 경제적 궁핍자의 보험범죄 유발가능성이 높게 나타났고 또한 保險專門知識이 있는 者, 조직폭력단원, 중복보험가입자, 보험사고 경력자 등의 보험범죄의 유발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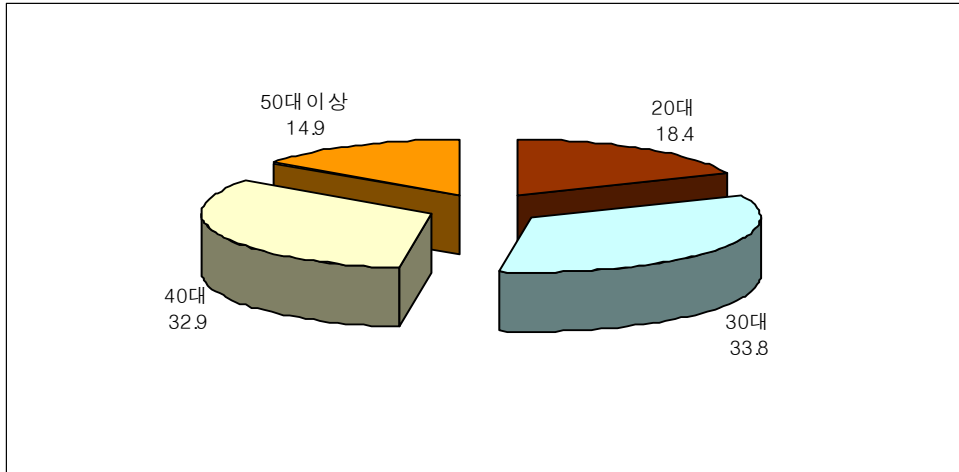
1. 性別 年齡別 保險犯罪 誘發可能性

보험범죄유발 가능성에 대한 성별 구분에 있어서 남성이 여성보다 보험사기의 가능성이 높다는 견해가 전체의 55.3%로 나타났다. 이것은 우리 사회가 아직까지는 남성이 여성보다는 경제활동이 왕성하고 자동차 운전자의 비율이 남성이 여성보다는 월등히 많기 때문으로 해석된다.

<그림 4-11> 성별 유발가능성



<그림 4-12> 연령별 유발가능성



반면 보험소비자의 연령에 따른 보험범죄 유발가능성을 살펴보면 30대와 40대 연령의 보험범죄유발 가능성에 관하여 담당수사관의 견해는 각각 33.8%, 32.9%로써 보험사기자의 연령대 30-40대에서 주로 발생하고 있음을 시사하고 있다.

이는 주로 30대~40대의 연령이 경제활동이 왕성하고 보험제도에 대하여 전문지식을 보다 많이 갖추고 있어 보험사기에 접근이 용이하기 때문으로 해석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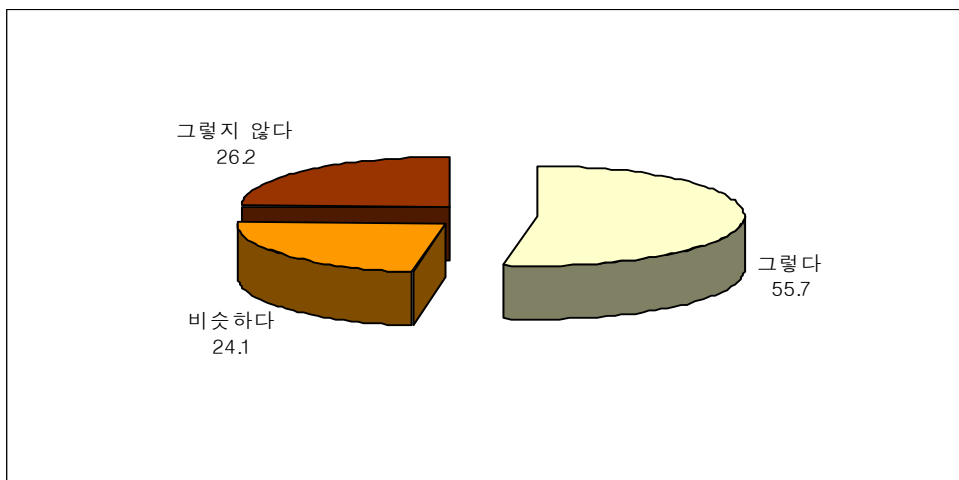
2. 職業의 有無 및 類型別 保險犯罪 誘發可能性

직업의 유무에 따른 보험범죄 가능성에 대한 담당수사관의 견해는 無職者의 保險詐欺 可能性이 높다는 의견에 긍정하는 견해가 55.7%로 나타났다. 이는 무직자의 경우 經濟的 窮乏으로 인해 보험사기의 유혹에 쉽게 빠질 수 있고 住居의 不透明, 적발시 사회적 비난에 대한 두려움이 有職者보다는 상

대적으로 없기 때문인 것으로 해석된다.

실제 앞장의 <그림 3-3>에서 2005년도 직업별 보험사기자 현황에서도 무직자가 1,897명으로 그 비율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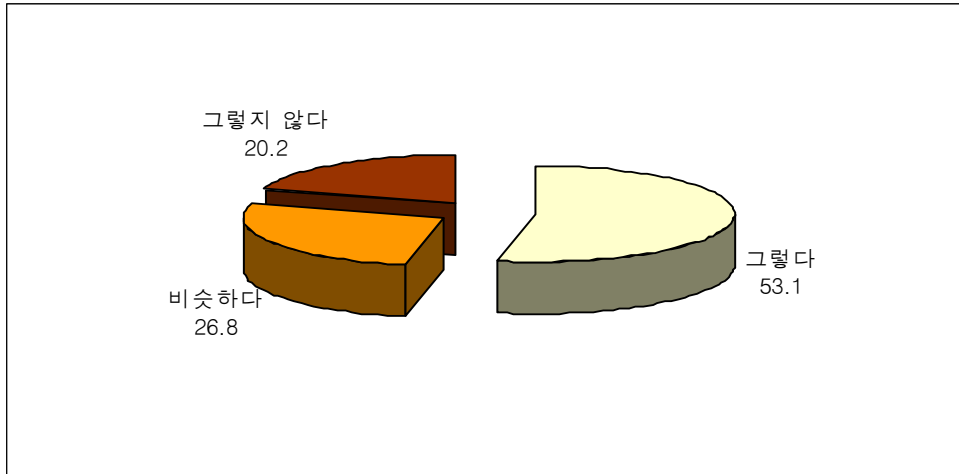
<그림 4-13> 무직자의 유발가능성



또한 자영업자와 급여소득자의 보험사기 가능성의 비교에서 자영업자가 급여소득자보다 보험사기의 가능성이 높다는 견해가 전체의 53.1%로 나타났다. 이는 급여 소득자의 경우 모든 신분이 노출되어 적발시 사회적 비난이 상대적으로 강한 반면 자영업자의 경우 匿名性이 강하여 적발에 따른 사회적 비난이 두려움이 적기 때문으로 해석되고 또한 생활패턴이 급여소득자보다는 비교적 자유롭다는 데에서 그 원인을 찾을 수 있다.

그러나 제3장의 <그림 3-3>의 2005년도 직업별 보험사기자 현황에 따르면 급여소득자의 보험범죄 가담비율도 최근 증가하여 2005년도 보험사기자 적발 결과 자영업자가 490명인 반면 급여소득자는 698명으로 오히려 급여소득자가 더 많은 결과를 보이고 있다

<그림 4-14> 자영업자의 유발가능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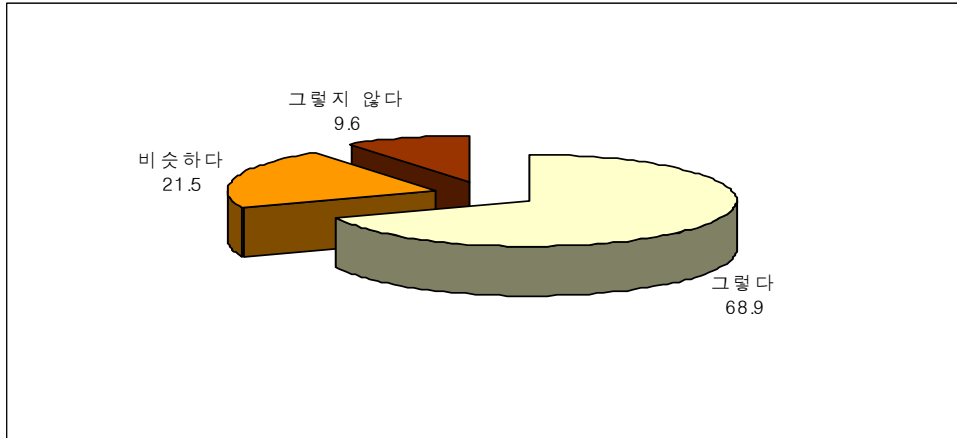
3. 行態別 保險犯罪 誘發可能性

2005년에는 전문차량절도단에 차량을 變造 후 賣却하거나 절도차량을 密輸出하는 행위, 자동차 정비업소의 중고부품을 사용하거나 고의로 차량을 毀損한 후 보험금을 부당 청구하는 등 신종보험사기가 극성을 부리고 있다.⁸⁵⁾

生計型 偶發的 詐欺보다도 조직적이며 知能的 詐欺가 증가하고 있다는 인식도에서 긍정적 답변이 68.9%로 부정적 답변 9.6%의 7배 이상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감독기관이나 보험회사에서는 실시간에 발생하는 保險詐欺의 嫌疑情報를 입수하여 면밀한 분석을 통한 常時調査의 活性化를 꾀해야 할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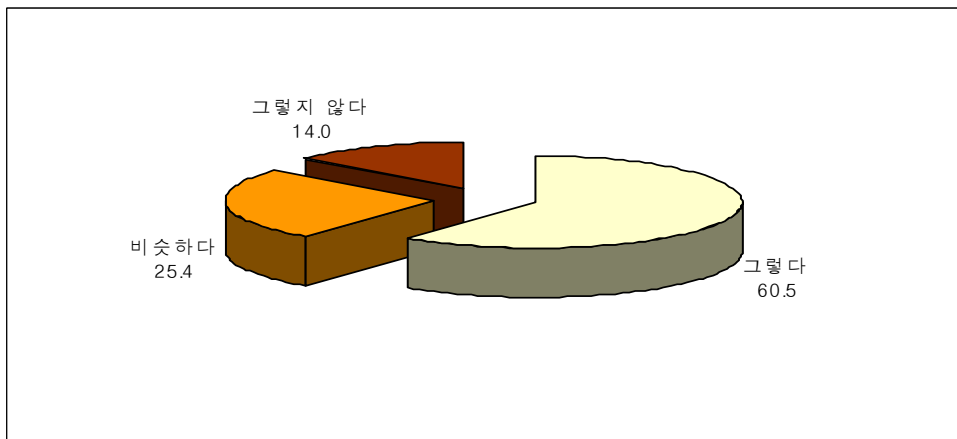
85) 금융감독원 보험조사실, 『2005년 신종보험사기 대폭증가』, 2006.3.14.

<그림 4-15> 조직적 지능적 범죄증가에 대한 인식



한편 보험범죄에 제3자의 개입가능성에 대한 설문에서도 긍정적 답변이 60.5%로 부정적 답변 14.0%에 비해 훨씬 높게 나타났다. 응답자들은 보험에 대한 專門知識이 있는 자들이 조직을 이루어 보험사기에 개입할 가능성이 높을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이라 판단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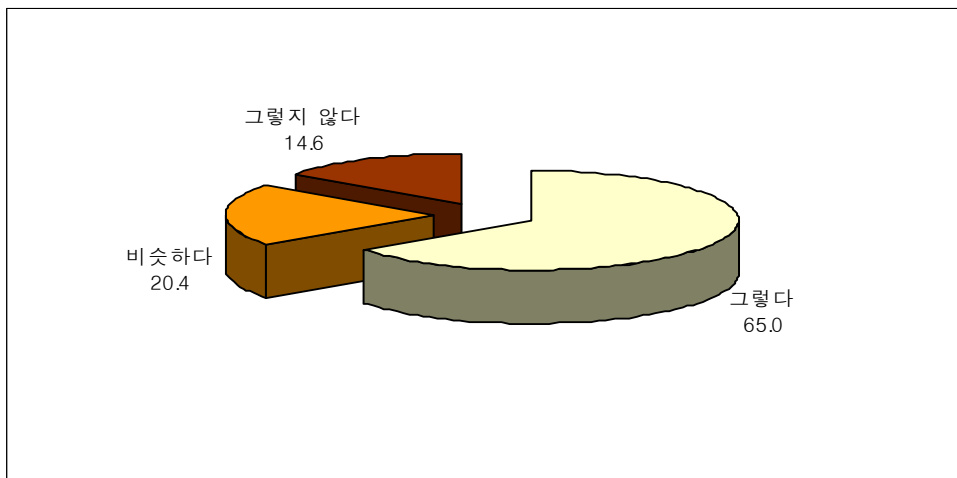
<그림 4-16> 제3자 개입가능성



4. 保險專門知識 保有者의 保險犯罪 誘發可能性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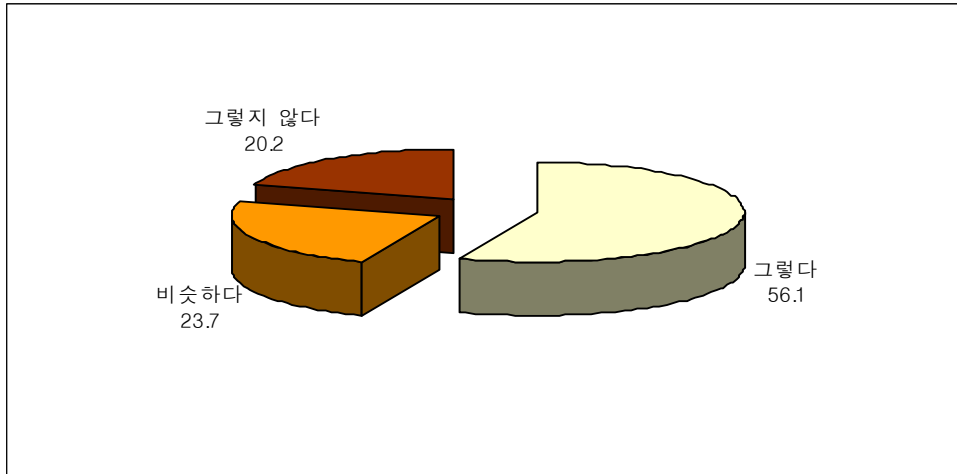
보험에 대한 專門知識의 有無 및 그 程度에 따라 보험사기의 발생가능성을 평가한 결과 전체의 긍정적 견해가 65.0%로 부정적 견해 14.6%의 4.5배를 나타내었다. 이는 보험에 대한 전문지식이 있는 사람이 그 전문지식을 악용하여 보험범죄에 사용할 경우 적발에 대한 방어방법 및 證據湮滅 등 보험범죄에 대한 자신감이 있기 때문에 주변인과 共謀하거나 다수의 관련자를 끌어들이어 지능화 된 組織犯罪로 발전할 가능성이 크다. 따라서 보험관련 유관기관에서는 이들 집단에 대한 지속적인 교육과 홍보가 요구된다.

<그림 4-17> 보험지식보유자의 유발가능성



또한 보험범죄에 組織暴力團 介入가능성에 대한 설문에서 긍정이 56.1%, 보통이 23.7%, 부정이 20.2%로 나타났다. 이는 보험범죄에 대하여 조직폭력배가 개입하는 예가 급속도로 증가하고 있는 추세와 맥락을 같이 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그림 4-18> 조직폭력배 개입가능성



제3장의 <그림 3-3>에서 2005년도 직업별 보험사기자 현황에서 보는 바와 같이 유흥업소 종사자의 보험사기 행위가 2003년에 비하여 2004년 및 2005년에 두 배 이상 증가하였음을 알 수 있다. 또한 금융감독원 보험조사실의 보도자료(2006.3.14.)에서도 조직폭력배들이 역할을 분담하여 고의사고를 유발하는 수법이 최근 보험사기의 주요유형이라고 발표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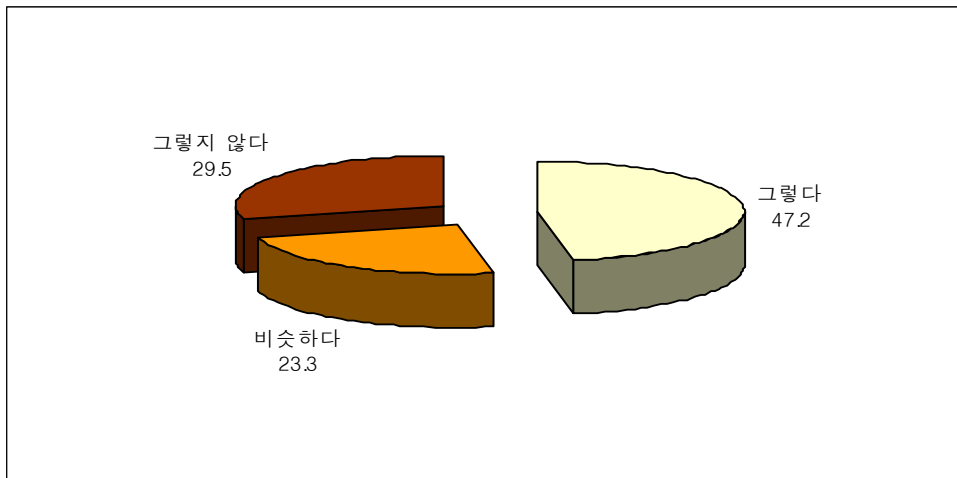
5. 重複保險加入者의 保險犯罪 誘發可能性

보험가입자 중 중복보험에 가입된 보험가입자의 경우 보험사기와 어느 정도 관련성이 있는가에 대한 평가에서 긍정이상의 견해가 47.2%로 부정적인 견해 29.5%보다 높게 나타났다. 이는 保險犯罪의 根源이 중복보험에서 출발하여 實質損害 이상의 보험금을 수령가능한 데에서 출발하기 때문으로 해석된다.

따라서 保險商品의 개발에서도 기존의 영업지향적 高保障 商品을 止揚하

고 1인당 보장한도를 설정하는 등 다양한 측면에서의 제도적 보완이 요구된다.

<그림 4-19> 다수보험가입자의 유발가능성



6. 事故經歷者의 誘發可能性

보험詐欺者들은 일반적으로 사고경력이 많은가에 관한 질문에서 전체 응답자의 68.4%가 긍정이상의 답변을 하여 보험사고의 우연성으로 볼 때 보험사기자들은 사기행위를 반복적으로 유발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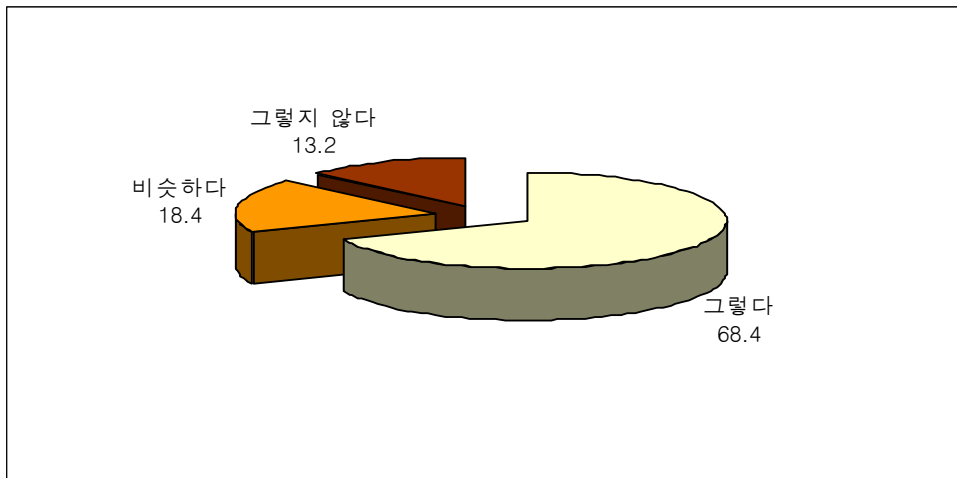
따라서 보험계약시 Under Writing 및 보험사기자 적발을 위한 시스템 구성에 있어서도 이러한 指標를 참고하여야 할 것이다.

현재 多數(重複)保險 또는 事故多發者에 대한 Data Base를 구축하여 검색기능을 지원하고 있는 시스템은 보험개발원의 ICPS⁸⁶⁾와 대한손해보험협회의 보험범죄 의심자 조회시스템에 있으며 금융감독원에서도 손해보험 및 생

86) Insurance Claims Pooling System(보험사고정보시스템)

명보험의 계약정보와 사고정보를 Data Base화하여 保險詐欺有意者를 自動認知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는 것으로 발표한 바 있다.⁸⁷⁾

<그림 4-20> 사고경력자 유발가능성



제 5 절 保險犯罪防止對策에 대한 認識

現行 우리나라의 ‘보험범죄방지대책에 대하여 담당수사관그룹 및 보험가입자그룹은 어떻게 평가하고 있는가’에 관한 설문에서 보험범죄자에 대한 처벌수준을 懲役刑으로 하는 강력한 처벌을 주장하였으며 보험회사 및 유관기관의 보험범죄방지대책에 대하여 매우 불만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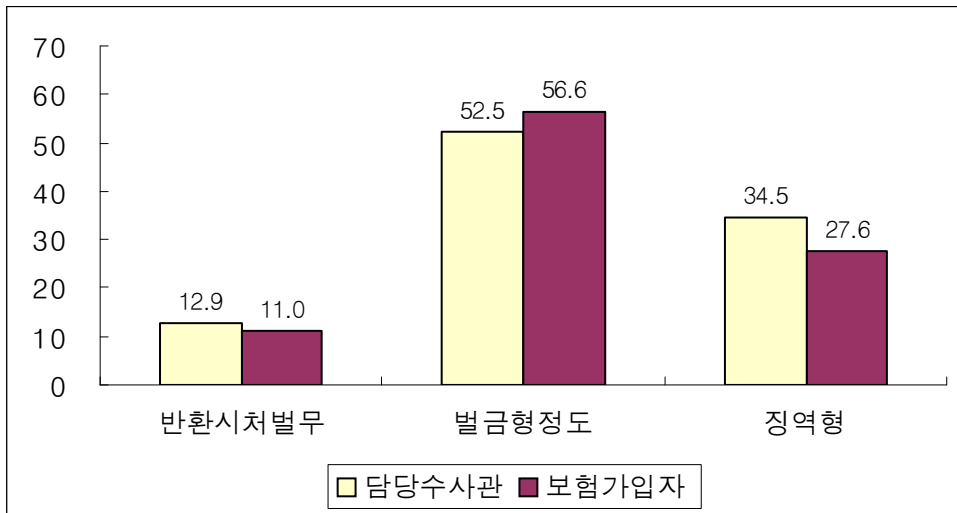
1. 保險犯罪者에 대한 處罰水準

보험범죄자에 대한 예상 처벌수준에 관하여 담당수사관 및 보험가입자그

87) 금융감독원, 『보험사기인지시스템』, 보도자료, 2003.12.8.

룹에서 罰金刑程度를 받을 것이라는 견해가 각각 52.5%, 56.6%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다음으로 懲役刑을 받을 것이라는 견해가 각각 34.5%, 27.6%로 이며. 보험금 반환 시 처벌받지 않을 것이라는 견해가 각각 12.9%, 11.0%로 나타났다. 이처럼 보험가입자그룹은 보험범죄로 인한 처벌수준에 대하여 두려움을 느끼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보험가입자의 심리상태는 보험범죄에 대한 예방정책의 實效性을 가능하게 하는 하나의 단서가 될 수 있다고 판단된다.

<그림 4-21> 보험범죄자의 예상 처벌수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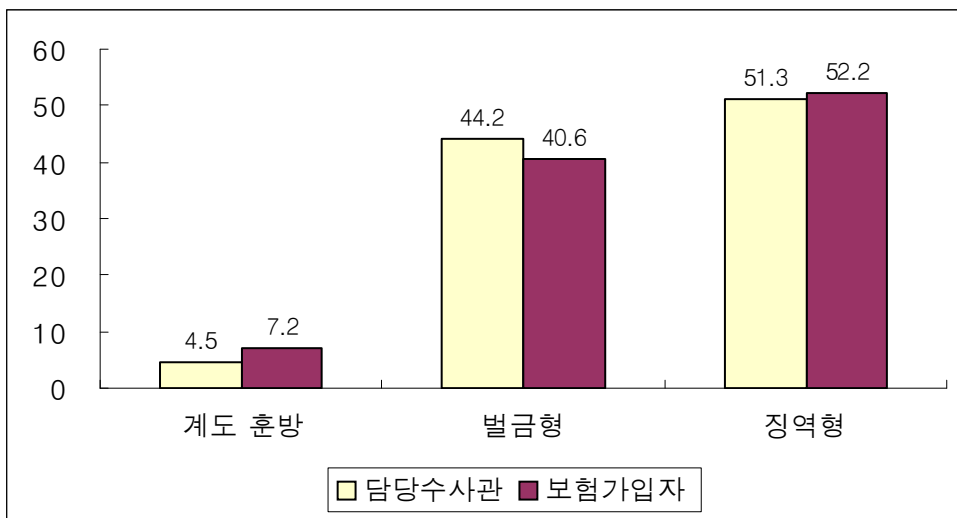


또한 보험범죄자에 대한 적절한 처벌수준의 설문에서 담당수사관 그룹 및 보험소비자그룹이 징역형을 선택한 비율이 각각 51.3%, 52.2로 나타나 두 그룹 모두 보험범죄자에 대하여 강력히 처벌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실제 2005년도 적발된 보험범죄자의 刑事處罰 수준을 보면 앞장의 <그림 3-4>에서 전체 적발자 6,203명 중 구속이 956명으로 15.4%, 불구속이 3,821명으로 61.6%를 차지하고 있다.

따라서 보험범죄의 재발방지 차원에서 적발된 보험범죄자의 처벌은 현행보다 강력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되며 이를 위하여 별도의 保險詐欺罪를 法制化하는 등의 제도적 개선이 요구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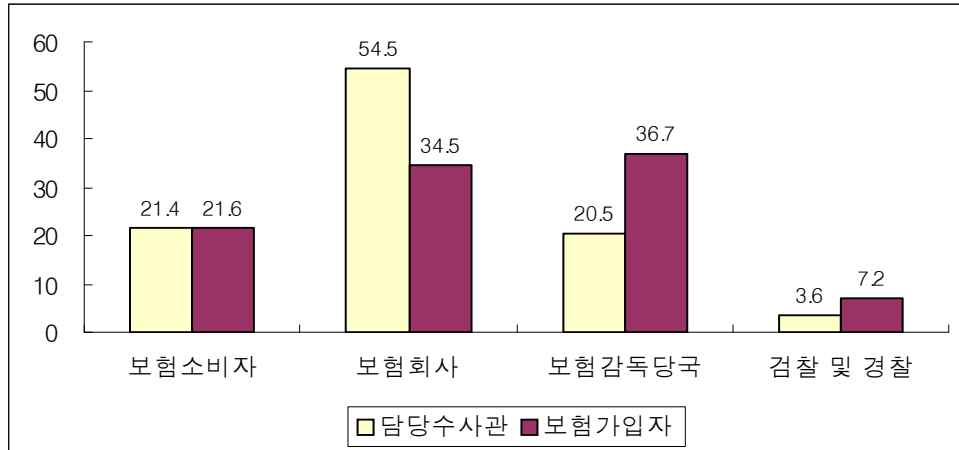
<그림 4-22> 보험범죄자의 적정 처벌수준



2. 保險犯罪防止를 위한 對應政策

보험범죄에 대한 責任所在에 대해서는 담당수사관그룹에서는 보험회사가 54.5%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보험가입자그룹에서는 금융감독원 등 보험감독당국이 36.7%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보험소비자 책임이라는 견해는 두 그룹이 각각 21.4%, 21.6%로 비슷하게 나타났다. 검찰 및 경찰 등 사법당국의 책임이라는 견해는 두 그룹 모두 가장 낮게 나타났지만 보험가입자그룹이 7.2%로 담당수사관그룹 3.6%의 두 배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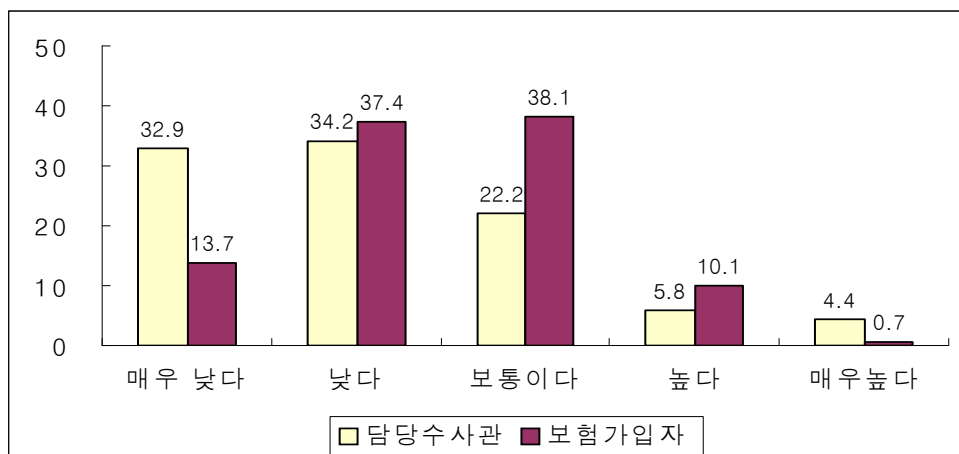
<그림 4-23> 보험범죄에 대한 책임



보험범죄 방지를 위한 보험회사 또는 감독기관, 사법당국의 대응정책에 대하여 담당수사관그룹 및 보험소비자그룹의 견해는 매우 불만족스러운 것으로 나타나 제도적 측면에서 지원해야 할 사항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담당수사관의 보험범죄적발에 따른 회사차원의 報償滿足度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 전체 응답자의 90%이상이 보통이하의 응답을 하였다.

<그림 4-24> 보험범죄 방지를 위한 대응수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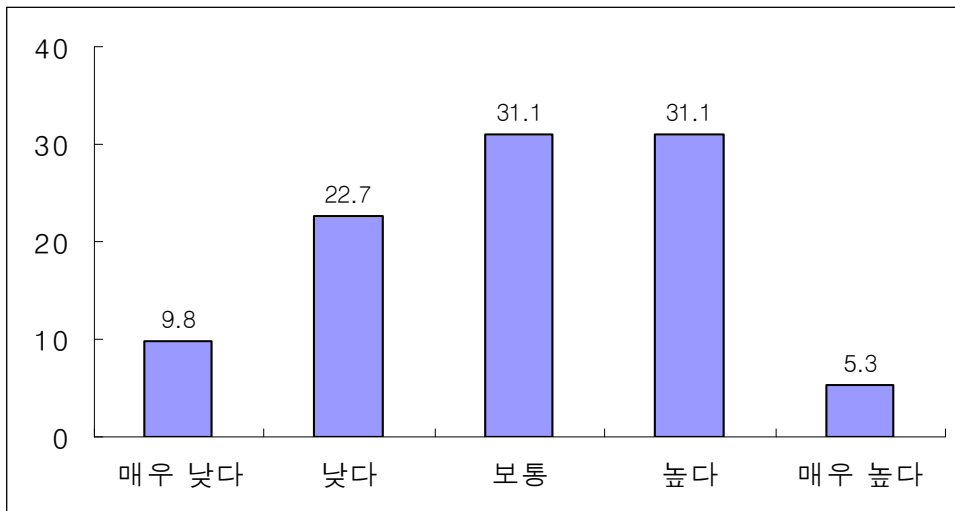


담당수사관의 경우 업무의 특성상 보험범죄에 대한 調査義務를 수행하여야 하나 인력부족에 따른 업무량의 가중, 보험범죄의 지능화 흉폭화에 따른 조사의 어려움 등의 문제로 인하여 보험범죄에 대하여 深度있는 조사를 수행한다는 것은 매우 어려운 문제이다.

따라서 보험회사차원에서 이들 조직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업무량의 輕減하거나 타 조직과 구별되는 별도의 우대조치를 수행하는 방법 또는 보험범죄조사를 전문으로 수행하는 특수조사팀(SIU: Special Investigation Unit)조직의 신설 및 활성화 등의 조치가 요구된다.

SIU조직의 역할에 대한 담당수사관그룹의 기대정도에 대하여 보통이상이라는 긍정적인 응답이 전체의 약 67.6%로 나타나 현실적으로 보험범죄조사 업무가 보상업무에서 분리되어 별도로 운영되어야 함을 시사하고 있다.

<그림 4-25> 특수조사팀(SIU) 역할에 대한 기대



3. 保險犯罪防止를 위한 政策方向

<표 4-2>에 의하면 보험범죄 증가의 주된 원인과 보험범죄의 예방 및 적발의 극대화를 위하여 가장 필요한 것은 무엇인가라는 설문에서 대부분의 응답자는 法律的, 制度的 次元에서 보험회사 및 정부와 감독기관에 거는 기대가 매우 큰 것으로 나타났다.

보험범죄 증가의 주된 원인에 대해서 ‘보험범죄에 대한 罪意識 缺如’가 23.5%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다음 순으로 ‘生活苦에 의한 經濟的 窮乏’과 ‘전문범죄집단의 보험범죄 가담’이 각각 17.3%, 그리고 ‘처벌의 경미함’이 17.1%로 나타났다.

<표 4-2> 보험범죄 증가원인(3가지 응답)

구 분	빈 도	비 율
생활고로 인한 경제적 궁핍	98	17.3
보험범죄에 대한 죄의식 결여	133	23.5
처벌의 경미함	97	17.1
보험회사의 능력부족	48	8.5
수사기관의 무관심	32	5.7
전문범죄집단의 보험범죄 가담	98	17.3
보험사기범에 대한 관용적인 사회적 태도	60	10.6
계	566	100.0

<표 4-3>과 같이 保險犯罪의 예방 및 적발의 극대화 등 犯罪縮小化를 위해 가장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방안으로 ‘보험사기자에 대한 엄격한 처벌’과 ‘보험특수조사팀의 설치 및 확대’가 각각 18.7%와 18.5%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다음 순으로 ‘담당자에게 공인된 조사권 부여’가 16.8%의 응답을 보였다.

<표 4-3> 보험범죄 축소방안(3가지 응답)

구 분	빈 도	비 율
보상직원의 증원으로 적정한 배당	73	12.8
공인된 조사권의 부여	96	16.8
매스컴을 통한 지속적인 홍보활동	56	9.8
보험사기자에 대한 엄격한 처벌	107	18.7
사법기관의 공식적인 수사채널 확보	70	12.2
유관기관의 정보공유	64	11.2
보험사기 특수조사팀(SIU)의 설치 및 확대	106	18.5
계	572	100.0

제 6 절 因果關係分析

1. 假說의 設定

본절에서는 保險犯罪 誘發可能性의 類型이 보험범죄의 심각성에 대한 의식도 및 처벌수준의 정도와의 因果關係를 分析한다. 또한 범죄 유발가능성이외에 어떠한 요인들이 처벌수준의 정도에 크게 영향을 미치는 것인가에 대해서도 분석한다. 이와 같은 분석을 위해 다음과 같은 假設을 설정한다.

假說 1 : 保險犯罪 誘發可能性의 類型에 따라 보험범죄의 深刻性에 대한 意識度가 달라질 것이다.

가설 1을 보험범죄 유발가능성 유형별로 세분하여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 假說 1.1 : 무직자가 유직자보다 보험사기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보험범죄는 심각하다.
- 假說 1.2 : 자영업자가 급여소득자보다 보험사기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보험범죄는 심각하다.
- 假說 1.3 : 경제적 빈곤층이 보험사기를 유발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보험범죄는 심각하다.
- 假說 1.4 : 보험에 대한 전문지식이 있는 자가 보험사기를 유발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보험범죄는 심각하다.
- 假說 1.5 : 보험사기에 조직폭력배의 개입이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보험범죄는 심각하다.
- 假說 1.6 : 외제차량 등 고급차량을 이용한 보험사기의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보험범죄는 심각하다.
- 假說 1.7 : 장기보험 등 다수(중복) 보험가입자가 보험사기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보험범죄는 심각하다.
- 假說 1.8 : 사고경력이 많은 자가 보험사기의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보험범죄는 심각하다.
- 假說 1.9 : 보험사기자는 지급이 미루어지면 민원을 제기하여 보험회사를 압박하는 등 지능적 행위가 이루어지 때문에 보험범죄는 심각하다.
- 假說 1.10 : 保險詐欺事件에 전문브로커 등 제3자가 합의에 개입하기 때문에 보험범죄는 심각하다.
- 假說 1.11 : 生計型·偶發的 詐欺보다 組織的·知能的 詐欺가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보험범죄는 심각하다.
- 假說 2 : 保險犯罪 誘發可能性의 類型에 따라 보험범죄에 대한 처벌수준정도에 대한 意識이 다를 것이다.

假說 2를 보험범죄 유발가능성 유형별로 세분하여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假說 2.1 : 무직자가 유직자보다 보험사기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처벌수준을 강화해야 한다.

假說 2.2 : 자영업자가 급여소득자보다 보험사기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처벌수준을 강화해야 한다.

假說 2.3 : 경제적 빈곤층이 보험사기를 유발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처벌수준을 강화해야 한다.

假說 2.4 : 보험에 대한 전문지식이 있는 자가 보험사기를 유발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처벌수준을 강화해야 한다.

假說 2.5 : 보험사기에 조직폭력배의 개입이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처벌수준을 강화해야 한다.

假說 2.6 : 외제차량 등 고급차량을 이용한 보험사기의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처벌수준을 강화해야 한다.

假說 2.7 : 장기보험 등 다수(중복) 보험가입자가 보험사기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처벌수준을 강화해야 한다.

假說 2.8 : 사고경력이 많은 자가 보험사기의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처벌수준을 강화해야 한다.

假說 2.9 : 보험사기자는 지급이 미루어지면 민원을 제기하여 보험회사를 압박하는 등 지능적 행위가 이루어지 때문에 처벌수준을 강화해야 한다.

假說 2.10 : 保險詐欺事件에 전문브로커 등 제3자가 합의에 개입하기 때문에 처벌수준을 강화해야 한다.

假說 2.11 : 生計型·偶發的 詐欺보다 組織的·知能的 詐欺가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처벌수준을 강화해야 한다.

다음으로 保險犯罪 誘發可能性 이외에 처벌수준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보험범죄의 심각성, 보험사기의 적발확률, 보험설계사 및 보상담당직원의 묵인 등의 세 가지 변수로서 다음과 같은 가설을 설정한다.

假說 3.1 : 보험범죄에 대한 심각성에 대한 의식이 클수록 처벌수준을 강화해야 한다는 認識이 클 것이다.

假說 3.2 : 보험사기의 적발확률이 낮기 때문에 처벌수준을 강화해야 한다.

假說 3.3 : 보험설계사 등 보험회사직원이 가입자의 사기행위를 묵인·방조하기 때문에 처벌수준을 강화해야 한다.

2. 保險犯罪 深刻性에 영향을 미친 誘發可能性 要因

<표 4-4>에서는 經濟擔當 捜査官들이 어떤 범죄유발 가능성 때문에 보험범죄가 深刻하다는 意識을 갖게 된 것인가를 파악하기 위하여, 보험범죄유발가능성 항목들을 獨立變數로 하고 보험범죄 심각성을 從屬變數로 하여 回歸分析한 결과이다. 분석결과 보험전문지식자, 조직폭력배, 다수 사고경력자, 제3자 등이 보험범죄에 개입하기 때문에 이에 따라 生計型 犯罪보다도 組織的·知能的 詐欺가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보험범죄의 심각성이 크다고 여기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無職者 및 貧困層과 자영업자가 급여소득자보다 보험범죄 가능성이 높으며, 외제차 등 고급차를 이용한 보험사기가 많기 때문에 보험범죄가 심각하다는 假說은 棄却되었다.

이와 같은 分析結果는 무직자나 빈곤층 등에 의해 행해진 생계형 범죄보다는 보험전문지식자와 조직폭력배가 조직을 구성하여 보험사기에 개입하기 때문에 보험범죄가 보다 심각하게 대두되고 있다는 사실은 論證한 것이라고

하겠다.

<표 4-4> 보험범죄 심각성과 유발가능성

독립변수	비표준화 계수		표준화 계수	t 값	유의확률
	B	표준오차	베타		
무직자	-0.032	0.088	-0.023	-0.364	0.716
자영업자와 급여소득자	-0.036	0.091	-0.025	-0.397	0.692
빈곤층	0.035	0.085	0.026	0.412	0.681
보험전문지식 소유자	-0.212	0.100	-0.139	-2.126	0.035
조직폭력배 개입	-0.185	0.088	-0.131	-2.108	0.036
고급차량 소유자	0.018	0.082	0.013	0.216	0.829
보험 다수가입자	-0.110	0.084	-0.084	-1.301	0.195
사고경력 다수자	-0.306	0.101	-0.195	-3.032	0.003
민원제기	-0.225	0.082	0.169	-2.747	0.007
제3자 개입	-0.278	0.100	-0.181	-2.776	0.006
조직적 사기	-0.280	0.105	-0.165	-2.676	0.008

3. 處罰水準 程度에 영향을 미친 要因

<표 4-5>는 경제담당 수사관들이 어떤 범죄유발 가능성 때문에 보험범죄에 대하여 處罰水準을 강화해야 한다는 의식을 갖게 된 것인가를 파악하기 위하여, 보험범죄 유발가능성 항목들을 獨立變數로 하고 보험범죄에 대한 처벌수준을 從屬變數로 하여 回歸分析한 결과이다. 분석의 결과는 보험범죄 심각성에 대한 분석과는 약간 相異하게 나타났다. 표에서와 같이 자영업자가 급여소득자보다 보험사기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조직폭력배 개입가능성 높

기 때문에, 사고경력이 많을수록 보험사기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保險詐欺者는 민원을 제기하여 保險會社를 압박하는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生計型보다 組織的·知能的 詐欺가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처벌수준을 강화해야 한다는 데에 有意性 있는 관계를 보였다.

<표 4-5> 보험범죄 처벌수준과 유발가능성

독립변수	비표준화 계수		표준화 계수	t 값	유의확률
	B	표준오차	베타		
무직자	-0.027	0.049	-0.037	-0.555	0.579
자영업자와 급여소득자	0.133	0.051	0.181	2.617	0.010
빈곤층	-0.045	0.048	-0.063	-0.933	0.352
보험전문지식 소유자	-0.051	0.056	-0.064	-0.914	0.362
조직폭력배 개입	-0.146	0.055	-0.180	-2.635	0.009
고급차량 소유자	0.008	0.046	0.012	0.176	0.860
보험 다수가입자	-0.028	0.047	-0.042	-0.598	0.551
사고경력 다수자	-0.141	0.056	-0.175	-2.517	0.013
민원제기	-0.137	0.046	0.199	-2.998	0.003
제3자 개입	-0.051	0.056	-0.064	-0.917	0.360
조직적 사기	-0.153	0.058	-0.175	-2.630	0.009

다음으로 <표 4-6>은 보험범죄 유발가능성 이외의 무슨 요인 때문에 처벌수준을 강화한다는 의식을 擔當捜査官들이 갖게 된 것인가를 파악하기 위해 回歸分析한 결과이다. 표에서와 같이 보험범죄에 대해 심각성의 의식도가 클수록, 故意事故 保險詐欺(硬性詐欺)의 적발확률이 낮다고 여길수록, 그리고

보험설계사 등의 보험회사원이 계약자의 사기행위를 傍助・默認하는 경우가 많다고 생각할수록 처벌수준을 강화해야 한다는 데에 有意的인 것으로 분석되었다.

<표 4-6> 처벌수준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독립변수	비표준화 계수		표준화 계수	t 값	유의확률
	B	표준오차	베타		
보험범죄의 심각성	0.199	0.033	0.386	5.965	0.000
보험사기의 적발확률	-0.088	0.035	-0.151	-2.520	0.012
보험설계사의 묵인정도	0.069	0.033	0.132	2.066	0.040

제 7 절 示唆點

경제범죄 담당수사관과 보험가입자의 보험범죄에 대한 意識度를 調査分析한 결과 다음과 같은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1. 弘報 및 教育의 必要性

보험가입자 및 보상담당자의 경우에도 軟性詐欺에 대하여는 犯罪意識이 微弱하여 慣用的인 태도를 보이고 있음을 확인하였고 적발가능성에 대하여도 매우 悲觀的인 見解를 갖고 있음을 확인하였으며 보험범죄증가의 주된 원인으로 罪意識의 缺如, 처벌의 경미함, 관용적인 사회적 태도 등으로 나타났다. 또한 보험전문가의 보험사기 유발가능성 및 다수(중복) 보험가입자와

사고 경력자의 보험사기 유발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고 30~40대 연령, 무직자, 자영업자의 보험범죄유발가능성이 높게 나타났다. 이러한 견해는 保險履行關係者에 대한 弘報와 教育不在에서 나타난 결과로 해석되므로 교육프로그램의 개발 및 보험범죄에 대한 지속적인 홍보활동이 요구된다.

2. 制度的 支援의 必要性

保險犯罪豫防 및 摘發의 極大化를 위한 필요정책에 대하여 엄격한 처벌, 공인된 조사권의 부여, 적정한 업무배당, 특수조사팀의 확대 등의 견해가 우세하였다.

이러한 견해는 현실적으로 보험범죄에 대한 조사가 조사자의 개인적인 역량에 기대하고 있고 제도적 차원에서 조사자를 지원하는 장치가 全無한 현실에서 나타난 결과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조사자의 역량을 최대화 할 수 있는 제도적 차원의 지원이 우선 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제 5 장 保險犯罪의 防止對策

제 1 절 保險犯罪 搜查力の 強化

현재 보험범죄의 특성은 設問調查에서 확인하였듯이 生計型 · 偶發的 保險詐欺에서 組織的 · 知能的 保險詐欺로 변화하고 있으나 보상담당자 및 SIU 팀의 조사요원은 공인된 조사권이 없는 이유로 조직형 범죄에 대한 적발이 용이하지 않으며 이러한 경우 SIU조사요원은 前職警察官이었던 身分과 人脈을 활용하여 해당 경찰서 또는 검찰청에 수사를 의뢰하고 있는 실정이다.

그러나 司法機關 또한 搜查人力이 매우 부족한 현실에서 살인, 강도 등의 강력범죄를 우선으로 처리하고 있고 경찰청 마약지능과 등에서 經濟犯罪의 하나로 保險犯罪를 다루고는 있으나 보험범죄의 적발은 수사관 개인의 昇進이나 人事에 큰 도움이 되지 못하는 내부적 문제로 인하여 장기간 방치되는 경향이 있다.

따라서 SIU요원의 公認된 조사권이 확보되기 전까지는 보험범죄에 대한 정규 수사채널을 구성하고 보험범죄적발에 대한 인사상의 혜택을 개선함으로써 심각한 사회범죄인 보험범죄에 대한 적발이 용이할 것으로 판단된다.

이에 대한 방법으로 대한손해보험협회에서 실시하는 보험범죄아카데미교육과정을 이수한 경찰관을 중심으로 保險犯罪專擔搜查팀을 구성하는 것도 가능하다. 즉, 보험범죄에 대한 전문수사팀을 운영함으로써 보험범죄에 대한 專門搜查人力을 創出할 수 있고 정규 수사채널이 확보됨으로써 신속한 수사의 진행과 전문지식의 활용으로 보험범죄에 대한 적발이 효율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다고 판단된다. 이를 위하여 경찰청과 금융감독원 및 보험협회의 지속적인 노력이 요구된다.

그러나 현행 보험범죄수사는 一般司法 警察權이 있는 檢·警察에서 담당하고 있는데 주로 搜查人力이 많은 경찰에서 처리하고 있다. 그러나 현재 경찰의 수사는 늘어나는 사건에 비해 수사인력이 한정되어 있으므로, 警察搜查力(특히 외근형사요원)을 보강한 후, 교통사고감정 등 이론과 실무 경험능력이 탁월한 搜查要員을 양성·배치하되, 보험회사 손해사정 담당부서와 긴밀한 협조체제를 구축(매월 수사관계관협의회 개최 등) 하여 첩보 및 자료교환을 활성화하여 대처해 나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된다.

종종 보험금청구와 관련하여 보험회사 직원들을 협박하는 경우가 있는바, 이러한 경우에도 수시로 搜查協議體인 警察官署 責任者와 긴밀한 협조체제를 구축하여 해결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된다.

이에 대하여 一角에서는 보험회사 손해사정 담당직원에게 보험범죄와 관련 司法警察權을 부여하여야 한다는 주장이 있으나,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보험범죄라는 개념자체가 교통사고조사, 살인, 상해, 방화 등 일반형사사건을 통해 이루어지고 있으므로, 일반 형사사건을 조사한 경험이 없는 보험회사 직원에게 司法警察權을 부여한다는 것은 現行法이나 實務上 어렵다고 생각된다.

현재 경찰과 검찰에 적발된 보험범죄는 대부분 위장교통사고 사건이고, 保險金 騙取를 목적으로 한 살인·상해 사건이 그 다음을 차지하고 있다. 위장교통사고 사건의 경우 보험회사의 提報나, 교통사고 조사과정에서 조작의혹제기 등 自體諜報에 의하여 수사에 착수하여 적발하고 있는데, 경찰의 경우 지방청, 경찰서 형사과(강력팀) 및 수사과(지능범죄팀)에서 수사하고 있다.

보험관련 살인·상해사건은 통상 保險加入關係 및 保險內譯(보험계약시기, 피보험자, 수익자, 계약자) 등을 추적·수사하면서 어느 정도 보험사기조작의혹이 제기되는 경우에 공범자의 진술 등 관련자료를 가지고 被疑者를

상대로 추궁하여 적발하고 있다.⁸⁸⁾

이러한 보험관련사건은 사전에 조직적으로 치밀하게 이루어지므로 搜查着手段階에서부터 檢舉하기까지 장기간의 시간이 소요되고, 증거자료를 사전에 隱匿·湮滅시키고 있으므로, 증거확보에 상당히 어려움이 따르고 있는 실정이다. 특히 어느 정도 확보한 증거를 가지고 피의자를 추궁하는 경우, 피의자들이 완강히 범행사실을 부인하고 있어 수사에 어려움이 많다. 수사실무상 이러한 보험범죄 사건들은 철저한 사건기록(교통사고조사, 상해, 살인, 화재사건기록) 검토와 끈기 있는 수사관의 수사의지 여하에 따라 사건해결의 승패가 좌우되고 있다.

아울러 保險犯罪搜查는 證據確保가 관건이므로 교통사고조사 및 화재사건감식 전문가의 양성과 장비의 개발·보급 확대도 병행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保險詐欺關聯手法 적발사례 및 유형에 관한 책자를 제작, 보험사직원 및 警察官署에 보급하는 방안도 필요하다.

제 2 절 保險會社의 制度改善

치열한 국내·외 보험업계에서 생존하기 위해서는 保險誘致競爭이 필요하다고 생각되나, 현재의 保險設計士 등을 통한 무분별한 보험유치경쟁으로 인하여 자칫 保險制度가 歪曲되어 이를 이용한 보험관련 범죄를 부추기는 경우도 있다고 필자는 생각한다.

따라서 협회를 중심으로 보험계약절차를 개선하고, 保險電算網을 構築하여 詐欺性이 짙은 고액·중복보험을 막고, 保險契約前에 保險契約者의 前歷(保險詐欺關聯前歷 등), 재산상태, 건강, 가족관계, 직업에 대하여 철저한 조

88) 이는 지방청 경찰서 형사과에서 담당함.

사를 하는 등 보험계약체결에 慎重을 기하도록 보험계약체결절차를 개선해야 할 것이다.

한편 合理的 損害額 算定을 위해 專門保險의 제도도입이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또한 화재 및 교통사고조사 감정경험이 풍부한 실무전문가를 保險會社 損害査定勤務部署에 채용·배치하여, 보험사고 조사를 專門化함과 아울러 인원을 보장시키고, 이에 대한 철저한 감독도 병행해야 한다고 생각된다.

또한 현재 보험사고 발생시 보험금지급과 관련하여, 신체감정, 慰藉料算定, 日實收入 등에 관한 보상기준이 보험회사와 법원간, 그리고 보험회사별로 상이하어, 이를 둘러싼 브로커, 병원관계자, 損害査定人, 보험회사 직원 등이 癒着된 보험범죄가 頻發하고 있으므로, 보다 합리적인 보상기준을 정하여 보험금청구소송을 둘러싸고 브로커가 결탁된 보험범죄를 차단해야겠다.

현행 보험서비스는 고객들에게 신속하게 보험금을 지급해야 치열한 국내외 경쟁상황에서 생존할 수 있으므로, 보험금청구시 보험사고의 眞實性與否를 신속·정확히 조사할 수 있도록, 전문화된 손해사정조사팀을 구성함과 동시에 기존 조직에 인원을 보장하는 방안도 강구해야 할 것이다.

제 3 절 弘報 및 教育의 強化

보험범죄자들은 보험범죄가 직접적 피해자가 없다고 여겨 죄의식 없이 범죄를 저지르고 있다. 그런데 보험범죄의 증가는 결국 국민들의 保險料 上昇負擔으로 轉嫁된다. 따라서 정부와 보험업계가 중심이 되어 保險詐欺犯罪는 반드시 적발되어 무거운 형벌을 받는다는 사실이 인식되도록 홍보활동의 강화와 더불어 道德性 回復運動을 병행해 나가야겠다.

보험범죄의 提報者에 대한 褒賞制度는 현재 대한손해보험협회의 보험범

죄방지센터에서 운영하고 있는 유일한 것이며, 2002년 12월 보험사기 제보자 포상금의 한도를 500만원에서 1억원으로 상향 조정하고 홈페이지에 이를揭示함으로써 보험사기에 대한 제보의 활성화를 유도하고 있으나 이에 대한弘報不足으로 인하여 그 활용도는 매우 저조한 상황이다.

또한 보험회사의 손해사정담당자의 보험사기적발에 대한 인센티브지급의 경우에도 손해사정 담당자들은 불만족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이에 대한保險會社次元의 制度的 改善努力이 요구된다.

운전자 바뀌치기 또는 보험가입 전 사고, 피해과장 등과 같은 單發的 保險詐欺는 損害査定 擔當者들이 손해사정 과정에서 직접 조사하고 적발하고 있다. 손해사정담당자의 업무범위에 당연히 보험사기의 여부를 조사하여야 할 의무가 있으나 業務量의 過多로 인하여 심도 있는 보험사기조사가 어려운 상황이다. 또한 보험사기의 특성상 이의 적발에는 많은 시간과 노력이 요구되는 상황에서 손해사정 담당자가 보험사기를 적발한 경우 이에 대한 적정한 보상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따라서 보험협회 및 금융감독원 보험회사는 공인된 제보자 褒賞金制度 및 提報者에 대한 완벽한 身邊保護制度를 마련하고, 이를 일반 대중에 지속적으로 홍보하여 보험범죄의 제보를 활성화하여야 한다. 보험사업자의 경우에는 내부 손해사정담당자에 대한 만족할만한 수준의 보험사기적발 포상금 제도 또는 人事優待制度를 시행하여 보험범죄의 적발을 적극 유도하여야 할 것이다.

그리고 보험에 대한 專門知識을 갖춘 보험회사 보상담당자 및 보험설계사는 현장에서 보험계약자 및 피해자 기타 보험관련자들과 가장 밀접하게 상호작용을 수행하는 자로써, 이들에 대한 보험범죄 예방교육을 통하여 保險消費者들에게 보험범죄에 대한 警覺心과 違法性을 전달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設問調査에서 나타난 바와 같이 保險專門家들조차 軟性詐欺에 대

하여는 매우 慣用的인 態度를 갖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이들에 대한 보험범죄예방교육 프로그램이 매우 시급한 상황이다.

현재 보험회사 및 유관기관에서 이들 조직에 대하여 실시하는 교육프로그램은 해당업무에 한정되어있고 별도의 保險犯罪豫防 教育프로그램은 실시되지 않고 있는 실정으로 각 업무특성에 맞는 보험범죄예방 교육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실행함으로써 보험범죄예방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그리고 보험설계사 및 보험계약자중 보험범죄유발 가능성이 높게 나타난 그룹 즉 20~30대 연령의 남자, 무직자 및 자영업자, 조직폭력배, 중복보험가입자, 사고경력자 등에 대한 별도의 홍보 교육프로그램을 研究開發함으로써 보험범죄의 예방에 기여하여야 할 것이다.

또한 현재 保險金算定에 있어 상해진단서, 신체감정서, 교통사고 조사감정서, 화재감정결과 등이 결정적인 역할을 하고 있으므로, 이를 감정하는 의사, 경찰관, 대학교수 등 전문가를 양성하고, 이들을 보험회사에서 채용하여 각종 보험사건의 감정을 담당하도록 해야 할 것이다.

제 4 절 保險犯罪 處罰條項의 新設

현재 보험범죄 피의자는 刑法(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의 詐欺罪 등을 적용하여 처벌하고 있으나, 2003년 12월 발목절단사건의 경우, 피의자가 보험금을 청구한 사실이 없어, 保險詐欺 實行的 着手이 없다고 보아(通說慣例) 결국 處罰法規 欠缺로 처벌할 수 없어, 국민의 法感情 및 常識에 反하는 결과를 초래하였다. 따라서 현행 保險業法, 또는 刑法上的 사기죄에 보험사기 범죄규정을 신설하여 보험금을 편취할 목적으로 허위로 보험계약을 체결한 시점에서 바로 처벌할

수 있도록 처벌규정을 신설하는 방안도 검토해 보아야겠다.

현재 보험사기에 대한 처벌법규는 독립된 보험사기에 관한 법률조항이 없어 刑法 제347조의 사기죄 및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1호에 의거 처벌하고 있는 실정이어서 처벌수준도 매우 미약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보험사기는 그 피해가 진 보험계약자에게 영향을 미치고 또한 사회의 건전한 經濟秩序를 파괴하는 중대한 범죄로서 형법의 사기죄와는 별도로 보험사기에 대한 법률적 규정이 요구된다.

보험사기에 대하여 독립된 처벌규정을 신설하는 방법으로 별도의 보험사기방지법을 제정하는 방법, 현행 형법의 사기죄 조항에 보험사기에 대한 내용을 추가하는 방법 또는 보험업법의 내용에 보험사기에 대한 규정을 신설하는 방법 등 다양한 측면에서 保險詐欺關聯法律의 制定이 논의되어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한 준비단계로서 첫째 보험범죄에 대한 명확한 概念定義, 둘째 보험범죄에 해당하는 행위의 범위설정, 셋째 보험범죄의 유형에 대한 세분화와 유형에 따른 처벌수준의 差別化, 넷째 처벌수준에 관한 형법 등과의 衡平性, 다섯째 民事上 制裁方案 포함(민사제: civil penalty 등), 여섯째 보험범죄의 특성에 따른 公訴時效에 대한 特例規定 등이 종합적으로 검토되어야 할 것이다. 그리고 처벌조항 제정의 趣旨은 처벌수준을 강화하여 보험범죄의 위법성을 분명히 인식시키고 再發을 방지함으로써 건전한 經濟秩序를 수립한다는 측면에서 고려되어야 할 것이다.

제 5 절 統合資料 管理시스템의 開發

보험범죄에 대한 대처방안은 범죄수법 및 통계 등의 資料管理에서 비롯된다고 생각한다. 따라서 보험범죄발생, 검거, 유형별 분석, 수법, 처벌형량

등에 대한 각종 자료를 정비하여, 이를 기초로 보험범죄를 분석하고 그 대책을 마련하는 것이 절실히 필요하다고 하겠다.

보험범죄의 방지 및 적발을 위한 가장 기초적인 정책방향은 제반 보험범죄관련정책이 효과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충분하고 신뢰할 수 있는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다. 즉 保險契約情報 및 事故情報를 하나의 시스템으로 一元化하여 보험계약 시 Under Writing의 기초자료로 활용함으로써 보험범죄를 사전에 차단할 수 있고 또한 集積된 데이터를 標準化하여 保險詐欺指標(Fraud Indicator 또는 Red Flag)⁸⁹⁾를 개발함으로써 보험사기자를 자동으로 인지하여 적발할 수 있는 保險詐欺自動認知시스템의 개발을 가능하게 할 수 있다.

현재 보험개발원에서 보험정보를 DB화하여 운영하고는 있으나 우체국이나 각종 控除機關의 데이터가 배제된 점, 일정금액 이하의 자료는 제외된 점, 보험사업자의 情報流出에 따른 경계심, 각 보험사의 시스템 상이에 따른 데이터의 信賴度 문제, 이용자의 제한에 따른 문제, 개인신용정보의 유출에 따른 법률적인 문제 등으로 인하여 그 활용도는 크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또한 현재 개발이 진행 중인 금융감독원의 「保險詐欺認知시스템」의 경우 全保險會社의 계약정보와 사고정보를 금융감독정보교환망(FINES)을 통하여 On-Line으로 제출받아 DB화하고 이 자료를 이용하여 혐의자를 자동으로 추출하고 추적할 수 있는 시스템으로 보험범죄를 예방하고 적발하기 위한 최초의 공인된 시스템이다. 이러한 측면에서 이에 대한 有關機關의 기대가 크다고 할 수 있으나 이 보험사기인지시스템의 경우에도 실시간으로 자료가 집적되지 않는다는 점(1개월단위로 자료집적), 控除事業者의 자료와 保險犯罪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健康保險資料, 産災保險資料 및 경찰청의 운전면허자료나 범죄자료 등이 배제되었다는 점, 활용기관이나 보험범죄 조사자의 정

89) 보험사기 가능성이 있는 자의 특성, 보험사기자의 사기유형 및 행태를 정형화, 표준화하여 공통적으로 발견되는 사항을 지표화 한 것.

보집근이 쉽지 않다는 점 등의 한계를 갖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향후 유관기관의 협조체제를 바탕으로 한 다음의 5가지 조건이 고루 갖추어진 통합된 데이터베이스 시스템으로 개선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1) All-Claims Database

보험정보,控除정보,公營保險정보,公共機關정보(자동차등록정보,운전면허정보,전과정보,금융신용정보 등)가 종합된 데이터베이스의 구축

(2) Real Time 실현

모든 정보가 實時間으로 集積되고 실시간으로 조회가 가능한 데이터베이스 구축

(3) Easy Application

보험범죄조사자 또는 관련자가 쉽게 이용 가능한 데이터베이스 구축

(4) Perfect Protection

個人信用정보의 보험범죄조사목적 외 유출의 금지 및 정보제공자에 대한 완벽한 보호가 가능한 데이터베이스의 구축

(5) Feed Back

集積된 데이터를 활용한 보험범죄적발데이터가 신용불량자정보 등으로 自動再集積되어 재발방지 및 제3의 범죄로 확산되는 문제를 차단하는 데이터베이스의 구축

제 6 장 要約 및 結論

保險은 일정한 우연적 사건에 의해 발생한 경제적 필요를 충족하기 위한 經濟的 制度이며, 그 목적은 危險回避의인 개인을 불리하게 작용하는 사고로부터 보호하는 데 있다. 이러한 保險制度 본래의 취지인 ‘장래의 不確實 事故에 대한 保障’이라는 기본취지를 벗어나, 오직 보험금에 눈이 멀어 자신의 신체마저 해치는 극단의 보험범죄가 성행하는 상황에 이르게 되었다.

또한 최근 보험사기의 주요유형으로 組織暴力輩들이 역할을 분담하여 故意事故를 유발하거나, 일부 문제가 있는 병·의원의 과잉진료행위 및 가족·친인척 등이 共謀하여 질병을 조작하는 행위 등이 보험사기 수법이 主流를 이루고 있다. 그리고 2005년에는 新種保險詐欺 또는 內部保險詐欺의 적발도 2004년 69건에 151건으로 크게 증가하였다. 이처럼 최근의 보험범죄 및 그 유형은 고도로 知能化되고 集團化되는 과정이므로 이에 방지대책도 신속해야 하며 시스템 역시 緻密해야 할 뿐만 아니라 相關기관과의 정보공유체계가 확립되어야 할 것이다.

본 연구는 보험범죄에 대한 合理的인 防止對策을 제시하기 위하여 보험가입자와 경제범죄 담당수사관을 대상으로 設問調査를 실시하였으며 설문조사결과 30대 이하의 남자, 무직자, 중복보험가입자, 사고경력자 등의 보험범죄 유발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나 이들에 대한 보험설계자 및 보상담당자들의 홍보 및 교육프로그램이 요구됨을 확인하였다.

담당수사관이나 보험가입자 모두 硬性詐欺가 軟性詐欺보다 범죄에 대한 인식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적발가능성은 두 그룹모두 낮다고 생각하였다. 保險犯罪 誘發可能性에 대해서 사고경력자나 보험전문지식 보유자가 共助하는 組織的·知能的 犯罪가 증가하고 있다고 나타났다. 따라서 이러한

범죄자들에게는 처벌수준을 강화해야 한다고 생각했으며, 특히 처벌수준의 강화이유로 보험범죄의 심각성이 커지고 있는데 반하여 그 적발확률이 높지 않으므로 처벌수준을 강화해야 하며, 또한 처벌수준을 강화함으로써 보험설계사 등이 보험범죄를 傍助·默認하는 정도가 낮아질 것이라는 것이 담당수사관들의 의견이었다.

이러한 의식조사 분석결과를 바탕으로 본 연구에서는 보험범죄 방지대책으로 ① 보험범죄 搜查力の 강화, ② 보험회사의 制度改善, ③ 弘報 및 教育의 강화, ④ 보험범죄에 관한 刑事處罰條項의 신설, ⑤ 統合管理시스템의 개발 등을 제시하였다.

또한 앞으로 보험범죄는 더욱 大型化, 組織化, 專門化될 전망인데 정부, 보험업계, 국민 모두가 이에 대한 대처방안 마련에 노력해야 할 것이며, 단기적으로는 수사기관인 경찰·검찰과 보험업계간의 共助協力體制의 확립이 절실히 요구된다. 따라서 빠른 시일 내에 경찰·검찰·협회·금융감독원·보험회사 간에 有機的이고 週期的인 搜查協議體를 구성하여 날로 늘어가는 보험사기범죄에 신속히 대처해 나가야겠다.

保險犯罪은 금전적인 이익을 詐取한다는 점에서 사기죄와 본질을 같이 하는 범죄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그 피해가 보험료를 지불하는 보험계약자들에게 있다는 점에서 보험범죄가 갖는 경제적 피해를 고려하여 볼 때 이 보험범죄를 刑法 또는 刑事特別法에 規定하는 것이 앞으로의 보험범죄에 대한 정확한 실태파악과 대처방안을 마련하는 데에 있어서 꼭 필요한 일이라 하겠다. 더욱이 보험범죄에 관한 刑事處罰條項이 신설되게 되면 큰 죄의식 없이 보험범죄에 관여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보험범죄의 違法性을 명백히 인식시키고, 일반예방적 효과도 거둘 수 있다는 점에서 보험범죄에 대한 法規定을 신설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보험범죄의 예방과 방지대책은 어느 한 기관의 노력만으로는 실

현하기 어려우며 정부 및 보험감독기관, 각 보험회사가 공동적으로 노력해야 할 사항이다. 특히 정부는 관련제도를 보완 정비하고 立法의 未備를 신속히 보완할 필요가 있으며 對國民 弘報를 강화해야 할 것이다.

참 고 문 헌

1. 국내 문헌

- 금융감독원, 『2005년 신종보험사기 대폭 증가』, 보도자료, 2006. 3. 14.
- _____, 『보험조사실, 『2005년도 보험사기 적발현황』, 2006.3.
- 김광용, “보험사기 적발을 위한 전문가시스템의 개발: 퍼지이론과 AHP를 중심으로,” 『보험개발연구』, 제18호, 보험개발원, 1996. 8.
- 김영중, “도덕적 위험 방지를 위한 보험범죄 사례분석,” 『손해보험』, 대한손해보험협회, 1998년 9월호.
- 김용덕·안철경, “보험사기조사의 효과성에 관한 실증연구,” 『보험학회지』, 제61집, 한국보험학회, 2002. 4.
- 김철영, “자동차보험 보험범죄 유형별 사례 분석,” 『손해보험』, 대한손해보험협회, 1996. 2월호.
- 김헌수, “보험사기 조기적발 모형에 관한 소고,” 『손해보험』, 대한손해보험협회, 1999년 1월호.
- _____, “보험전문가의 지식을 이용한 보험사기의 조기경보모형의 개발에 관한 연구,” 『리스크관리연구』, 제11권 제1호, 한국리스크관리학회, 2000.
- _____, “비통계적 링크분석을 이용한 보험사기의 효과적 적발방법 연구,” 『보험개발연구』, 제39호, 보험개발원, 2003. 10.
- _____, “보험가입자의 연성 보험사기 행위에 대한 실험 분석적 검토,” 『보험개발연구』, 제45호, 보험개발원, 2005. 9.
- 김형기, “보험범죄의 현황 및 대응방안,” 『상사법연구』, 제18권 제2호, 한국상

- 사법학회, 1999.
- 내남정, “보험범죄에 대한 효율적 대응방안,” 『자동차보험의 현안문제와 해결 방안』, 한국리스크관리학회 특별세미나 자료집, 1999.6.25.
- _____, “보험사기조사팀의 활성화를 통한 보험사기 방지방안,” 『손해보험』, 대한손해보험협회, 2000년 3·4월호.
- 대한손해보험협회, 『한국의 손해보험』, 2005.
- _____, 『월간 손해보험통계』, 각호.
- _____, 『보험범죄 조사』, 2005.12.
- _____. 한국형사정책연구원 공편, 『보험범죄의 형사판례 분석』, 2002.
- 박상용, “보험범죄의 특성과 대처방안,” 『손해보험』, 대한손해보험협회, 1999년 1월호.
- 박세일, 『법경제학』, 박영사, 1997
- 박일용·안철경, 『보험사기 성향 및 규모추정: 손해보험을 중심으로』, 보험개발원 보험연구소, 1999. 7.
- 보험감독원, “서울고등법원 1974.7.11 선고74나194 판결.” 『생명보험판례집』, 1991.
- 보험개발원 보험연구소, 『2003년 보험소비자 설문조사』, 2003. 3.
- 서영제, 『보험범죄에 관한 연구』, 법무연수원, 1998,
- 손광기, “화재보험 요율체계 검증과 개별위험에 대한 위험평가 모형개발,” 『보험학회지』, 제48권 제1호, 한국보험학회, 1996.
- 신수식, 『보험제도의 도덕적 해이: 산재보험을 중심으로』, 한국노동연구원, 2002. 7.
- 안경옥, “한국의 보험범죄의 실태와 대책,” 『형사정책연구』, 제14권 제2호(동권 제54호), 한국형사정책연구원, 2003.

- 안병재, “보험범죄의 현황과 대책,” 『손해보험』, 대한손해보험협회, 2000년 10월호.
- 안철경, “모럴해저드의 경제학적 이해 및 효과적 대응수단 연구: 법제적측면의 인프라 구축방안을 중심으로,” 『보험개발연구』, 제11권 제1호, 보험개발원, 2000. 3.
- _____. 박일용, 『보험사기 적발 및 방지방안』, 보험개발원, 1999.
- 원태연·정성원, 『SPSS 통계조사분석』, SPSS아카데미, 2002.
- 윤승진, “보험자의 면책사유에 대한 고찰,” 『해상-보험법에 관한 제문제』, 법원행정처, 1991.
- 윤일현, “장기손해보험에서의 보험범죄에 대한 대응방안,” 『산업과 경제』, 제8권 제1호, 강원대학교 산업경제연구소, 1998.
- 이병희, 『보험범죄론』, 형설출판사, 2001.
- _____, 『보험사기범죄의 실태와 방지방안』, 한국형사정책연구원, 2002. 12.
- 이상안, 『범죄경제학』, 박영사, 2005.
- 이운호, “보험사기에 대한 수사권 문제와 최적체제에 관한 연구,” 『보험학회지』, 제61집, 한국보험학회, 2002. 4.
- _____, “보험사기에 대한 모니터링 효과의 국제비교,” 『리스크관리연구』 제11권 제1호, 한국리스크관리학회, 2000.
- 이종환, “보험사기 및 범죄의 조사기법에 관한 연구,” 『손해보험』, 대한손해보험협회, 2000년 12월호.
- 정기홍, “우리나라의 보험사기 실태와 방지 대책,” 『손해보험』, 대한손해보험협회, 2005년 5월호.
- 조수용, “보험범죄와 그 대책,” 『보험학회지』, 제41권, 한국보험학회, 1993년.
- 조해균, “보험범죄의 발생원인과 그 대처방안에 관한 연구,” 『보험학회지』, 제35권, 제1호, 한국보험학회, 1990.

- _____ · 양왕승, “범국가적 차원의 보험사기 대처방안에 관한 연구,” 『보험개발연구』, 제12권 제2호, 보험개발원, 2001. 9.
- 지홍민, “보험사기와 최적보험계약,” 『리스크관리연구』, 제12권 제2호, 한국리스크관리학회, 2001.
- 최인섭 외 5인, 『한국의 금융범죄 실태와 사회적 대응 방안』, 한국형사정책연구원, 2002.
- 탁희성. 『보험범죄에 관한 연구』, 한국형사정책연구원, 2000. 12.
- Hoyt, Robert E., “The Prevention of Insurance Fraud in the U.S. AUTO, Life and Health Insurance Markets,” 보험개발원, 『보험사기방지 해외전문가 초청강연회 보도자료』, 2005. 7. 8.

광주북부경찰서 형사과 강력3팀, 범죄인지사건.

대법원 1991.12.27 선고 91다1165 판결.

2. 외국문헌

- Allen, George B., *The Fraud Identification Handbook*, PP Preventive Press Highlands Ranch, Colorado, 1999.
- Artis, M. I. Ayuso, Mercedes and Guillen, M., “Detection and Automobile Insurance Fraud with Discrete Choice Models and Misclassified Claims,” *Journal of Risk and Insurance*, Vol.68, 2002.
- Beccaria, C. Bonesana, *An Essay on Crimes and Punishments*, trans from Italian with a commentary by Voltaire, London: Alman, 1767.
- Belhadji E. B. and Dionne, G. and Tarkhani, F., “A Model for the

- Detection of Insurance Fraud," *The Geneva Papers in Risk and Insurance*, Vol.25. No. 4. October 2000, 517-538.
- Becker, Gary S., *The Economic Approach to Human Behavior*, The University of Chicago Press, 1976.
- Bentham. J., *Theory of Legislation*, London: Kegan Paul, 1896.
- Boyer, M., "Centralization Insurance Fraud Investigation," *Geneva Papers on Risk and Insurance Theory*, Vol.25, 2002.
- CAIF, *A Statistical Study of State Insurance Fraud Bureau : A Quantitative Analysis: 1995 to 2000*, May 2001.
- _____, *Four Faces: Why some Americans do-and do not-tolerate insurance fraud*, October 1997.
- _____, "Insurance Fraud : The Hidden Tax", from Internet,
<http://www.insurancefraud.org>.
- Carris, R. and Colin, M., "Insurance Fraud and the Industry Response," *CPCU Journal*, Summer 1997.
- Colruit, L. and Hoyt, R., "An Empirical Analysis of the Nature and cost of Frudulent Life Insurance Claims," *Journal of Insurance Regulation*, Vol.15. No.4 1997.
- Coalition Against Insurance Fraud, *Insurance Fraud : The Hidden Tax*,
<http://www.insuranceFraud.org/facts.html>.
- Conning & Company, *Insurance Fraud : the Quiet Catastrophe*, Conning & Company, 1996.
- Cummins, J. David and Sharon Tennyson, "Moral Hazard in Insurance Claiming : Evidence form Automobile Insurance," *Journal of Risk and Uncertainty*, Vol.12, 1996.

- Danzon, Patricia M., "The Frequency and Severity of Medical Malpractice Claims," *Journal of Law and Economics*, Vol.27, 1984.
- David H. Pyle, *The Economics of crime and Law Enforcement*, Macmillan Press, 1983.
- Fleisher B. M., "The Effect of Unemployment on Juvenile Delinquency," *Journal of Political Economy*, Vol.71, No.6. 1963.
- _____, "The Effect of Income on Delinquency," *American Economic Review*, Vol.56, No.1. 1966.
- Gujarati, Damodar N., *Basic Econometrics*, McGraw-Hill Book Company, 1988.
- Hoving, Thomas, *False Impressions*, New York : Simon & Schuster, 1996.
- Hoyt, Robert E. and David Mustard and Lars Powell, "The Effectiveness of Insurance Fraud Statutes : Evidence from Automobile Insurance," *2001 ARIA Annual Meeting.*, 2001.
- Insurance Fraud Bureau of Massachusetts, *2000 Annual Report.*
(<http://www.ifg.org>)
- Insurance Information Institute, *Insurance Fraud*, 2001(<http://www.iii.org>).
- Insurance Research Council, *Fighting Fraud in the insurance Industry*, 1997.10
- International Chamber of Commerce, *Guide to the prevention of international trade fraud*, Paris : ICC Publishing S.A., No.420, 1985.
- Jesilow, P, H. N. Pontell, and G. Geis, *Prescription For Profit: How Doctors defraud Medicare*, Berkeley: University of California

- Press, 1993.
- Kizorek, B and Finger, S., *SIU 101*, PSI Publications, 1994.
- Munich Re, *Insurance Fraud in Indemnity Insurance*,
- Ron Panko, "Making a Dent in Auto Insurance Fraud," *Best's Review: Property & Casualty* October 2001.
- Sparrow, M. K., *License To Steal : How to Bleed America's Health Care System*, Westview Press, 2000.
- Tennyson, S., "Insurance Experience and Consumers' Attitudes Toward Insurance Fraud," *Journal of Insurance Regulation*, Vol.21, No.2, Winter 2002.
- Thomas L., and Edward J. Shapiro, "Prosecution for Fraud and False Pretenses", *Identifying and Prosecution Fraud and Abuse In State and Local Contracting*, American Bar Association., 1984.
- Thomas More, *Utopia*, trans. by R. Robinson, Cambridge University Press, 1551.
- Wanger, S. C., and Sanders, G. L., "Considering in Ethical Decision-Making and Software Piracy," *Journal of Business Ethics*, Vol. 29, No.1, January 2001.
- Weisberg, H. I. and Derrig, R. A., "Identification and Investigation of Suspicious Claims," *Automobile Insurers Bureau of Massachusetts*, 1995. 7.
- Weisberg, H. I., "Fraud and Automobile Insurance : A Report on the Baseline Study of Bodily Injury Claims in Massachusetts," *Journal of Insurance Regulation*, Vol.9, 1991. 427-541.
- _____, "Identification and Investigation of Suspicious Claims,"

*AIB Cost Containment / Fraud Filing(DOI Docket R95-12),
Automobile Insurers Bureau of Massachusetts, July 1995,
192-245.*

月足一清, 『生命保険犯罪: 事例説明と防止対策』, 1986.

_____, “保険犯罪小論,” 『生命保険経営』, 第44巻, 1976.

<http://blog.naver.com/shinyusub/120022685788>, 2006.3.9.

<http://www.insurabcefraud.org/facts.html>

<http://222.bafin.de/bafin/organigramm.pdf>.

보험범죄 의식조사 설문지(경제담당 수사관용)

안녕하십니까?

먼저 귀중한 시간을 할애해 본 설문조사에 응해주셔서 깊이 감사드립니다.

본 설문조사는 보험범죄에 대한 인식과 유발가능성을 파악하여 보험방지대책을 모색하는 데 귀중한 자료가 될 것입니다.

본 설문에 귀하께서 평소 생각이나 느낌을 글로 표현해 주시면 됩니다. 설문에 대한 응답은 무기명으로 하며 응답내용은 본 연구목적 이외에는 사용하지 않을 것입니다.

바쁘시겠지만 빠진 문항 없이 답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설문응답이나 본 조사에 관해서 의문사항이 있으면 아래 연락처로 연락해 주시면 성심껏 답변해드리겠습니다.

2006년 3월

조선대학교 대학원 경제학과
박사과정 : 박 장 남
주소 : 광주광역시 북구 오치동
광주북부경찰서 형사과
전 화 : 062-265-1112
휴대폰 : 011-601-8751
지도교수 : 조선대학교 경제학과
교수 지 광 수

1. 「남성이 여성에 비해 보험사기 발생가능성이 높다」라는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① 남성이 높다 ② 비슷하다 ③ 여성이 높다

2. 보험사기 가능성이 높은 연령층은?

- ① 20대 ② 30대 ③ 40대 ④ 50대 이상

3. 무직자가 유직자보다 보험사기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하십니까?

- ① 그렇다 ② 비슷하다 ③ 그렇지 않다

4. 자영업자가 급여소득자보다 보험사기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하십니까?

- ① 그렇다 ② 비슷하다 ③ 그렇지 않다

5. 경제적 빈곤층이 보험사기를 유발할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하십니까?

- ① 그렇다 ② 비슷하다 ③ 그렇지 않다

6. 보험에 대한 전문지식이 있는자가 보험사기를 유발할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하십니까?

- ① 그렇다 ② 비슷하다 ③ 그렇지 않다

7. 보험사기에 조직폭력배가 개입할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하십니까?

- ① 그렇다 ② 비슷하다 ③ 그렇지 않다

8. 외제차량 등 고급차량을 이용한 보험사기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하십니까?

- ① 그렇다 ② 비슷하다 ③ 그렇지 않다

9. 장기보험 등 다수 보험가입자가 보험사기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하십니까?

- ① 그렇다 ② 비슷하다 ③ 그렇지 않다

10. 보험사기자는 공통적으로 여러 건의 사고경력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① 그렇다 ② 비슷하다 ③ 그렇지 않다
11. 보험사기자는 공통적으로 민원을 제기한다고 생각하십니까?
 ① 그렇다 ② 비슷하다 ③ 그렇지 않다
12. 보험사기건은 제3자가 합의에 개입한다고 생각하십니까?
 ① 그렇다 ② 비슷하다 ③ 그렇지 않다
13. 생계형 사기(우발적 사기)보다 조직적, 지능적사기가 증가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① 그렇다 ② 비슷하다 ③ 그렇지 않다
14. 다음의 항목 중 보험사기 또는 보험범죄에 해당한다고 생각되는 항목을 모두 선택해 주세요(복수선택가능)
- ① 보험료를 적게 내기 위하여 고의로 사실을 숨긴다
 - ② 의사에게 진단을 2주 진단에서 3주 진단으로 높여달라고 부탁한다
 - ③ 별로 아프지 않지만 보험금을 받기 위해 입원한다
 - ④ 기존에도 허리가 아팠지만 이번 사고로 허리까지 치료 받고 치료비를 자동차보험으로 처리한다
 - ⑤ 손해사정인, 변호사 등에게 고액의 보험금을 받아달라고 의뢰한다
 - ⑥ 보험에 가입되어 있으므로 방어운전은 필요 없다
 - ⑦ 실수로 넘어져 다쳤지만 자동차사고로 다친 것으로 하여 자동차보험으로 치료 받는다
 - ⑧ 자동차의 기존에 파손된 부위를 이번 사고로 편승하여 수리 받는다
 - ⑨ 불필요한 정밀촬영(C/T, MRI 등)을 시행한다
 - ⑩ 병원에 부탁하여 입원일수를 늘려달라고 한다
 - ⑪ 병원에서 치료비를 부당하게 높여 청구한다
 - ⑫ 중고차 시세보다 보험가격이 높다면 허위로 도난신고를 하여 보험처리를 받는다

15. 우리나라 보험범죄의 심각성은 어느 정도라고 생각하십니까?
 ① 매우적다 ② 적다 ③ 보통이다 ④ 크다 ⑤ 매우크다
16. 고의사고 사기행위의 경우 적발될 확률은 얼마나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① 10%이하 ② 30% 정도 ③ 50% 이상 ④ 60% 정도 ⑤ 80% 이상
17. 피해액을 의도적으로 부풀린 경우 적발될 확률은 얼마나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① 10%이하 ② 30% 정도 ③ 50% 이상 ④ 60% 정도 ⑤ 80% 이상
18. 보험사기 적발률이 낮다고 판단되는 경우 그 주된 원인은 무엇이라 생각하십니까?
 ① 업무량이 많아서 세부조사가 불가능하다
 ② 사기의 지능화로 증거확보가 불가능하다
 ③ 조사권한의 부재로 심도있는 조사가 어렵다
 ④ 유관기관의 정보차단으로 혐의자에 대한 정보습득이 불가능하다
 ⑤ 고객센터서비스의 강조에 따라 민원발생이 두렵고 귀찮다
 ⑥ 사기혐의자의 협박과 폭력으로 신변위협을 느낀다
19. 보험사기적발에 따른 회상차원의 보상에 대한 귀하의 만족도는 어느 정도입니까?
 ① 매우낮다 ② 낮다 ③ 보통이다 ④ 높다 ⑤ 매우높다
20. 보험사기자가 적발될 경우 어떠한 처벌을 받을 것으로 생각하십니까?
 ① 받은 보험금만 돌려주면 별다른 처벌은 없을 것이다
 ② 벌금형 정도를 받을 것이다
 ③ 징역형을 받을 것이다

21. 보험사기자에 대한 처벌수준은 어느 정도가 적당하다고 생각하십니까?
 ① 계도 및 훈방 ② 벌금형 ③ 징역형
22. 보험사기 예방 및 적발의 극대화를 위하여 가장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항목을 3개만 표기해 주세요.
 ① 보상직원의 증원으로 적정한 배당
 ② 공인된 조사권의 부여
 ③ 마스크를 통한 지속적인 홍보활동
 ④ 보험사기자에 대한 엄격한 처벌
 ⑤ 사법기관의 공식적인 수사채널 확보(예: 미국 보험사기국)
 ⑥ 유관기관의 정보공유
 ⑦ 보험사기 특수조사팀(SIU)의 설치 및 확대
23. 보험범죄발생 및 예방, 적발에 대한 책임은 궁극적으로 누구에게 있다고 생각되십니까?
 ① 보험소비자 ② 보험회사 ③ 보험감독당국 ④ 검, 경찰 등 사법기관
24. 보험범죄 방지를 위한 보험회사 또는 감독기관, 사법당국의 대응정책에 대한 귀하의 의견은?
 ① 매우 낮다 ② 낮다 ③ 보통이다 ④ 높다 ⑤ 매우 높다
25. 사고 발생 시 피해자들은 보험금산정에 관하여 주로 누구와 상의한다고 생각하십니까?
 ① 보험설계사 ② 주변의 보상경력자
 ③ 담당 보상직원 ④ 손해사정인 ⑤ 변호사
26. 보험설계사의 경우 계약자 보호를 위해 계약자의 사기행위를 방조, 묵인한다고 생각하시나요?

- ① 매우 적다 ② 적다 ③ 보통이다 ④ 많다 ⑤ 매우 많다

27. 2002년도 말 우리나라의 보험사기로 적발한 피해액은 5,757건 411억원에 이른다. 이의 주된 원인은 무엇이라 생각하십니까?(3가지만 골라주세요)

- ① 생활고로 인한 경제적 궁핍 ② 보험범죄에 대한 죄의식 결여
③ 처벌의 경미함 ④ 보험회사의 능력부족
⑤ 수사기관의 무관심 ⑥ 전문범죄집단의 보험범죄 가담
⑦ 보험사기범에 대한 관용적인 사회적 태도

28. 보험사기 특수조사팀(SIU)의 역할에 대하여 어느 정도 기대하시나요?

- ① 매우낮다 ② 낮다 ③ 보통이다 ④ 높다 ⑤ 매우 높다

**바쁘신 가운데 끝까지 성의있는 답변을 해주신 수사관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보험범죄 의식조사 설문지(보험가입자용)

안녕하십니까?

먼저 귀중한 시간을 할애해 본 설문조사에 응해주셔서 깊이 감사드립니다.

본 설문조사는 보험범죄에 대한 인식과 유발가능성을 파악하여 보험방지대책을 모색하는 데 귀중한 자료가 될 것입니다.

본 설문에 귀하께서 평소 생각이나 느낌을 글로 표현해 주시면 됩니다. 설문에 대한 응답은 무기명으로 하며 응답내용은 본 연구목적 이외에는 사용하지 않을 것입니다.

바쁘시겠지만 빠진 문항 없이 답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설문응답이나 본 조사에 관해서 의문사항이 있으면 아래 연락처로 연락해 주시면 성심껏 답변드리겠습니다.

2006년 3월

조선대학교 대학원 경제학과
박사과정 : 박 장 남
주소 : 광주광역시 북구 오치동
광주북부경찰서 형사과
전 화 : 062-265-1112
휴대폰 : 011-601-8751
지도교수 : 조선대학교 경제학과
교수 지 광 수

1. 기초사항

성 별	연 령	직 업	자동차보험경력	보상경험
남 ()	20대 ()	공무원 ()	5년 미만()	있음 ()
여 ()	30대 ()	회사원 ()	6-10년 ()	없음 ()
	40대 ()	자영업 ()	11년 이상()	
	50대이상()	주 부 ()		
		기 타 ()		

2. 귀하의 보험료는 적정하다고 생각하십니까?

- ① 매우 적다 ② 적다 ③ 보통 ④ 많다 ⑤ 매우 많다

3. 귀하는 보험가입 시 보험료를 적게 내기 위해 보험회사에 알려야 할 사항을 거짓으로 알려거나 누락시키는 것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① 괜찮다 ② 위법이 아니면 괜찮다 ③ 안된다

4. 정당하지 않은 방법으로 보상을 더 받을 수 있는 방법을 알고 있는 경우 주변인에게 그 방법을 권유하겠습니까?

- ① 예 ② 아니오

5. 제3자로부터 보상을 많이 받을 수 있는 방법을 권유 받은 경우 그 방법이 부정한 것 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 ① 권유에 따라 보상을 많이 받을 수 있도록 노력 한다.
② 소신 것 양심에 따라 행동 한다.

6. 다음 중 보험사기 또는 보험범죄에 해당한다고 생각되는 항목을 모두 골라주세요.

- ① 보험료를 적게 내기 위하여 고의로 사실을 숨긴다.
② 의사에게 부탁하여 2주 진단을 3주 진단으로 변경 한다.
③ 별로 아프지 않지만 보험금을 받기 위해 입원 한다.
④ 기존에도 허리가 아팠지만 이번 사고로 허리까지 치료 받고 치료비를

자동차보험으로 처리 한다.

- ⑤ 제3자에게 고액의 보험금을 받아달라고 의뢰 한다.
- ⑥ 보험에 가입되어 있으므로 방어운전을 필요 없다.
- ⑦ 실수로 넘어져 다쳤지만 자동차사고로 다친 것으로 하여 자동차보험으로 치료 받는다.
- ⑧ 음주운전으로 사고가 났지만 증거가 없으므로 다음날 자동차보험으로 처리 한다.
- ⑨ 기존에 파손된 부위를 이번 사고로 편승하여 수리 받는다.
- ⑩ 치료비를 부풀리기 위하여 C/T, MRI 등을 시행한다.
- ⑪ 병원에 부탁하여 입원일수를 늘려달라고 한다.
- ⑫ 병원에서 치료비를 부당하게 높여 청구한다.
- ⑬ 중고차 시세보다 보험가격이 높다면 허위로 도난신고를 하여 보험처리 받는다.

7. 교통사고로 인한 보험금을 수령하는 것에 대한 의견은?

- ① 보험회사는 돈이 많으므로 피해자 입장에서는 가능한 한 보험금을 많이 받아내야 한다.
- ② 보험료를 많이 내므로 실제 손해액보다 다소 많은 보험금을 받아도 무방하다.
- ③ 규정에 따라 지급되는 보험금만 수령하여야 한다.

8. 보험회사 보상직원의 보험금 지급기준 안내에 대한 의견은?

- ① 보험금을 적게 지급할 의도로 설명하므로 믿기 어렵다.
- ② 보상직원에게 잘 부탁하면 어느 정도 보험금을 더 많이 받을 수 있다.
- ③ 보상직원의 안내를 전적으로 신뢰한다.

9. 병원에서 치료비를 부당하게 높게 청구한 사실을 알았을 경우 귀하의 행동은?

- ① 나와 관계없으므로 관여하지 않는다.

- ② 본인도 장기보험을 청구해야 하므로 굳이 문제 삼지 않는다.
- ③ 병원이 항의하거나 보험회사에 알려서 사실을 규명한다.

10. 보험사기 행위자를 알고 있을 경우 어떻게 행동하시겠습니까?

- ① 나와 관계없으므로 관여하지 않는다.
- ② 제보자 포상금이 있으면 신고하고 없으면 신고하지 않는다.
- ③ 포상금과 관계없이 수사기관 또는 보험회사에 신고한다.

11. 고의사고 사기행위의 경우 적발될 확률은 얼마나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 ① 10% 이하 ② 30% 정도 ③ 50% 이상
- ④ 60% 정도 ⑤ 80% 이상

12. 피해액을 의도적으로 부풀린 경우 적발될 확률은 얼마나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 ① 10% 이하 ② 30% 정도 ③ 50% 이상
- ④ 60% 정도 ⑤ 80% 이상

13. 보험사가 적발될 경우 어떠한 처벌을 받을 것으로 생각하십니까?

- ① 받은 보험금만 돌려주면 별다른 처벌은 없을 것이다.
- ② 벌금형 정도를 받을 것이다.
- ③ 징역형을 받을 것이다.

14. 보험사기자에 대한 처벌수준을 어느 정도가 적당하다고 생각하십니까?

- ① 계도 및 훈방 ② 벌금형 ③ 징역형

15. 보험사기 행위자의 보험금수령이 귀하의 보험료를 인상시킨다고 생각하십니까?

- ① 관계있다. ② 관계없다.

16. 우리나라 보험범죄의 심각성은 어느 정도라고 생각하십니까?
① 매우 적다. ② 적다. ③ 보통이다. ④ 크다. ⑤ 매우 크다.
17. 보험범죄발생 및 예방, 적발에 대한 책임은 누구에게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① 보험소비자 ② 보험회사
③ 보험감독당국 ④ 검, 경찰 등 사법기관
18. 보험범죄 방지를 위한 보험회사 또는 감독기관, 사법당국의 대응정책에 대한 귀하의 의견은?
① 매우 적다. ② 적다. ③ 보통이다. ④ 많다. ⑤ 매우 많다.
19. 사고가 발생하였을 경우 보험금산정에 관하여 누구와 상담하시렵니까?
① 보험설계사 ② 주변의 보상경력자
③ 담당 보상직원 ④ 손해사정인 ⑤ 변호사
20. 2005년도 말 우리나라의 보험사기로 적발한 피해액은 23,607건 1,802억원에 이른다(금감원 통계). 이의 주된 원인은 무엇이라 생각하십니까?
① 생활고로 인한 경제적 궁핍
② 보험범죄에 대한 죄의식 결여
③ 처벌의 경미함
④ 보험회사의 능력부족
⑤ 수사기관의 무관심
⑥ 전문범죄집단의 보험범죄 가담
⑦ 보험사기범의 대한 관용적인 사회적 태도

**바쁘신 가운데 끝까지 성의있는 답변을 해주신 수사관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